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 연구



이 보고서는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2010년 12월

주관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책임연구원: 이태호(한국채권연구원 이사)

공동연구원: 박천일(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심상민(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안석환(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 구 원:이승재(한국채권연구원 컨설턴트)

이어진(한국채권연구원 컨설턴트)

김재형(한국채권연구원 컨설턴트)

보 조 원: 김은경(한국채권연구원 컨설턴트)

Contents

요약

I	서 론1
	1. 연구의 배경 ···································
	2. 연구 목표 및 내용 2 1) 연구 목표 2 2) 연구 내용 3 3) 연구 결과 4
	3. 연구절차 및 방법 4 1) 연구 절차 4 2) 연구 방법 5
II	현황 및 운용성과 분석7
	1. 방송발전기금 7 1) 현황 7 2) 운용성과 12
	2. 정보통신진흥기금 19 1) 현황 19 2) 운용성과 22
	3. 방송통신발전기금23

	1) 현황23	3
III	재정체계 연구	30
	1. 재정지원체계 연구	
	1) 재원체계 ····································	_
	2) 지원제가 집중 42 3) 기타 재원 검토 ···································	
	, 하외 사례 ···································	
	2. 신규재정수요 검토	3
	1) 재정수요 체계 76	
IV	기금 중장기 비전 검토	83
	1. 비전 현황	
	1)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 ···································	
	2. 방 송통 신발전기금의 비전 ···································	3
	1) 미션 재정의	
	2) 중장기 비전 재구축89)
	3) 비전과의 연계성 재검토97	
	4) 방 송통 신발전기금 미래상 ···································	
V	전략연구1	00
	1. 방송발전기금 전략사업 검토100)
	2. SWOT 분석 ···································	
	1) 강점 ···································	
	2) 약점·······107 3) 기회······107	
	5) · 1—1	

	4) 위협	108
	3. 전문가 설문조사(AHP)	···· 109 ···· 110 ···· 113
VI	세부사업 검토	······134
	1. 세부사업 검토	···· 134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172
	1. 결론 ···································	
부록	전문가 조사 설문지 1	81

Contents

<班 2.1 >	방송발전기금의 지출액	10
<班 2.2 >	방송발전기금의 성과	12
<班 2.3 >	방송발전기금의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13
<班 2.4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5조)	26
<丑 2.5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6조)	28
<丑 3.1 >	방송사업자 별 기금 부담 금액	31
<班 3.2 >	방송사업자 분담금	32
<班 3.3 >	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수입	34
<班 3.4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매출액 ·····	36
<班 3.5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영성과	37
<班 3.6 >	위성방송사업자 최근 경영성과	39
<丑 3.7 >	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근 경영 성과	41
<班 3.8 >	주파수할당대가 배분 내역 전망	42
<班 3.9 >	법정 부담금 징수 예상금액	43
<丑 3.10>	전파사용료 산정방식	45
<班 3.11>	사업자 별 전파사용료 납부현황	46
<班 3.12>	전파사용료 징수전망	47
<班 3.13>	예산과 기금의 비교	48
<班 3.14>	FCC 사용 또는 관할하는 재원 ·····	50
<班 3.15>	2010년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	
	기준 및 금액	51
<班 3.16>	2010년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	
	징수 예상 금액	53
<丑 3.17>	2010년 4분기 보편적 서비스 기금	

∀

		(universal service fund)	55
<班	3.18>	2011년 보편적 서비스 기금 예상	56
<莊	3.19>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담 금액	56
<莊	3.20>	2010년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담 금액	57
<莊	3.21>	Ofcom의 재원 ······	58
<班	3.22>	Category A and B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	59
<班	3.23>	Category C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	60
<班	3.24>	Category D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	60
<莊	3.25>	Category E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	61
<莊	3.26>	심사 수수료 (Application fees) ······	61
<莊	3.27>	공영방송과 지역 방송 허가 - 심사 수수료	62
<班	3.28>	공영방송과 지역 방송 허가 - 허가 수수료	63
<班	3.29>	공영방송과 지역 방송 허가 - 허가 갱신	63
<班	3.30>	공영과 지역 다중통신 허가 - 허가 심사	64
<丑	3.31>	공영과 지역 다중통신 허가 - 년도 별 허가 수수료 …	64
<丑	3.32>	커뮤니티 라디오 - 심사, 허가 수수료	64
<丑	3.33>	제한된 서비스 허가(단기) - 심사 수수료	65
<丑	3.34>	제한된 서비스 허가(단기)	65
<丑	3.35>	단기간 제한된 서비스 허가의 개정 수수료	66
<丑	3.36>	제한된 서비스 허가(장기) - 심사 수수료	66
<莊	3.37>	제한된 서비스 허가(장기) - 년도 별 허가 수수료	66
<莊	3.38>	장기간 제한된 서비스 허가의 개정 수수료	67
<莊	3.39>	오디오 분배 시스템의 제한된 서비스 허가	
		- 심사 수수료	67
<丑	3.40>	오디오 분배 시스템의 제한된 서비스 허가	
		- 연도별 허가 수수료	67
<莊	3.41>	오디오 분배 시스템의 제한된 서비스 허가	
		- 개정 수수료	67
<班	3.42>	라디오 허가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68
<표	3.43>	디지털 사운드 프로그램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	68

∀

<班	3.44>	디지털 추가적인 서비스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68
<班	3.45>	추가적인 서비스 허가 - 심사 수수료	69
<莊	3.46>	추가적인 서비스 허가 - 연도별 허가 수수료	··· 69
<莊	3.47>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행정 부담금	··· 70
<莊	3.48>	기본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대가 사용요금	··· 71
<班	3.49>	고정된 링크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대가	
		사용요금	··· 72
<莊	3.50>	기타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대가 사용요금	··· 73
<莊	3.51>	2009,2010년 징수 예상금액	··· 74
		비전 안	
<莊	5.1 >	설문조사 대상자	· 110
<莊	5.2 >	평가항목 및 내용	· 112
<莊	5.3 >	대분류(제1계층)의 평가항목	· 113
<莊	5.4 >	대분류(제1계층)의 결과 및 순위	· 113
<莊	5.5 >	주요사업(제2계층)의 평가항목	115
<莊	5.6 >	주요사업(제2계층)-R&D사업 결과 및 순위 ······	· 116
<莊	5.7 >	주요사업(제2계층)-비R&D사업 결과 및 순위 ···········	· 117
<莊	5.8 >	세부사업(제3계층)의 평가항목	119
<莊	5.9 >	세부사업(제3계층)의 평가항목 주요내용	120
<莊	5.10>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연구개발 사업)	
		결과 및 순위	122
<莊	5.11>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	
		(표준화 사업, 인력양성 사업) 결과 및 순위	123
<丑	5.12>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결과 및 순위	123
<丑	5.13>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결과 및 순위	· 124
<莊	5.14>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	
		(방송통신 진흥 지원) 결과 및 순위	· 125
<莊	5.15>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결과 및 순위	· 126

∀i

<班 5.16	>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 결과 및 순위127
<班 5.17	> 대분류, 주요사업, 세부사업 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131
<班 6.1	> 2011년 주요사업, 세부사업 ·······134
<班 6.2	>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결과 ······148
<班 6.3	> 2010년 국내이동전화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전망 ·····156
<班 6.4	>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추진 상황158
<班 6.5	>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 현황158
<班 6.6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 콘텐츠
	수출 진흥 관련 정책160
<班 6.7	> 방송통신위원회 제작 지원 현황161
<班 6.8	> 지상파 광고 수주액164
<班 6.9	> 주요 무선 재판매 사업 현황 165
<班 6.10	> MVNO 잠재 사업자 ······ 166
<班 6.11	> 스마트 폰과 스마트 TV 발전여건 차이 ······ 169

∀ii

Goatents

<그림	1.1 >	방송통신 규제 융합 현상	2
<그림	1.2 >	본 연구의 내용	3
<그림	1.3 >	본 연구의 기대효과	·· 4
<그림	1.4 >	SWOT Matrix분석 절차 ······	6
<그림	2.1 >	방송발전기금의 담당부서	7
<그림	2.2 >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이	8
<그림	2.3 >	방송발전기금의 지출추이	10
<그림	2.4 >	방송발전기금의 평균 지출 비중	11
<그림	2.5 >	2009년 방송발전기금 전략목표 I 에 따른 관리과제	15
<그림	2.6 >	2009년 방송발전기금 전략목표Ⅱ에 따른 관리과제	16
<그림	2.7 >	2009년 방송발전기금 전략목표III에 따른 관리과제	16
<그림	2.8 >	2009년 방송발전기금 전략목표IV에 따른 관리과제	17
<그림	2.9 >	2009년 방송발전기금 전략목표 별	
		운용성과 평가 결과	18
<그림	2.10>	2009년 방송발전기금 세부성과지표 별	
		운용성과 평가 결과	18
<그림	2.1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직도	19
<그림	2.1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추이	20
<그림	2.1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추이	21
<그림	2.14>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평균 지출 비중	22
<그림	2.15>	기금의 주요 변화	24
<그림	2.16>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관련된 개념	25
<그림	2.17>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 전망	27
<그림	2.18>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전망	29
<그림	3.1 >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체계 변화	30
<그림	3.2 >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추이	33

<그림	3.3 >	보도전문 방송사업자 방송매출 추이	35
<그림	3.4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징수율 추이	37
<그림	3.5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시	·업
		자 징수율 추이(텔레비전 방송채널사업자 기준)	40
<그림	3.6 >	텔레비전 방송 허가수수료 5개의 범주	59
<그림	3.7 >	방송통신위원회의 '11년 예산안 특징	77
<그림	3.8 >	2011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78
<그림	3.9 >	2011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78
<그림	3.10>	2011년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79
<그림	3.11>	2011년 디지털 전환 지원	80
<그림	3.12>	2011년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80
<그림	3.13>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추이	82
<그림	4.1 >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84
<그림	4.2 >	방송발전기금의 비전과 목표 체계	85
<그림	4.3 >	방송발전기금의 비전과 목표	85
<그림	4.4 >	프로세스 과정	86
<그림	4.5 >	기존 미션 분석	87
<그림	4.6 >	신규 미션 안	88
<그림	4.7 >	해외 우수 기업 미션 사례 검토	88
<그림	4.8 >	공공기관 미션 사례 검토	89
<그림	4.9 >	비전 수립 프로세스	89
<그림	4.10>	기존 비전 검토	90
<그림	4.11>	비전 안 선정	92
<그림	4.12>	비전 안 기술 서(1)	93
<그림	4.13>	비전 안 기술 서(2)	93
		비전 안 기술 서(3)	
<그림	4.15>	비전 안 기술 서(4)	94
		비전 안 기술 서(5)	
		비전 안 기술 서(6)	
		비전 안 기술 서(7)	
		신 미션·비전·전략 체계도 ·····	

<그림	4.20>	비전과 전략사업 간의 연계성98
<그림	4.21>	비전과 세부사업 간의 연계성 98
<그림	4.2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래상: 중장기 발전 로드맵 …99
<그림	5.1 >	2010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100
<그림	5.2 >	2010년 주요사업1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101
<그림	5.3 >	2010년 주요사업2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 101
<그림	5.4 >	2010년 주요사업3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 102
<그림	5.5 >	2010년 주요사업4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102
<그림	5.6 >	2010년 주요사업5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103
<그림	5.7 >	2010년 주요사업6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103
<그림	5.8 >	2010년 주요사업7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 104
<그림	5.9 >	2010년 주요사업8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 104
<그림	5.10>	2011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비교 105
<그림	5.11>	2010년 주요사업과 2011년 주요사업 비교106
<그림	5.12>	SWOT 분석108
<그림	5.13>	AHP 기법의 분석절차109
<그림	5.14>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략사업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계층 구조111
<그림	5.15>	대분류(제1계층)의 중요도114
<그림	5.16>	주요사업(제2계층)-R&D사업의 중요도 ······ 116
<그림	5.17>	주요사업(제2계층)-비R&D사업의 중요도 ······117
<그림	5.18>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
		(연구개발 사업) 중요도122
<그림	5.19>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중요도 ······ 124
<그림	5.20>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중요도125
<그림	5.21>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
		(방송통신 진흥 지원) 중요도126
<그림	5.22>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중요도127

<그림 5.23>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 중요도	128
<그림 5.24>	대분류, 주요사업, 세부사업 간의 중요도	133
<그림 6.1 >	모바일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	157
<그림 6.2 >	예상 MVNO 사업자 ·····	166

χi

요 약 문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방송과 통신은 그 기술적 차이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구분, 규율 되어왔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의 발전,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이전에 분리되었던 음성, 데이터 및 영상서비스의 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 형태는 산업/시장의 융합,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콘텐츠 융합, 규제의 융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던 규제가 통합이 되면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 진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재정지원체계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및 중장기 운용 전략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2.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 마련을 통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체계 수립이다.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 및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현재까지 재정수요와 재정지원체계에 대하여 살펴본 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된 후 신규 재정지원체계와 재정수요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워크숍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변화사항들을 고려하여 비전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는 SWOT분석과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식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전략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조직구성원 인터뷰 방식을 통하여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도출된 비전과 전략에 따라 현재 세부사업과 추가로 필요한 세부사업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제언을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예상되는 주요 결과물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과 전략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관련 정책추진 체계의 기본들이 제시되며, 중장기 운용전략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화가 이루어 질것이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서베이 피드백(Survey Feedback)방법을 이용하여, (1) 방송발전기금의 현황분석 및 운용성과 분석 (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분석 및 운용성과 분석 (3) 재정지원체계 분석 (4) 신규 재정수요 검토 등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을 마련하는 기반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해외의 방송과 통신의 재정지원체계를 조사·검토 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전반의 일관성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의 미션과

비전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직원 인터뷰와 워크숍을 이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에서 수립된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을 연구하였다. 전략을 검토하기 위하여 SWOT Matrix 분석과 관련 산업계와전문가의 설문조사(AHP 분석)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업무담당자, 지상과, 케이블TV, 미디어 분야의 종사자, 학자들에게 연구진행과정에서 전략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연구 주무부서 담당자와 연구진간의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Ⅱ. 현황 및 운용성과 분석

1. 방송발전기금

2000년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은 지속적으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이 개정되어 오다가 2008년 소관 부서가 방송위 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관련업무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현재 2실 4국 6관 32과 3팀, 2소속기관이 있으며 이중 정책총괄과 부서에서 총 9명이 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100% 자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원은 방송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 재산(이자)수입, 융자원금 회수, 기 타 경상이전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방송발전기금의 지출은 기금사업비,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기금사업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금액의 대부분을 방송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009년도 기금 운용성과를 살펴보면, 전략목표 별 성과목표는 4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다. 성과목

표 별 관리과제 성과 달성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리과제들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2. 정보통신진흥기금

1993년 설치된 이후 2005년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에 의해 개편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이 되었다. 지식경제부에서 기금의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금 계획 수립과 결산 및 사업성 평가도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다.

기금의 위탁관리 조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본부 8단, 2부설기 관으로 되어있으며 이 중 기반조성본부의 기금 관리 단에서 기금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자체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는 출연지출, 융자지출, 투자지출로 나누어지며 그 중 출연지출은 인력양성, 기술개발(연구기반, 초고속기반), 표준화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를 방송통신 원천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3. 방송통신발전기금

2010년 9월 23일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제4장에 의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2010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의해기존의 방송발전기금 재원에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징수금,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전환에 따라 산정된 금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의 분담금이 추가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의해 기존의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표준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방송통신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기간만료 전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이 추가되었다.

Ⅲ. 재정체계 연구

1. 재정지원체계 연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주파수할당대가, 종합편성,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이 추가되었다. 2011년 방송통신발 전기금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주파수할당대가가 반영되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증가하였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2012년 수입계획부터 반영될 계획이며, 2010년 12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대상법인이 선정되었으며, 2011년 하반기에 적용 징수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자 별 분담금은 방송사업자의 종류 마다 징수기준, 법정 징수율, 징수시기가 다르며 사업자 별로 적용 징수율도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으며(2009년 기준 52.21%를 차지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이줄어든 반면 다른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분담금은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할당대가가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2010년 9월 주파수할 당대가의 4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협의로 결정되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수를 일정기간 독점하여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재원은 증가 할 것이다. 하지만 연도별 주파수할당대가의 편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운용을 고려한다면 추가 재원으로 전파사용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방송과 통신의 재정지원체계는 통합과 분리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통합되어 있으며, 영국은 방송·통신의 정책기관은 분리되어 있지만 규제는 통합규제기구인 Ofcom에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

미국의 방송·통신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FCC에 의해 통합 관리되고 있다. FCC가 사용 또는 관할하는 재원으로는 규제 수수료 (regulatory fee), 보편적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위한 부담금, 주파수 경매대금(spectrum auction proceeds), 인허가 수수료(application fee), 기타 잡수입이 있다.

영국은 방송·통신의 정책기관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DTI와 DC MS가 각각 통신과 방송의 정책 목표와 규제원칙을 수립한 후 입안을 통하여 실현한다. DCMS는 방송 산업 진흥과 BBC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이외의 모든 규제기능은 통합규제기구인 Ofcom을 설립

하여 단일화 하고 있다. Ofcom은 방송·통신사업자의 허가, 방송주파수 할당, 전파사용료(license fee), 불공정경쟁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fcom의 재원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허가수수료(license fee), 라디오 방송 허가 수수료(license fee), 컴퓨터통신망이나 서비스, 그리고 지역방송사업자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상의 부담금 (administrative charge), 사업기업규제개혁부로부터 보조금형식으로 받는 주파수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 보조금이 있다.

일본의 방송과 통신의 정책·규제기능은 정부부처인 총무성에서 통합하여 담당한다. 총무성의 역할은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불공정경쟁규제, 방송·통신의 주파수계획 수립 및 할당 등이며, 방송 내용규제에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규제이다. 일본은 보수적인 전파관리체제를유지하고 있으며, 전파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파이용료(spectrum user fee)의 명칭으로 회수하고 있다. 전파사용료의 용도는 전파의 안정적 이용의 확보(전파감시, 무선국 데이터베이스 운용 등)와 유한한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기술시험, 아날로그 변환) 등 전파관리비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및 전파이용의 보급·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국민의 조세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은 방송·통신의 정책과 규제가 모두 분리되어 있다. 통신은 연방 정부가, 방송은 16개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방송사의 설립과 인·허가 업무, 감독과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각 주마다 '주 미디어관리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에서 거둔 방송수신료의 일부(2%)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공영방송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수입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 의존하는 혼합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수신료가 전체 공영방송 재정의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신료 이외 광고수입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신규재정수요 검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의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규 재정수요부문으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주파수할당대가가 추가되었다. 기존의 문화·예술 진흥 부분의 사업은 제외되었다.

Ⅳ. 기금 중장기 비전 검토

1. 비전 현황

기존 방송발전기금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되면서, 기금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비전의 검토 가 필요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의사결정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수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기금 자체만의 중장기 비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취지를 반영하는 비전 설정이 요구된다.

비전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야 하며,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올바른 비전 제시를 위하여 조직원 인터뷰,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미션의 재정의를 하고, 중장기 비전 재구축을 하여 핵심가치 재정의를 하였으며, 비전과의 연계성을 재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전 검토 의견을 취합 한 후 1차 Screening을 통하여 12개의 안을 선정 한 후, 2차 Screening을 통해 7개의 안을 선정하였다. 7개의 안 중 방송통신 관련 전문가 의견에 의해「스마트시대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이 최종 선정이되었다.

Ⅴ. 전략연구

1.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략사업 검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략사업을 검토하기에 앞서, 최근의 방송발전 기금의 전략사업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어느 정도 매칭 되어 있는 지 살펴보았다.

2010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매칭정도를 살펴보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장 제26조 제1항 제4호(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사업이 31.7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제5호(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관련 사업 22.08%, 제2호(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관련 사업 17.58%, 제6호(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관련 사업 10.03% 순이며, 나머지는 10% 미만을 차지하였다.

2011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매칭정도를 살펴보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장 제26조 제1항 제1호(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관련 사업이 36.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제4호(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사업

22.48%, 제2호(방송통신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관련 사업 10.88% 순이며, 나머지는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방송통신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변화하면서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에 대한 비중이 많아졌다.

2. SWOT분석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전략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강점으로는 재원의 자체수급, 추가재원 확보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약점으로는 일반회계와 기금 가 이드라인의 불명확성, 연구개발 사업과 콘텐츠 관련 사업운용의 제약 성, 주파수 할당대가의 변동성이 있다. 기회로는 독자적인 자원배분의 기회와 기금업무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위협으로는 초창기 위탁기관의 기금 업무 경험 부족 문제와 주파수 할당대가의 향후 변동성이 있다.

3. 전문가 설문조사(AHP)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근거 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과 관련 산업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을 수립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SWOT분석과 AHP를 이용하여 전략사업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AHP분석 결과 비R&D 부분보다는 R&D 부분이 중요하다고 나왔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는 「연구개발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에 대해 높은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콘텐츠 진흥과 표준화 사업에 대해

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Ⅵ. 세부사업 검토

1. 세부사업 검토

2011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 30개에 대한 세부사업 60개를 검토하였다. 60개의 세부사업 중 2011년에 완료된 5개의 사업 중프로그램 제작비(융자) 사업은 제작비 자체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의 일시적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제작비 융자금 대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나머지 55개의 사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취지와 일치되며, 앞에서 도출하였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새로운 비전과 주요전략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 폰의 증가와 앱스토어의 증대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스마트 폰의 확대, 모바일네트워크의 진화로 모바일 웹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콘텐츠 벤처및 콘텐츠 수출확대 사업, 방송통신광고 전략, MVNO서비스 활성화기반조성, 차세대 무선 망 구축과 같은 네트워크 구축사업, 미디어 산업지원, 통신 소외계층에 통신이용권 지원 등이 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1) 기본 배경

방송과 통신은 그 기술적 차이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구분, 규율되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의 발전,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에 분리되었던 음성, 데이터 및 영상서비스의 융합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1) 방송통신 융합현상은 사용자를 주도적인 주체로 만들 고, 각 매체를 융합시키며 이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까지 융합시킬 뿐 아니라, 콘텐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 진전은 방송통신 내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산업 창출, 국민 참여 활성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진전에 따라 '방송통신융합산업'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17개 신 성장 동력 사업 중 구성하는 핵심요소 이며, 정부는 향후 5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년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동 시에 2018년까지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진행되면서 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자, 단말기, 규제 등의 차원에서 미디어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 형태는 산업/시장의 융합,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콘텐츠 융합, 규제의 융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던 규제체계와 규제기구가 통합이 되면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다.2)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 진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2011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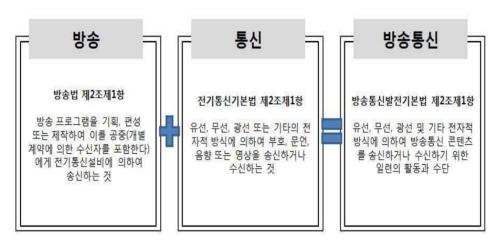
¹⁾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통상정책 재정립 방안연구, 강하연/ 여혁종, 2009.12

²⁾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고상원 외 37명, 2008.12

월 1일부터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재정지원체계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및 중장기 운용 전략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그림 1.1> 방송통신 규제 융합 현상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고상원 외 37명, 2008.12

2. 연구 목표 및 내용

1)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 마련을 통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체계 수립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 및 주요 특성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추가되는 재정체계를 확인 해 본 후 기금의 변화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변화상황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도출된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기금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연구 내용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 및 운용성과분석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3장에서는 현재까지 재정수요와 재정지원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된 후 신규 재정지원체계와 재정수요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워크숍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변화사항들을 고려하여 비전을 도출할 것이며, 제5장에서는 SWOT분석과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식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전략의 우선순 위를 분석하고, 조직구성원 인터뷰 방식을 통하여 전략을 도출한다.

제6장에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도출된 비전과 전략에 따라 현재 세부사업과 추가로 필요한 세부사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제언을 할 것이다.

현황분석 및 운용성과 분석 방송통신발전기금 비전 및 전략 수립 ■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장기 비전 검토 ■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 방송통신발전기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현황 및 운용성과 분석 전략 연구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장기 비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체계 연구 방송통신발전기금 세부사업 검토 수립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지원체계 연구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요구에 따른 한 세부사업 검토 신규재정수요 검토

<그림 1.2> 본 연구의 내용

3)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예상되는 결과물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과 중 장기 전략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관련 정책추진 체계의 기본 틀이 제시되며,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화가 이루어 질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비전 및 중장기 운영전략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문용전략 수립에 따라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는 정책수립 및 수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AS-IS 분석 전략 수립 방송통신융합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센터역할 제시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 중장기 기본종합계획(Master Plan)수립 가치체계 • 실행계획 수립 정립 • 기금의 공공성 및 정체성 확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전략의 체계화 3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수립 • 기금의 미션과 비전수립에 따라 기금운용의 일관성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

<그림 1.3> 본 연구의 기대효과

3.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절차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1단계에서는 (1) 방송발전기금의 현황분석 및 운용성과 분석 (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분석 및 운용성과 분석 (3) 재정지원체계 분석 (4) 신규 재정수요 검토 등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

기 운용전략을 마련하는 기반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해외의 방송과 통신의 재정지원체계를 조사·검토 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션과 비전을 검토하고 수립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전반의 일관성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을 연구하였다. 전략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인력, 지상파, 케이블TV, 미디어분야의 종사자, 학자들에게 연구진행과정에서 전략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전문가들에게 심층 인터뷰와 워크숍의 실시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을 도출하는데 있어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 제시를 하였다.

아울러 연구 주무부서 담당자와 연구진간의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연구 방법

1단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베이 피드백(Survey Feedback)방법을 이용하여, 내·외부 전문가와 조직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장·단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 한다.

2단계인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구성 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예: 워크숍)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하였다.

3단계 기금의 성공적인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설정된 기금의 비전과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기금의 현황 간의 차이(Gap)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기금의 비전에 도달할 수 있 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SWOT Matrix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림 1.4> SWOT Matrix분석 절차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AHP분석을 이용하였다.

AHP는 상이한 척도를 가진 요소들의 비교, 통합 또는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척도(Scale)가 다른 요소들의 합리적비교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수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 하였다.

Ⅱ. 현황 및 운용성과 분석

1. 방송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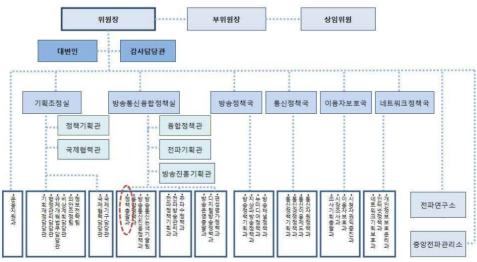
1) 현황

(1) 일반현황

2000년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은 지속적으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이 개정되어 오다가 2008년 소관 부서가 방송위 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관련업무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현재 2실 4국 6관 32과 3팀, 2소속기관이 있으며 이중 정책총괄과 부서에서 총 9명이 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 방송발전기금의 담당부서



(2010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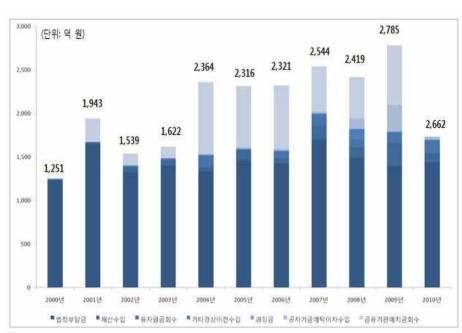
(2) 수입추이

방송발전기금은 100% 자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원은 방송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 재산수입, 융자원금회수, 기타 경상 이전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2000년에 비하여 2009년에 두 배 이상 증 가하였다.

수입원 중 법정부담금 수입은 2009년 결산기준으로 약 1,399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50.2% 규모이며, '07년~'09년 평균 법정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방송발전기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추이

(단위: 억원)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3) 지출추이

방송발전기금의 지출은 기금사업비,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기금사업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금액의 대부분을 방송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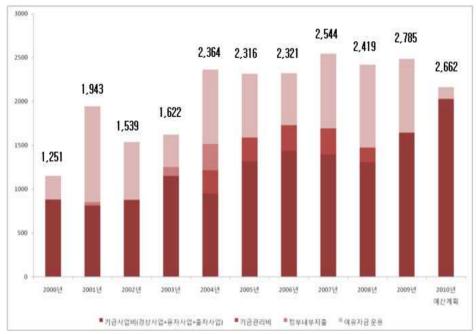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8조에 의해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시청자가 직접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남북한 방송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방송 기술 연구및 개발,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용도로 사용된다.

2008년까지는 방송진흥 사업 및 문화 예술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활성화 사업, 시청자 복지증진 사업, 방송기반 강화사업, 방송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융자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방송통신융합촉진사업, 방송통신 진흥 기반구축, 방송 인프라 개선,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전파방송 산업 기반조성 및 융 자사업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3> 방송발전기금의 지출추이

(단위: 억원)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표 2.1> 방송발전기금의 지출액

(단위 : 억원)

구분	'07년 결산	'08년 결산	'09년 결산	'10년 계획
전체지출액 (운용액-여유자금)	1,693	1,475	1,943	2,530
방송진흥목적사업	1,360	1,366	1,624	2,023
문예콘텐츠 활성화 지원	36	28	16	0
기금관리비	297	81	3	7
정부내부지출	0	0	300	500
방송진흥목적사업/ 전체지출액	80.33%	92.61%	83.58%	79.96%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4) 주요사업 변화

2008년까지 방송발전기금의 주요사업은 방송콘텐츠활성화, 시청자복지증진, 방송기반강화, 방송교류협력강화, 기관단체운영지원, 프로그램제작비융자, 디지털방송전환융자였다. 2009년부터는 예산 프로그램 체제 개편으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방송인프라개선, 방송진흥 기반구축, 전파방송 산업기반조성, 방송통신융합촉진이 있다.

2009년~2010년 평균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방송 인프라개선 사업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등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운영 및 방송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한 방송의 공적 인프라 강화사업)이 30.8%, 방송진흥 기반구축 사업(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지원, 시청점유율 조사 등 방송진흥을 취한 기반사업)이 30.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4> 방송발전기금의 평균 지출 비중





2) 운용성과

(1) 기금 운용성과

방송발전기금은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방송시장의 견실한 성장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방송시장 규모는 2000년에 비해 2008년 말 기준 약 2배 정도로 성 장하였으며, 시청자프로그램제작 및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원도 크게 증가 하였다.

<표 2.2> 방송발전기금의 성과

구분	2000년	2009년	
방송시장 규모	5조 574억 원	10조 9,581억 원 (′08년)	
방송매체	지상파(아날로그), CATV	DTV, CATV,위성, DMB, IPTV	
KBS 국제방송 주당 해외방송시간	805분	2,569분	
시청자프로그램 제작지원	0편	3,335편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0명	142,623명	
방송프로그램 수출	979만 \$	1억 6천만\$ ('08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표 2.3> 방송발전기금의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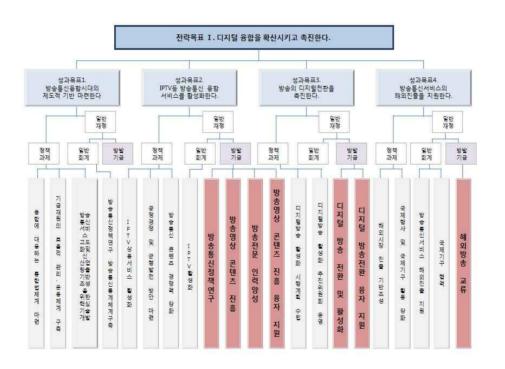
구 분	기금관	런 사업지표	설치 당시 (2000년)	현 재 (2009년)
		방송콘텐츠	55억 원	225억 원
		제작지원 규모	(방송진흥사업)	(융자 제외)
		방송사업자 수	154	348('08)
		방송사업 종사자 수	28,749	29,669
	① 방송	통신사업자 수	4,194	2,726('08)
정량적 평가	통신 융합	통신사업 종사자 수	78,271	101,832('08)
	촉진	IPTV사업자 수	0	3
		IPTV가입자 수	0	1,741,455가구 (VoD 포함 2,373,911가구)
		문예 진홍사업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규모	306억 원	16억 원
	② 전파 방송 산업 기반 조성	방송사업자 주파수 이용현황	자상화IV(이날로그) FM, AM라디오	지상파(디지털) 지상파(DMB) 위성방송 위성 DMB
		방송시장 규모	5조 574억 원	10조 9,581억 원('08)
		방송광고 시장규모	2조 5,201억 원	3조 2,115억 원('08)
	③ 방송 진흥	디지털방송수신기 보급률	0	55.1%
-1 -1 -1	기반 구축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수	0	6,118,118('08)
정량적 평가		지상파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0원	5,617억 원('08)
		방송광고 사전심의 지원	6억 원	0원
		EBS 프로그램 제작 공익성 지표 (EPEI)	6.82 (10점)	7.38 (10점)
	④ 방송 인프라 개선	KBS 국제방송프로그램 해외현지 방송시간	805분 (주)	2,569분 (주)
	· 11 G	아리랑국제방송 시청가능 가구 수	4,318만 가구	8,251만 가구
		영어FM 사업자수	0	4
정량적 편기	⑤ 이용자 보호 및	자막방송수신기 누적보급률	0	15.0%
평가	공정경쟁	화면해설방송수신기	0	9.1%

구 분	기금관	련 사업지표	설치 당시 (2000년)	현 재 (2009년)
		누적보급률		
		난청노인용수신기 누적보급률	0	3.6%
		자막방송 편성비율 (지상파 4사 기준)	0	94.6%
		수화방송 편성비율 (지상파 4사 기준)	0	4.0%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지상파 4사 기준)	0	5.5%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편수	0	3,335편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운영 사업자수	6	14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	0	142,623명
		방송프로그램 수입규모	4,001만\$	7,800만\$('08)
	⑥ 방송통신	방송프로그램 수출규모	979만\$	1억 6천민\$('08)
	국제협력 강화	쌍무 간 방송협력협정 체결국 수	0	기금사업 6 (전체 13)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 수	0	6
┃ 정량적	- 1-1	기금 운용규모	1,070억 원	2,913억 원
평가	⑦ 기타	사업비 지출규모	756억 원	1,718억 원
정성적 평가	① 방송통신융합촉진 ② 전 파 방송산업기 반조성 ③ 방송진흥기반구축 ④ 방송 인프라개선 ⑤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⑥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정성	방송·언론·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중심	방송진흥 및 방송통신 융합 촉진을 위한 핵심사업 지원 중심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방송발전기금의 비전과 전략에 따른 관리과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하에서 수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각 전략에 따라 세 부적으로 성과목표가 있으며 각 성과목표에 따라 정책과제와 일반재 정으로 수행된다. 일반재정으로 수행되는 관리과제는 다시 일반회계 와 방송발전기금의 관리 과제로 분류되어 사업이 수행되는 체계를 가 지고 있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하에서 방송발전기 금에 수행해야 할 업무의 우선순위는 정책방향에 의하여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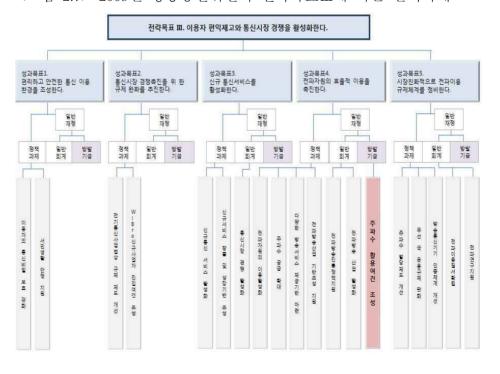
<그림 2.5>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전략목표 I 에 따른 관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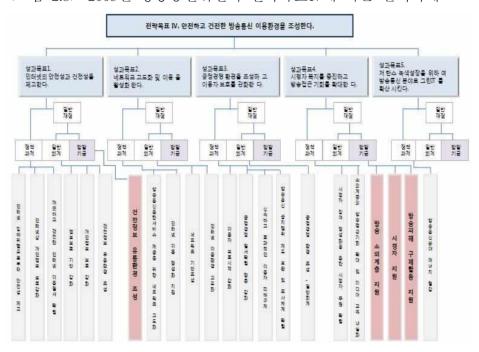


<그림 2.6>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전략목표Ⅱ에 따른 관리과제



<그림 2.7>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전략목표Ⅲ에 따른 관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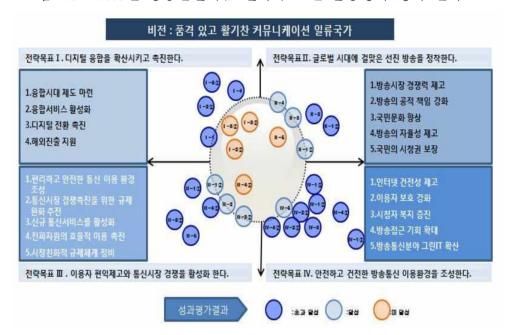
<그림 2.8>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전략목표IV에 따른 관리과제

2009년도 기금 운용성과를 살펴보면, <그림 2.9>와 같이 전략목표 별 성과목표는 4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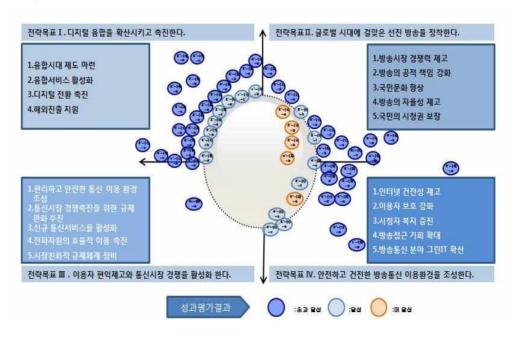
<그림 2.10>에서 성과목표 별 관리과제 성과 달성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리과제들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리과제 별 사업을 살펴보면 전략목표 Ⅲ인 '이용자 편익제고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한다.'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2.9> 2009년 방송발전기금 전략목표 별 운용성과 평가 결과



<그림 2.10> 2009년 방송발전기금 세부성과지표 별 운용성과 평가 결과



2. 정보통신진흥기금

1) 현황

(1) 일반현황

1993년 설치된 이후 2005년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에 의해 개편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이 되었다. 지식경제부에서 기금의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금 계획 수립과 결산 및 사업성 평가도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다.

위탁관리 조직은 2본부 8단, 2부설기관으로 되어있으며 이 중 기반 조성본부의 기금 관리 단에서 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직도



(2010.1.1기준)

(2) 수입추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자체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체수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도 결산기준으로 약 7,578억 원으로 전체수입의 61.7% 규모이며, '01년~'09년 평균 약 8,693억 원으로 약 47.7%를 차지하고 있다.

자체수입은 통신사업자 연구개발 부담금 및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구성된다.

<그림 2.1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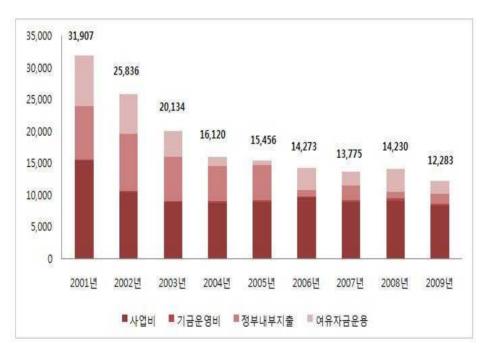
(3) 지출추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는 출연지출, 융자지출, 투자지출로 나누어지며 그 중 출연지출은 인력양성, 기술개발(연구기반, 초고속기반), 표준화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를 방송통신 원천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사업비는 정보통신산업진흥(비R&D), 방송통신진흥 기반조성, 정보통 신산업진흥, 산업원천기술개발(정보통신)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고 있 다.

<그림 2.1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추이





(4) 주요사업 변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07년~'08년 주요사업과 '09년~'10년 주요사업을 비교해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비 R&D)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07년~'08년 평균지출비중은 '09년~'10년 평균지출비중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 사업은 2.8%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진흥 기반조성 사업은 1.1%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비 R&D) 사업은 반 이상 감소하였다.

<그림 2.14>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평균 지출 비중

(단위 : 억원)



2) 운용성과

(1) 기금 운용성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 IT R&D에 총 12조 1천억 원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IT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 수출확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IT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미국) 대비 90%수준 ('08년)까지 도달하는 등 IT산업이 신기술 선도 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 결과 IT산업 실질 GDP비중은 '01년 6.7%에서 '08년 11%로 , 실질 GDP기억율은 '01년 13.9%에서 '08년 27.6%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반도체, 이동통신 등 12개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지난 3년간('07년~'09년) 2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였다.

3. 방송통신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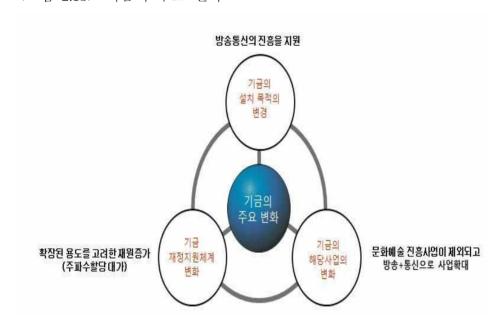
1) 현황

(1) 일반현황

2010년 9월 23일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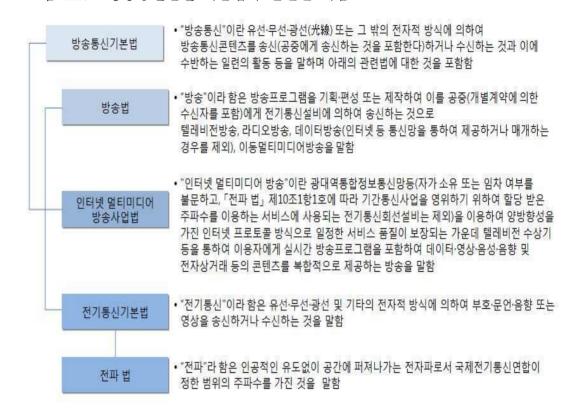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제4장에 의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2010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림 2.15> 기금의 주요 변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법과 전파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 기본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송관련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에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 등 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이 통합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관련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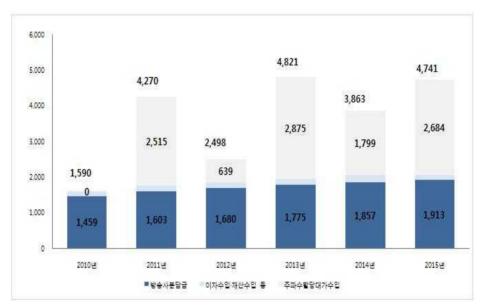
(2) 수입전망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기존의 방송발전기금 재원에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징수금, 전 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전환에 따라 산정된 금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자로부터의 분담금이 추가된다.

<표 2.4>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신규이용자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징수금
3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 대가
4	주파수할당 신청철회 및 미사용 주파수 반납에 따른 보증금
5	주파수 심사할당의 대가할당 전환자에 대한 산정 금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6	을 행하는 방송패널사용사업자로부터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의 분담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7	방송사업 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업자로부
'	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의 분담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
8	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
	의 분담금
9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10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금

(단위: 억원)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기존의 방송발전기금 수입에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의 45%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대가는 변동성이 큰 편이여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되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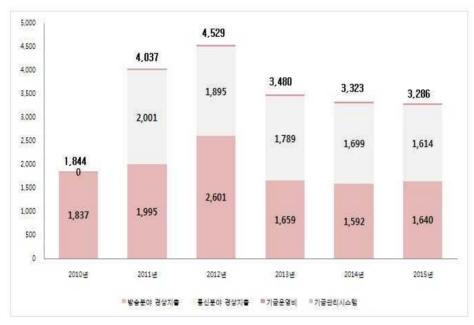
(3) 지출전망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의해 기존의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표준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방송통신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기간만료 전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이 추가되었다.

<표 2.5>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장등중산에 선인 현기개발 가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제7조(손실 보상 등)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제7조(손실 보상 등)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15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 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 재원으로 활용

(단위 : 억원)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Ⅲ. 재정체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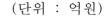
1. 재정지원체계 연구

1) 재원체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주파수할당대가, 종합편성, 보도 전문 채널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이 추가되었다. 2011년 방송통신발전 기금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주파수할당대가 및 보도전문 채널 방송사 업자의 분담금이 반영되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홈쇼핑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증가하였다. 인터넷멀티미디어 사업자의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2012년 수입계획부터 반영될 계획이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에 선정이 되었으며 분담금 징수율은 2011년 하반기에 검토될 예정이다.

<그림 3.1>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체계 변화





(1) 방송사업자 별 분담금

방송사업자 별 분담금은 방송사업자의 종류 마다 징수기준, 법정 징수율, 징수시기가 다르며 사업자 별로 적용 징수율도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으며(2009년 기준 52.21%를 차지함),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이줄어든 반면 다른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분담금은점점 늘어나고 있다.

<표 3.1> 방송사업자 별 기금 부담 금액

(단위: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지상파 방송 사업자	947	1,070	1,295	1,232	1,141	1,024	970	947	863	743
종합 유선 방송	-	-	-	52	152	163	192	233	284	325
홈쇼핑 방송	-	30	48	70	15	118	253	353	288	318
위성 방송 사업자	-	-	-	-	-	-	-	-	35	36
합계	947	1,100	1,343	1,355	1,308	1,305	1,415	1,533	1,470	1,422

출처: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 검토

<표 3.2> 방송사업자 분담금

대구분	소구분	징수기준	법정징수율	적용징수율	징수시기
지상파	KBS, EBS MBC, SBS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총 29개)			3.17% 4.75% 3.37%	현재는 매월 기금 징수 ↓
방송사업자	라디오 방송 사업자 영어FM 방송			2.87%	'11 [~] '13 분기별 징수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 용사업자	MBN, YTN	방송광고 매출액		6%이내 (아직 미정)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6%이내	매출액 구간별 차등징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 용사업자	12월 31일 선정된 5개 사업자			6%이내 (아직 미정)	
위성방송	일반위성 - 스카이 라이프	전년도		1%	매년 기금징수
사업자	위성DMB - 티유 미디어	방송사업 으로 인한 매출액		0%	(다음해에 징수) 익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매할액		6%이내 (아직 미정)	7월 31일 9월 30일
상품소개와	텔레비전 방송채널 사업자 (5개사)			12%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데이터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5개사) -겸업 5개사 제외	방송사업 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	15%이내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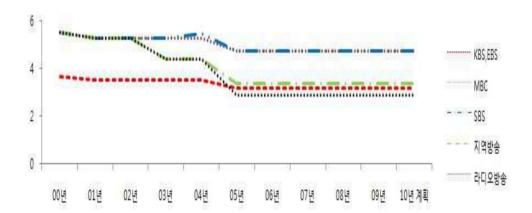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방송사업자 분담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분담금 징수율은 KBS, EBS는 3.17%, MBC, SBS는 4.75%,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는 3.37%, 라디오방송사업자와 영어 FM방송은 2.87%이다. 법정 징수율은 6% 이내로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분담금 징수율은 법정 징수율 이내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지 상파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다른 방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림 3.2>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추이

(단위:%)



'09년 지상파 방송매출의 58.9%이상을 광고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3사(KBS, MBC, SBS)가 지상파 광고수입의 72.1%(지역 MBC 포함86.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광고수입 점유율에서 MBC는 1,184억 원의 광고감소 영향으로 감소(25.8%→23.4%) 하였으며, KBS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24.2% →27.1%) 하였다.

<표 3.3> 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 수입

(단위 : 억원)

つ 日	구분		08	2009		증감	
丁豆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비율
	KBS	5,326	24.2%	5,203	27.1%	(123)	-2.3%
주요	MBC	5,680	25.8%	4,496	23.4%	(1,184)	-20.8%
3사	SBS	4,807	21.9%	4,143	21.6%	(664)	-13.8%
	소계	15,813	71.9%	13,842	72.1%	(1,971)	-12.5%
	지역 MBC	3,352	15.3%	2,820	14.7%	(532)	-15.9%
	기타 민영	1,859	8.4%	1,684	8.8%	(175)	-9.4%
기타	특수 방송	700	3.2%	574	3.0%	(126)	-18.0%
	EBS	256	1.2%	263	1.4%	7	2.7%
	소계	6,167	28.1%	5,341	27.9%	(826)	-13.4%
총 합	계	21,980	100.0%	19,183	100.0%	(2,797)	-12.7%

출처: 200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②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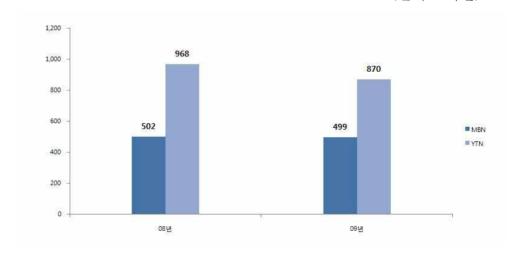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에 포함되며,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되며법정 징수율은 6% 이내로 되어있으나 적용 징수율은 아직 정해지지않았다.

현재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로는 YTN, MBN이 있으며, '09년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방송매출(1,369억 원)은 '08년(1,470억 원)보다 6.9% 감소하였다.

2010년 12월 31일 선정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주)연합 뉴스TV(연합) 이다. 기존에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인 MBN의 경우는 처분계획을 제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종합편성방송사업자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림 3.3> 보도전문 방송사업자 방송매출 추이

(단위: 억원)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개별 SO사업자를 포함하여 2009년 기준으로 사업자수가 102명이며, 상위 3개사(티브로드, CJ, 씨앤앰)가 전체 매출 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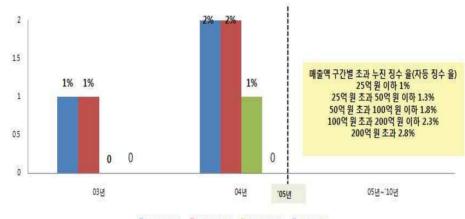
<표 3.4>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사업자	사업자수	08	U9	
티브로드	22	4,330	4,681	
СЈ	14	3,122	3,475	
씨앤앰	16	3,066	3,290	
3사 소계	52	10,518	11,446	
HCN	10	1,385	1,540	
CMB	12	939	955	
GS홈쇼핑	2	637	659	
온미디어	4	489	512	
MSO 전체	80	13,968	15,112	
개별 SO	22	2,773	2,933	
전체	102	16,741	18,045	

출처: 200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단위:%)



■1xf(93-537H) ■2xf(94-247H) ■3xf(01-337H) ■4xf(02-97H)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을 살펴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9년 방송사업 매출액 18,045억 원('08년 대비 7.16% 증가), 당기 순이익 2,833억 원('08년 대비 76.9% 증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영성과

(단위 :억 워)

구분	′05	′06	′07	′08	′09
방송사업 매출액	11,644	13,254	15,272	16,839	18,045
당기 순이익	933	823	2,685	1,601	2,833

출처: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 검토

④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6% 범위 내에서 징수하게 될 예정이다. 2010년 12월 31일 선정된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주)매일경제티브이(매일경제), (가칭)(주)채널에이(동아일보), (가칭)(주)씨에스티브이(조선일보), (가칭)(주)제이티비씨(중앙일보)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내년 3월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 장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할 것이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1년부터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이 되며, '11년 하반기에 분담금 징수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⑤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일반위성사업자와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구분되며 징수율이 상이하다. 위성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 사업으로 인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최근 2009년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수익 (4.9%), 방송사업수익(3.1%)이 200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영업 손익과 당기순손익은 흑자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영업수익(2.7%) 및 방송사업수익(0.1%)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 (29.8%) 및 당기순이익(14.3%)이 2008년 대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티유미디어는 영업수익(11.8%)과 방송사업수익(11.8%)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개시 후 최초로 영업손익 흑자를 나타내고 당기순손실(△382억 원→△61억 원)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위성방송사업자 가입자는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디지털케이블TV, IPTV, 지상파DMB 등과의 경쟁에 따라 가입자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다(스카이라이프: 2008년 9.4%→2009년 4.4%, 티유미디어: 2008년 45.4%→2009년 8.2%).

<표 3.6> 위성방송사업자 최근 경영성과

(단위 : 억원, 가입자, %)

	구 분	′06	′07	′08	′09	'08 대비
	영업수익	3,939	3,874	3,870	3,975	2.7
	방송사업수익	3,618	3,543	3,498	3,503	0.1
스카이	영업손익	155	411	248	322	29.8
라이프 (일반	당기순손익	36	432	217	248	14.3
위성)	영업비용	3,784	3,463	3,622	3,652	0.8
	가입자수	1,966,000	2,151,000	2,354,000	2,457,408	4.4
	전파사용료	2.8	1.5	1.7	1.8	5.9
	영업수익	888	1,197	1,193	1,334	11.8
	방송사업수익	888	1,197	1,193	1,334	11.8
티유	영업손익	-712	-631	-250	83	흑자전환
미디어 (위성	당기순손익	-842	-748	-382	-61	적자축소
DMB)	영업비용	1,599	1,828	1,443	1,251	-13.3
	가입자수	1,017,000	1,272,000	1,850,000	2,001,460	8.2
	전파사용료	29.9	29.0	22.8	23.4	2.6
	영업수익	4,827	5,071	5,063	5,309	4.9
	방송사업수익	4,506	4,740	4,692	4,838	3.1
	영업손익	-557	-220	-2	405	흑자전환
합계	당기순손익	-806	-316	-165	187	흑자전환
	영업비용	5,383	5,291	5,065	4,904	-3.2
	가입자수	2,983,000	3,423,000	4,204,000	4,458,868	6.1
	전파사용료	32.7	30.5	24.5	25.2	2.9

출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안) 검토

⑥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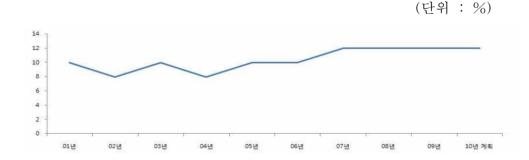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적용 징수율은 전년도 방송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6% 이내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매출은 IPTV가입자 수로 추정할 수 있다. Pre-IPTV가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IPTV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전제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점차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은 2001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두 가지 사업자로 구분하며 징수율이 상이하다.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업자(5개 사)의 경우는 12%의 징수율을 부담하며, 데이터 방송채널사업자(10개 사)의 경우는 10%의 징수율을 부담하고 있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징수율 추이를 살펴보면, 8%~12%로 2007년부터 12%의 징수율을유지하고 있다.

<그림 3.5>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징수율 추이(텔레비전 방송채널사업자 기준)



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근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 2009년 영업수익은 25,622억 원(2008년 대비 22.0%증가), 방송사업 수익은 19,140억 원(2008년 대비 23.2%증가), 영업손익은 4,502억 원(2008년 대비 27.0% 증가), 당기순손익은 3,515억 원(2008년 대비 68.4% 증가), 영업비용은 21,119억 원(2008년 대비 20.9% 증가)으로 모두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7> 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근 경영 성과

(단위: 억원, %)

구분	′06	′07	′08	′09	'08년 대비
영업수익	18,849	19,278	21,010	25,622	22.0
방송사업수익	14,191	14,467	15,533	19,140	23.2
영업손익	3,677	3,158	3,546	4,502	27.0
당기순손익	2,506	2,015	2,087	3,515	68.4
영업비용	15,172	16,121	17,463	21,119	20.9

출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안) 검토

(2) 주파수할당대가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수를 일정기간 독점하여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부과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할당대가가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2010년 9월 주파수할 당대가의 4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협의로 결정되었다.

주파수할당대가의 재원 추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도별 주파수할당대가의 편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 주파수할당대가 배분 내역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11	′12	′13	′14
신규	방통기금 (45%)	2,515	639	2,875	1,799
주파수 할당대가	정진기금 (55%)	3,074	781	3,514	2,199
	소계	5,588	1,420	6,389	3,997
IMT-2000	정진기금	3,515	-	_	_
주파수할당대가 합계		9,103	1,420	6,389	3,997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2) 재원체계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방송사업자 별 기금 부담 금액 추이를 고려한다면 지 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파수 할당대가와 같은 재원은 연도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사업계 획을 수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는데 어 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업자의 분담금과 주파수할당대가의 전망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별 분담금 징수 예상금액과 주파수 할당대가 예상금액을 살펴보면, '09년 1,409억 원에서 매년 점증하다가 IPTV기금 징수가 이루어지는 '1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업자 별로 살펴보면, 위성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업자(2011년 수입계획부터 반영). IPTV(2013년 수입계획부터 반영)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으로 증가한다.

종합편성방송사업자 및 '11년부터 신규 홈쇼핑사업자의 추가로 징수 예상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 법정 부담금 징수 예상금액

(단위: 억 원)

구분	'09 결산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지상파 방송사업자	700	818	777	808	841	878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325	284	339	352	367	383
위성 방송사업자	36	35	36	52	54	57
홈쇼핑 사업자	318	309	420	436	455	475
보도전문 채널사업자	0	0	30	31	32	34
IPTV	0	0	0	0	26	30
민간 출연금	19	13	0	0	0	0
주파수 할당대가	0	0	2,515	639	2,875	1,799
총계	1,399	1,459	4,117	2,318	4,649	3,655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3) 기타 재원 검토

앞서 언급했듯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규 추가재원인 주파수할당대 가는 년도 별 격차가 심하여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는 없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재원 외에 추가로 재 원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인 전파사용료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전파사용료3)

전파사용료는 국가 자산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전파의 이용에 따라 부과하는 전파의 관리수수료적인 성격의 사용료로 전파관리의 비용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무선국을 대상으로 무선국 시설 자에게 분기별로 산정 식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현재는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있어 고유의 목적 외에 전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으로의 예산 적용이 가능하다.

³⁾ 전파관리 규제비용 체계도입을 통한 전파사용료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이종관, 2009.11

<표 3.10> 전파사용료 산정방식

무선국 형태		부과기준	전파사용료 산정 식	
할당받은 주파수를 직접 사용하는 무선국		가입자 수	(가입자 수 × 단가) × 감면계수 × 전파특성계수	
고정 무선국	기간통신업자 의 기타 무선 국 및 위성방 송 보조국	무선국	기초가액(25만원) × 전파사용량 계수 × 서비스계수 × (1-공용화 감면계수)	
	일반 무선국	별	기초가액(2천원) × (√공중선전 력 + 전파의 폭) × 선호계수 × 이용행태계수 × 목적계수 × (1- 공용화 감면계수)	
이동 무선국 또는 임대목적지구국		무선국 별 고정액	2만원(육상이동 지구국, 선박 지 구국 등), 3천원(공중통신망을 이용한 육상이동 국 등)	

출처: 전파관리 규제비용 체계 도입을 통한 전파사용료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현재 전파사용료의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징수액의 96.5%를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T)가 차지하고 있다.

<표 3.11> 사업자 별 전파사용료 납부현황

(단위: 억원)

	납부					
구분	사업자	'05	'06	'07	'08	'09
) 가입자	SK텔레콤	1,551	1,582	1,632	1,633	1,574
	KT					
보유 기간	(구 KT프	590	602	632	686	705
통신사업자	리텔)					
(이동통신	LG텔레콤	336	355	385	424	449
사업자)	기타	3.3	3.4	3.6	6.7	2.5
무선국	소계	2,480	2,542	2,653	2,750	2,731
기타기간	KT	11.6	10.9	13.3	11.4	8.7
통신사업자	데이콤,					
무선국 및	하나로,	2.3	1.8	1.6	1.4	1.1
위성DMB	온세 등					
위성방송	TU미디어	11.9	29.9	29	23	23
보조 국	소계	26	43	44	35.8	32.8
	KBS	9.9	9.4	9.9	7.8	8
	MBC	1.8	1.8	1.6	1.4	1.4
	SBS	0.6	0.8	0.6	0.5	0.6
방송용 및 일반자가용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1.5	2.8	1.5	1.7	1.8
무선국	기타 방송	0.8	0.7	0.6	0.6	0.6
	기타(택시 조합, 도시 가스 등)	18.3	25.2	18	13.2	13.6
	소계	33	41	32	25.2	26
이동하며						
사용하는	현대건설,					
무선국 및	대우조선	29.5	31.4	33.6	36	37.6
임대목적	등					
지구국						
합계		2,569	2,657	2,763	2,847	2,827

출처: 전파관리 규제비용 체계 도입을 통한 전파사용료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전파사용료의 향후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큰 변동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한다.

일정한 수입원인 전파사용료는 원래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올바른 지출용도를 지정하여 일반회계와는 분리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일관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국가 및 지자체의 전파사용료 면제(국내에서 할당된 주파수 중 3분의 1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사용), 지상파 DMB 전파사용료 면제와 같은 비 효율적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표 3.12> 전파사용료 징수전망

(단위: 억원)

구분	'10 예산	′11	′12	′13	′14
금액	3,310	3,006	2,843	2,832	2,827

출처: 전파관리 규제비용 체계 도입을 통한 전파사용료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표 3.13> 예산과 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운영 - 특정세입 으로 특정세출 충당	- 특정 사업의 안정적 지원 - 탄력적 집행
재원	- 조세수입 - 세외수입 - 적자국채	목적세출연금 및부담금판매대가기타	다양한 재원주로 출연금,부담금, 자산운용수익
운용형태	- 무상급부	- 기업적 사업 - 융자 - 일반회계 성 사업	 다양한 사업 융자, 보증, 보험 등 금융적 성격이 다수 일반회계 성사업
편성 및 확정	- 정부가 편성권 - 국회가 확정	- 정부가 편성권 - 국회가 확정	기금관리 주체가 사실상 편성여타 사항은동일
집행 자율성	- 거의 없음	- 거의 없음	- 항 기준 20% 범위 내에서 탄력성
수입과 지출연계	-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4) 해외 사례

해외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규제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정책·규제기능이 단일 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FCC), 일본(총무성) 등이 있으며, 영국은 방송과 통신의 정책기관은 분리되어 있지만 규제는 통합규제기구인 Ofcom에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이 모두 분리되어있다.

(1) 미국4)

미국의 방송·통신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FCC에 의해 통합관리 되고 있다. FCC는 1934년 통신법(Communi cation Act of 1934)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으며, 미국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국내 및 해외 유무선통신서비스를 빠르고, 효율적이며, 적절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FCC가 사용 또는 관할하는 재원으로는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 보편적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위한 부담금, 주파수 경매대금(spectrum auction proceeds), 인허가 수수료(application fee), 기타잡수입이 있다.

⁴⁾ http://www.fcc.gov/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재정체계 정비방안, 2008.12 인용하여 편집하였음.

<표 3.14> FCC 사용 또는 관할하는 재원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영리사업자에게 부
	과 됨 (5개 그룹으로 분류)
	① 민간이동무선서비스
	(private wireless radio service)
1. 규제 수수료	② 대중매체서비스
(regulatory fee)	(mass media services)
	③ 케이블 서비스 (cable services)
	④ 통신사업자서비스
	(common carrier services)
	⑤ 국제서비스 (international services)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업체(지역 및 장거
	리전화 회사, 무선 통신회사 등)가 법률
0 4 24 4 4 4 4	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
2. 보편적 서비스	<2010년 10월 9일 기준>
(universal service)를	'adjusted quarterly contribution base for
위한 부담금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
	= fourth quarter 2010 revenues -
	projected revenue requirement - 1%
3. 주파수 경매대금	FCC가 정부를 대신하여 보관하는 계정으
(spectrum	로 경매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auction proceeds)	도 경매구합이 내구군을 자시하고 있음
4. 인허가 수수료	
(application fee)	
(application 100)	
┃ 5. 기타 잡수입	

①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의 경우는 사업자와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2010년 예산 기준 방송관련 사업자의 경우 31%를 부담하고 있으며, 통신관련 사업자의 경우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다.

<표 3.15> 2010년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 기준 및 금액

(단위 : \$)

		. — , , , ,
대상	기준	금액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CMRS) -mobile, cellular service	전화번호 수	0.17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CMRS) -messaging service	전화번호 수	0.08
Broadband Radio Service (BRS)	면허 수	300
Local Multipoint Distri -bution Service	call sign	300
AM Radio Construction Permits (신규)	기지국의 유형과 방송 대상지역의 인구	420
Fm Radio Construction Permits (신규)	기지국의 유형과 방송 대상지역의 인구	630
TV VHF Commercial	시장규모	
Markets 1-10		78,000
Markets 11–25		60,525
Markets 26-50		40,675
Markets 51-100		22,725
Remaining Markets		5,875
Construction Permits		5,875
TV UHF Commercial	시장규모	
Markets 1-10		25,300
Markets 11-25		24,850
Markets 26-50		13,750
Markets 51-100		8,225

Remaining Markets		2,025
Construction Permits		2,025
Satellite Television Stations (all markets)		1,250
Construction Permits -Satellite Television Station		640
Low Power TV, Class A TV, TV/FM Translators & Boosters		400
Broadcast Auxiliaries		10
CARS	면허 당	260
Cable Television Systems	가입자 당	0.86
Earth Station		230
Space Station also includes DBS Service (peroperational station in geostationary orbit)		124,825
Space Station (per operational system in geostationary orbit) also includes DBS Service (per operational station)		134,700
International Bearer Circuits -Terrestrial/ Satellites		0.66

<표 3.16> 2010년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 징수 예상 금액 (단위 : \$)

	규제 수수료				
구분	(regulatory	fee)			
	2010년 예상	금액			
	Broadband Radio Service (BRS)	514,600			
	LMDS	158,100			
	AM Class A	253,300			
	AM Class B	3,053,700			
	AM Class C	1,078,650			
	AM Class D	3,589,125			
	FM Class A, B1 & C3	7,372,000			
	FM Class B,C,C,C0,C1&C2	9,308,775			
	AM Construction Permits	43,680			
	FM Construction Permits	105,300			
┃ 방송 사업자	Satellite TV	163,800			
분담금	Satellite TV Construction Permit	2,025			
	VHF Markets 1-10	1,631,000			
	VHF Markets 11-25	1,708,425			
	VHF Markets 26-50	1,404,150			
	VHF Markets 51-100	1,140,000			
	VHF remaining markets	747,250			
	VHF construction permits	18,375			
	UHF markets 1-10	3,775,175			
	UHF markets 11-25	3,398,475			
	UHF markets 26-50	2,910,600			
	UHF markets 51-100	2,829,750			

	5,700
LILIDtime-timeit-	
UHP construction permits 36,	,600
Broadcast Auxiliaries 275	5,000
LPTV/Translators/Boosters/Class A TV 1,41	1,000
CARS STATIONS 173	3,250
Cable TV Systems 57,40	05,000
Total 105,342,	805(32%)
PLMPS (Exclusive Use) 480),000
PLMPS (Shared Use) 2,30	0,000
Microwave 2,37	5,000
218-219MHZ 1,9	950
Marine(ship) 800),000
GMRS 242	2,500
Aviation(aircraft) 230),000
Marine(coaft) 119	9,250
Aviation(ground) 150),000
Amateur Vanity Call Sign 196	5,840
Interstate Telecommunication 151,1 service providers	17,000
22 - 2 -	40,000
CMRS Message Services 480),000
Per 64 kbps Int's 1 Bearer Circuits Terrestrial(common) & Satellite(common & non-com mon)	0,233
Submarine Cable Providers 7,98	3,860
Earth Stations 864	1,000
space stations(geostationary) 11,12	29,475
space station (non-geostationary) 828	3,300
Total 230,888,	408(68%)

② 보편적 서비스 기금 (universal service fund)

FCC는 USF(Universal Service Fund) 및 NANP(North American Numbering Plan)를 관리·감독한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은 4개의 universal service(고비용 지역, 저소득층, 농촌지역 의료기관, 학교 및 도서관)와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통신장애자 지원)로 구성된다. universal service는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업체(지역 및 장거리 전화회사, 무선통신회사 등)가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하며,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는 장거리통신 서비스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USAC는 매 분기마다 기금의 비용을 추정하여 FCC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FCC가 분담비율을 결정한다.

<표 3.17> 2010년 4분기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단위: \$)

Program	Projected	Admin.	Application	True-Ups	Total
	Program	Expense	of Interest	and Other	Program
Demand	Support	S	Income	Adjustment	Collection
Schools					
and	552.99	9.51	(3.36)	(6.94)	552.20
Library					
Rural					
Health	15.67	2.35	(0.42)	(0.95)	16.65
Care					
High-Cost	1,160.61	1.99	(0.12)	(74.14)	1,088.34
Low	361.33	(0.09)	(0.09)	(49.75)	311.73
Income	332.00	(3.00)	(3.00)	(20110)	322.70
TOTAL	2,090.93	13.76	(3.99)	(131.78)	1,968.92

<표 3.18> 2011년 보편적 서비스 기금 (universal service fund) 예상 (단위 : \$millions)

USF Mechanism	Direct Costs	USAC Common	Total
Schools and Library	14.34	4.85	19.19
Rural Health Care	3.04	0.74	3.78
High-Cost	1.22	3.09	4.31
Low Income	0.84	0.89	1.73
TOTAL	19.44	9.57	29.01

<표 3.19> 보편적 서비스 기금 (universal service fund) 부담 금액

(단위 :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동 통신 사업자	719.14	776.27	858.23	906.31	946.70	978.86	1,070.1 5	1,172.6 6	1,288.9 7	1,294.7 2
Internet Access	218.74	224.77	249.97	276.04	245.67	264.47	290.64	310.64	336.77	348.28
Internet Connec tions	1,133.51	1,182.78	1,122.91	1,528.83	1,028.38	745.43	502.40	802.47	759.06	927.68
Internet Connec tions- Maint	ı	_	-	_	_	135.21	124.11	158.53	126.01	194.26
Total	2,071.39	2,183.82	2,231.11	2,711.18	2,20.75	2,123.97	1,987.30	2,444.30	2,510.81	2,764.94

<표 3.20> 2010년 보편적 서비스 기금 (universal service fund) 부담 금액

(단위: \$)

	금액	비중
이동통신사업자	886.22	66.20%
Internet Access	267.49	19.98%
Internet Connections	143.67	10.73%
Internet Connections-Maint	41.31	3.09%
Total	1,338.69	100.00%

③ 주파수 경매대금 (spectrum auction proceeds)

주파수 경매대금 수입금은 정부를 대신하여 보관하는 계정으로 수입 중 경매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위원회의 경매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고, 향후 경매관리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한다.

(2) 영국5)

영국은 방송·통신의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DTI와 DCMS가 방송·통신 정책의 목표와 규제원칙을 수립한 후 입안을 통하여 실현한다.

DCMS는 방송 산업 진흥과 BBC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이외의 모든 규제기능은 통합규제기구인 Ofcom을 설립하여 단일화 하고

⁵⁾ http://www.ofcom.org.uk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재정체계 정비방안, 2008.12 인용하여 편집하였음

있다.

Ofcom은 방송·통신사업자의 허가, 방송주파수 할당, 전파사용료 (License Fee), 불공정경쟁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fcom의 재원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허가수수료(License Fee), 라디오 방송 허가 수수료(License Fee), 컴퓨터 통신망이나 서비스, 그리고 지역방송사업자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상의 부담금 (administrative charge), 사업기업규제개혁부로부터 보조금형식으로 받는 주파수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 보조금이 있다.

<표 3.21> Ofcom의 재원

	<u>5개의 범주</u> 로 나누어짐
	① Channel 3, Channel 4, Channel 5 and
	peblic teletext service licence
	②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 1. 텔레비전 방송 허가	licences,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1. 텔데비전 경등 역가 수수료(License Fee)	service licences, commercial additional
十十基(License Fee)	television services licences,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s
	③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licences
	4 television multiplex licences
	⑤ teleshopping channels
2. 라디오 방송 허가	
수수료(License Fee)	
3. 컴퓨터통신망이나 서비스,	
그리고 지역방송사업자와 관	
련 시설에 대한 행정상의 부	
담금	
(administrative charge)	
4. 사업기업규제개혁부로부	
터 보조금형식으로 받는	
주파수 관리를 위한 운영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	
금	
5. 보조금	

① 텔레비전 방송 허가수수료(License Fee)

텔레비전 방송 면허수수료는 면허에 수반하는 수익으로 비용충당의 원칙에 따라 징수가 된다.

텔레비전 방송 허가수수료는 5개의 범주로 나누어져서 징수되고 있다. 속해있는 범주에 따라 징수율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다.

TV 방송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며, 비율은 최대 1% 미만이다.

<그림 3.6> 텔레비전 방송 허가수수료 5개의 범주

- i) Category A Channel 3, Channel 4, Channel 5 and the Public Teletext Service Licence. (Note that this category includes associated TLCS licences where content is simulcast);
- ii) Category B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s,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s, Commercial Additional Television Services Licences and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s. (Note that this category does not include those TLCS licences which are included in Category A);
- iii) Category C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Licences (long-term and short-term);
- iv) Category D Television Multiplex Licences;
- v) Category E Teleshopping Channels.

□ Category A and B (허가 수수료)Licence fee

<표 3.22> Category A and B (허가 수수료)Licence fees

Relevant Turnover	Category A PSB Revenues	Category B PSB Simulcast Revenues	Category B Non-PSB Revenues
Bands			
£0m - £10m	0.18859%	0.18859%	0.04609%
£10m - £35m	0.28289%	0.28289%	0.09231%
£35m - £75m	0.42434%	0.42434%	0.18461%
£75m - £300m	0.63650%	0.63650%	0.36921%
Over £300m	0.0%	0.0%	0.0%

Notes:

- Minimum Fee=£1,000
- Rates are expressed cumulatively, e.g. for Category A licensees. 0.18859% is charged on the first £10m of Relevant Turnover; 0.28289% on the next £25m; 0.42434% on the next £40m and 0.63650% on the next £225m.
- □ Category C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표 3.23> Category C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Tariff for 2009/10	
	(£)	
Restricted Event Licences		
Up to 1,000 seats	100	
1,001 - 5,000	150	
5,001 - 20,000	250	
over 20,000 seats	500	
Restricted Services Licence	500	

□ Category D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표 3.24> Category D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Tariff for 2009/10	
	(£)	
Digital Multiplex		
Fee per annum	10,000	
Application/Renewal fee	25,000	

□ Category E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표 3.25> Category E (허가 수수료) Licence fees

	Tariff for 2009/10	
	(£)	
Shopping Channels		
Fee per annum	2,000	

□ 심사 수수료 (Application fees)

application fees는 1회성 방송과 통신망과 서비스의 application 수수료이다.

<표 3.26> 심사 수수료 (Application fees)

	Tariff for 2009/10 (£)	Transfers/ Variations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2,500	1,000
Restricted Events Licence	250	_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2,500	1,000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	2,500	1,000
Digital Channel 3, Channel 5, and Public Teletext Licences	30,000	30,000
Public Service-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15,000	1,000

Note: When the request to vary a PS-DTPS is made by a person who is a relevant public service broadcaster by virtue of holding a channel 3 licences, and that variation is made on behalf of all the holders of regional channel 3 licences who also hold PS-DTPS licences, this will typically be deemed as one variation request to which one variation fee is applicable.

② 라디오 방송 허가 수수료 (License Fee)

라디오 방송 허가수수료는 national and local radio 와 community radio, short term과 long term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 공영 방송과 지역 방송 허가 (National and local licences) : 심사, 허가 수수료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표 3.27> 공영 방송과 지역 방송 허가 - 심사 수수료
(National and local licences: application fees)

		Tarif	f for 2009/10 (£)
	Population(Aged 15+)	FM	AM
National			
Licences			
All licences		100,000	100,000
Local			
Licences			
Category A	4,500,000+	50,000	14,500
Category B	1,000,000-4,500,000	25,000	8,000
Category C	400,000-1,000,000	10,000	3,500
Category D	0-400,000	5,000	1,000

<= 3.28> 공영 방송과 지역 방송 허가 - 허가 수수료 (National and local licences: licence fees)

Bands	Tariff for 2009/10 % of Relevant Turnover
£0m - £1m	0.173%
£1m - £5m	0.259%
Over £5m	0.388%

<= 3.29> 공영 방송과 지역 방송 허가 - 허가 갱신
(National and local licences: licence Renewals)

		Tariff	for 2009/10 (£)
	Population(Aged 15+)	FM	AM
National Licences			
All licences		100,000	100,000
Local Licences			
Category A	4,500,000+	21,200	14,500
Category B	1,000,000-4,500,000	11,800	8,000
Category C	400,000-1,000,000	5,000	3,500
Category D	0-400,000	1,500	1,000

□ 공영과 지역 다중통신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National and local radio multiplex licences: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표 3.30> 공영과 지역 다중통신 허가 - 허가 심사

(National and local radio multiplex licences: licence applications)

	1	
	Population(Aged 15+)	Tariff for 2009/10 (£)
National		
Licences		
All licences		50,000
Local		
Licences		
Category A	4,500,000+	25,000
Category B	1,000,000-4,500,000	15,000
Category C	400,000-1,000,000	5,000
Category D	0-400,000	1,000

<표 3.31> 공영과 지역 다중통신 허가 - 년도 별 허가 수수료 (National and local radio multiplex licences: annual licence fees)

	Tariff for 2009/10(£)
National radio multiplex licences	10,000
Local radio multiplex licences	500

□ 커뮤니티 라디오 - 심사, 허가 수수료

(Community radio :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표 3.32> 커뮤니티 라디오 - 심사, 허가 수수료

(Community radio :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Tariff for 2009/10(£)
Application fee	600
Annual licence fee	600

□ 제한된 서비스 허가 (단기) - 심사, 허가 수수료 (Restricted service licences(short-term):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표 3.33> 제한된 서비스 허가 (단기) - 심사 수수료

(restricted service licences(short-term): application fees)

	Tariff for 2009/10(£)
Restricted Service Licence(short term)	Application Fees
Application Fee	400

<표 3.34> 제한된 서비스 허가 (단기)

(restricted service licences(short-term))

	Daily rate (£)
a) AM(medium wave)	
All power levels	10
b) FM(VHF) e.r.p.	
i) Up to and including 1W	10
ii) Above 1W, up to and inc. 25W	30

- non-consecutive

	Fixed rate (£)
a) AM(medium wave)	
i) 29 to 140days	675
ii) Over 140days	1,250
b) FM(VHF)	
i) 29 to 140days	1,000
ii) Over 140days	1,550

<표 3.35> 단기간 제한된 서비스 허가의 개정 수수료 (short-term restricted service licences amendment fee)

	Tariff for 2009/10(£)
Restricted Service Licence(short term) Amendment Fees	
Amendment Fee	200

□ 제한된 서비스 허가(장기) - 심사, 허가 수수료 (Restricted service licences (long term) :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 3.36> 제한된 서비스 허가 (장기) - 심사 수수료 (restricted service licences(long-term): application fees)

	Tariff for 2009/10(£)
Restricted Service Licence(long term) Application Fees	
Application Fee	200

<= <표 3.37> 제한된 서비스 허가(장기) - 년도 별 허가 수수료 (restricted service licences(long-term): annual licence fees)

	Annual Licence Fee(£)
a) Induction Loop(AM)	
Licence fee per annum	140
b) Low-powered (FM) Up to and	
including 50mW e.r.p.	
Licence fee per annum	140
c) Low-powered(AM) Up to and	
including 1 watt.	
Licence fee per annum	275

<= 3.38> 장기간 제한된 서비스 허가의 개정 수수료 (restricted service licences(long-term): amendment fees)

	Tariff for 2009/10(£)
Restricted Service Licence(long term)	Amendment Fees
Amendment Fee	200

- □ 오디오 분배 시스템의 제한된 서비스 허가 심사, 허가 수수료 (Audio distribution system(ads) restricted service license: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 <표 3.39> 오디오 분배 시스템의 제한된 서비스 허가 심사 수수료

 (audio distribution system(ads) restricted service license
 : application fees)

	Tariff for 2009/10(£)
ADS Restricted Service Licence Applic	ation Fees
Application Fee	200

<= 3.40> 오디오 분배 시스템의 제한된 서비스 허가 - 연도별 허가 수수료 (audio distribution system(ads) restricted service license: annual licence fees)

	Annual Licence Fee(£)
Licence fee per annum	275

<표 3.41> 오디오 분배 시스템의 제한된 서비스 허가 - 개정 수수료

 (audio distribution system(ads) restricted service license
 : amendment fees)

	Tariff for 2009/10(£)	
ADS Restricted Service Licence Amendment Fees		
Amendment Fee	200	

□ 라디오 허가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Radio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s: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 3.42> 라디오 허가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허가- 심사, 허가 수수료 (radio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s :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Annual Licence Fee(£)
Application fee	250
Annual licence fee	575

□ 디지털 사운드 프로그램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Digital sound programme license: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표 3.43> 디지털 사운드 프로그램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digital sound programme license : application and license fees)

	Tariff for 2009/10(£)
Application fee	250
Annual licence fee	100

□ 디지털 추가적인 서비스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Digital additional services license :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 <표 3.44> 디지털 추가적인 서비스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digital additional services license :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Tariff for 2009/10(£)
Application fee	250
Annual licence fee	100

□ 추가적인 서비스 허가 - 심사, 허가 수수료
(Additional services licences: application and licence fees)

<표 3.45> 추가적인 서비스 허가 - 심사 수수료 (additional services licences: application fees)

	Tariff for 2009/10(£)
Additional Services Licences (on Nation	nal FM Services only)
Application Fee	20,000

<표 3.46> 추가적인 서비스 허가 - 연도별 허가 수수료 (services licences : 연도별 licence fees)

	Tariff for 2009/10(£)
Additional Services (on National FM Services only)	
Percentage fee of relevant turnover	10%
Minimum (per annum)	£25,000
Maximum (per annum)	£100,000

③ 컴퓨터통신망이나 서비스, 그리고 지역방송사업자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상의 부담금 (administrative charge)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에서 관련 매출액에 따라 납부 수수료가 달라지고 있다.

<표 3.47>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행정 부담금

Bar	nds			
Bottom(£)	Trans (C)	Relevant	Fee	
DOMOIII(T)	$\operatorname{Top}(\mathfrak{t})$	Turnover(£)	Payable(£)	
0	5,000,000	0	_	
5,000,000	10,000,000	5,000,000	3,185	
10,000,000	25,000,000	10,000,000	6,370	
25,000,000	50,000,000	25,000,000	15,925	
50,000,000	75,000,000	50,000,000	31,850	
75,000,000	100,000,000	75,000,000	47,775	
100,000,000	150,000,000	100,000,000	63,700	
150,000,000	200,000,000	150,000,000	95,550	
200,000,000	300,000,000	200,000,000	127,400	
300,000,000	400,000,000	300,000,000	191,100	
400,000,000	500,000,000	400,000,000	254,800	
500,000,000	600,000,000	500,000,000	318,500	
600,000,000	750,000,000	600,000,000	382,200	
750,000,000	1,000,000,000	750,000,000	477,750	
Above		Actual Relevant	0.06371%	
£1,000,000,000		Turnover	0.00571%	

④ 사업기업규제개혁부로부터 보조금형식으로 받는 주파수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

기회비용을 기반으로 한 전파사용료와 수익(이익)을 기반으로 한 전파사용료를 혼용하여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Ofcom의 규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허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AIP(행정유인가격)방식에 의해 산정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여 면허료로 부과한다. 면허료는 공공용(국가기관 포함) 및 사업용에 대한 구별 없이 부과한다.

<= 3.48> 기본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대가 사용요금 (radio spectrum usage fees for basic services)

		First year I	First year License Fees		License Renewal Fees	
CODE	Description	Application	Annual	Applicatio	Annual	
		fee	Charge	n fee	Charge	
AT	Amateur licenses(all types)	50	40	35	40	
AB	Aeronautical base station	50	75	35	75	
AM	Aeronautical mobile	50	60	35	60	
MCB	Marine Coast Base Station	50	75	35	75	
MS1	Marine Ship Station single radio	50	60	35	60	
MS2	Marine Ship Station tow radios	50	80	35	80	
MS3	Marine ship Station>two radios	50	100	35	100	
BCAM	Broadcast Radio - AM	50	80	35	80	
	Broadcast rad	lio - FM	•			
BCFM1	less that 10dBW	50	75	35	75	
BCFM2	10 to 20dBW	50	100	35	100	
BCFM3	Over 20dBW	50	150	35	150	
BCSL	Studio link - 400MHz 100KHz BW	50	75	35	75	
	Broadcast	TV	I .	1	1	
BCTV1	less that 10dBW	50	85	35	85	
BCTV2	10 to 20dBW	50	105	35	105	
BCTV3	Over 20dBW	50	150	35	150	
BCTVL	Studio link using TV channel	50	85	35	85	
	Land Mobile Repe	ater System				
LMR	Repeater station	50	75	35	75	
LMB	Base station	50	50	35	50	
LMM	Mobile unit		20		20	
LMP	Portable unit		20		20	
	Land Mobile single F	requency Syst	ems			
LMSB	simplex base station	50	50	35	50	
LMMS	Mobile unit		15		15	
LMPS	Portable unit		15		15	
	Land Mobile or handheld units wi	ithout base or	repeater stat	tion		
	Admin charges					
LMM1	to be applied to first					
	to be applied to first					
		50	50	35	50	
		30	30	33	30	
1.100	mobile or portable					
LMP1	unit only					
	·v					
	The remaining radio licenses to be charged pe	er LMMS or LM	IPS above			

<= 3.49> 고정된 링크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대가 사용요금 (radio spectrum usage fees for fixed link services)

Property		(radio spectrum u	sage ices	101 HACU	min servi	CCS/			
Application Annual Application Annual Application Annual	CODE	Function on Part de	First year License Fees		License Renewal Fees				
FLV/FLU	CODE	Frequency Bands	Application Annual		Application	Annual			
FLV/FLU			fee	Charge	fee	Charge			
EIVFUL Less than SOKI± Bandwidth 75 150 35 150	FL	HF/VHF/UHF Fixed Links							
MIL2			75	150	35	150			
ML2-35 3.5MHz Bandwidth 100 325 35 325 ML2-7									
MI2-77					*				
ML2-24									
ML2-20 20MHz Bandwidth									
ML2-28 28MHz Bandwidth									
ML5				 		-			
ML5-75 S.Millz Bandwidth 100									
ML5-77					-				
ML5-14									
ML5-20 29MHz Bandwidth						 			
ML15-28									
ML10 8.5GHz to 15.5GHz Annual Fee: 40 per MHz of Bandwidth ML10-3.5 35MHz Bandwidth 100 140 35 140 ML10-7 7MHz Bandwidth 100 280 35 280 ML10-14 14MHz Bandwidth 100 560 35 560 ML10-20 20MHz Bandwidth 100 800 35 800 ML10-28 28MHz Bandwidth 100 1,120 35 1,120 ML15 >15.5GHz Annual Fee: 15 per MHz of Bandwidth ML15-3.5 3.35MHz Bandwidth 100 52.5 35 52.5 ML15-14 14MHz Bandwidth 100 52.5 35 52.5 ML15-20 20MHz Bandwidth 100 300 35 300 ML15-24 24MHz Bandwidth 100 300 35 300 MC15-25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C15-26 20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C15-27 Alfeesshownaboveareforsinglehoppoint-to-pointlinksandinclude 100 100 300 35 300 MC15-28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L10-3.5 3.5MHz Bandwidth 100 140 35 140 ML10-7 7MHz Bandwidth 100 280 35 280 ML10-14 14MHz Bandwidth 100 560 35 560 ML10-20 20MHz Bandwidth 100 800 35 800 ML10-28 28MHz Bandwidth 100 1,120 35 1,120 ML15 >15,5GHz Annual Fee: 15 per MHz of Bandwidth ML15-3.5 3,5MHz Bandwidth 100 52,5 35 52,5 ML15-7 7MHz Bandwidth 100 105 35 105 ML15-20 20MHz Bandwidth 100 300 35 300 ML15-28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Notes: Allfeesshownaboveareforsinglehoppoint-to-pointlinksandinclude 1 icense fees for each base station PointcMulti-pointsystem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 Good theannualfees per remote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 <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				· '					
MIL10-14						1			
MI.10-24	ML10-3.5	3.5MHz Bandwidth	100	140	35	140			
ML10-28	ML10-7	7MHz Bandwidth	100	280	35	280			
ML10-28	ML10-14	14MHz Bandwidth	100	560	35	560			
MI.15 - 3.5 GHz Annual Fee: 15 per MHz of Bandwidth MI.15 - 3.5 MHz Bandwidth 100 52.5 35 52.5 MI.15 - 7 MHz Bandwidth 100 105 35 105 MI.15 - 14 14MHz Bandwidth 100 210 35 210 MI.15 - 14 14MHz Bandwidth 100 30 30 35 300 MI.15 - 20 20MHz Bandwidth 100 300 35 300 MI.15 - 20 20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I.15 - 20 20MHz Ban	ML10-20	20MHz Bandwidth	100	800	35	800			
ML15-3.5 3.5MHz Bandwidth 100 52.5 35 105 ML15-7 7MHz Bandwidth 100 105 35 106 ML15-14 14MHz Bandwidth 100 210 35 210 ML15-20 20MHz Bandwidth 100 300 35 300 ML15-28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L15-28 1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L15-28 1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L15-28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L15-28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ML15-28 1 1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ML10-28	28MHz Bandwidth	100	1,120	35	1,120			
ML15-74 7MHz Bandwidth 100 105 35 105 ML15-14 14MHz Bandwidth 100 210 35 210 ML15-26 20MHz Bandwidth 100 300 35 300 ML15-28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Notes: Alfeesshownaboveareforsinglehoppoint-to-pointlinksandinclude 1 icense fees for each base station PointtoMulti-pointsystem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65%ofthe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65%ofthe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65%oftheannualfeesperemotestation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 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l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 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 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 withandEIRP oflessthan4watts. 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ML15	>15.5GHz	Annual Fee:	15	per MHz of Bar	dwidth			
ML15-14	ML15-3.5	3.5MHz Bandwidth	100	52.5	35	52.5			
ML15-20	ML15-7	7MHz Bandwidth	100	105	35	105			
ML15-28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Notes: Allfeesshownaboveareforsinglehoppoint-to-pointlinksandinclude 1 license fees for each base station PointtoMulti-pointsystem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65%oftheannualfeeshownabove Remotesites:50%oftheannualfeeperremotestation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 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ML15-14	14MHz Bandwidth	100	210	35	210			
Notes: Allfeesshownaboveareforsinglehoppoint—to-pointlinksandinclude license fees for each base station PointtoMulti—pointsystem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65%oftheannualfeeshownabove Remotesites:50%oftheannualfeeperremotestation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 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 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 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 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 tapplytoWi-FiSystemsoperating withandEIRP oflessthan4watts. 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ML15-20	20MHz Bandwidth	100	300	35	300			
1 license fees for each base station PointtoMulti-pointsystem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65%oftheannualfeeshownabove Remotesites:50%oftheannualfeeperremotestation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 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ML15-28	28MHz Bandwidth	100	420	35	420			
license fees for each base station PointtoMulti-pointsystem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65%oftheannualfeeshownabove Remotesites:50%oftheannualfeeperremotestation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 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Notes:	Allfeesshownaboveareforsinglehoppoint-to	-pointlinksandinclu	ıde					
PointtoMulti-pointsystemannualfeesarebasedonthefollowingformula: Centralsite:65%oftheannualfeeshownabove Remotesites:50%oftheannualfeeperremotestation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 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 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 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 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 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1								
Centralsite:65%oftheannualfeeshownabove Remotesites:50%oftheannualfeeperremotestation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sedonthefollowingfo	rmula:					
2 Remotesites:50%oftheannualfeeperremotestation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 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 withandEIRP off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Initialadministrationchargesshownaboveapplytothefirsttwostations witheachstationthereafterbeingchargedat35per station. 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f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2								
station.Thelicenserenewaladministrationfeesshownaboveapplyforeachstation.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 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l			tionswitheachsta	tionthereafterbeing	chargedat35per			
AnnualFeesforbandwidthsotherthanshownabovearebaseduponthe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increamerbellig	ca geantoopei			
bandwidthinMhZtimesthe1MHzrate.Applicationandadministration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chargesremainunchanged.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							
AnnualFeesfornationwidefrequencyassignmentsforportablelinksincur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5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7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I 3		auonandadministral	HOII					
a50%surchargeonannualfees.Anapplicationwillberequiredeachtim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 ·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4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ftheannualfeepermonth.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	thesystemisinstalled.A50administrationchargewillbechargedper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application.							
Applicationandadministrationchargesremainunchanged.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_	Feesfortemporarylicensesarebasedon10%o	ftheannualfeepermo	nth.					
Thefeesshownabovedon'tapplytoWi-FiSystemsoperatingwithandEIRP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5	5 1							
oflessthan4watts.ThesesystemsmaybeoperatedunderaClassLicense.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andEIRP					
Anadministrationchargeof35willbeincurredeachtimearadiolinklicense	6								
7									
isamended.	7	_	eachtimearadiolinkl	icense					
		isamended.							

<= 3.50> 기타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대가 사용요금 (radio spectrum usage fees for miscellaneous service)

Code	Service Description	Initial	License	Lice				
		Fees	T	Renewal	Fees			
Satellite S	Satellite Services							
	Transmit and Receive Earth Stations	100						
SES 2	Less than 4meter dish	100	12,000	35	12,000			
SES 6	4 to 8 meter dish	100	15,000	35	15,000			
SES 10	8 to 12 meter dish	100	18,000	35	18,000			
SES 14	12 to 16 meter dish	100	21,000	35	21,000			
SESR	Receive Only Earth Station	50	300	35	300			
	* This fee does not apply to residential TVRO installations that are covered underaclasslicense.							
Occasiona	l TV Broadcast							
TVOB	Per month or part thereof	50	2,500	35	2,500			
GSM Mol	oile Services - 8MHz block of frequenci	es(40chann	els)					
GSM	900MHz Band	100	50,000	35	50,000			
Temporar	y MF/HF Services							
TMHF	Per installation	50	50					
Inspection	Fees							
SHIL	Ship station inspection - local vessels			150				
SHIF	Ship station inspection - foreign owned vessels			420				

⑤ 보조금<표 3.51> 2009, 2010년 징수 예상금액

	Planned Expendit ure 2009/10 (£)	(undersp end) Overspen dc/ffrom2 007/08	(undersp end) Overspen d 2008/09 compared toIncome (£)	Total Adjustme ntto2009/ 10Fees& Charges (£)	Fees& Charges for2009/1 0 (£)	Fees& Charges for2008/0 9 (£)	Fees Variance (£)	Fees Variance %
Spectrummanage ment (incR&D)	75,984,03 0		- 1,765,919	- 1,765,919	74,218,11 1	75,214,31 3	- 996,202	-1.30%
Spectrum Awards/Clearance	17,000,00 0				17,000,00 0	4,820,000	12,180,00 0	252.70%
Networks and Services	27,323,95 1	- 49,655	822,586	772,930	28,096,88 1	28,132,88 0	- 35,999	-0.10%
TV Regulation Fees	21,466,36	- 227,964	- 205,031	- 326,844	21,139,52 0	25,076,59 7	- 3,937,077	-15.70%
TV Application Fees	205,250		106,151		205,250	375,000	- 169,750	-45.30%
TV Broadcasting	21,671,61 3	- 227,964	- 98,880	- 326,844	21,344,77 0	25,451,59 7	- 4,106,827	-16.10%
Radio Regulation Fees	2,726,637	- 21,710	- 586,613	- 497,825	2,228,812	2,516,111	- 287,299	-11.40%
Radio Application Fees	366,850		110,498		366,850	249,400	117,450	47.10%
Radio Broadcasting	3,093,487	- 21,710	- 476,115	- 497,825	2,595,662	2,765,511	- 169,849	-6.10%
Other	8,678,759	45,466	- 296,467	- 251,001	8,427,758	4,904,946	3,522,811	71.80%
TOTAL	153,751,8 40	- 253,863	- 1,814,795	- 2,068,658	151,683,1 82	141,289,2 48	10,393,93 4	7.40%
Spectrum Awards/Clearance	- 17,000,00 0				- 17,000,00 0	- 4,820,000	-12,180,0 00	
TOTAL	136,751,8 40	- 253,863	- 1,814,795	- 2,068,658	134,683,1 82	136,469,2 48	- 1,786,066	-1.30%

(3) 일본6)

일본의 방송과 통신의 정책·규제기능은 정부부처인 총무성에서 통합하여 담당한다. 총무성의 역할은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불공정경쟁규제, 방송·통신의 주파수계획 수립 및 할당 등이며, 방송 내용규제에 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규제에 임한다.

일본은 보수적인 전파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파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파이용료(spectrum user fee)의 명칭으로 회수하고 있다. 전파사용료의 용도는 전파의 안정적 이용의 확보(전파감시, 무선국 데이터베이스 운용 등)와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기술시험, 아날로그 변환 등)등 전파관리비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및 전파이용의 보급·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국민의 조세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선국 사업자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부담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파이용료 이외에 무선국 면허부여와 관련하여 면허심사수수료 (licence application fee)를 부과한다.

(4) 독일7)

독일은 방송과 통신을 이원화하여 다루고 있으며, 통신은 연방정부가, 방송은 16개 주정부가 관장하도록 되어있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과 규제기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방송사의 설립과 인·허가 업무, 감독과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각 주마다 '주 미디어 관리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에서 거둔 방송수신료의 일부(2%)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공영방송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수입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 의존하는 혼합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수신료가 전체 공영방송 재정의 8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신료 이외 광고수

⁶⁾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재정체계 정비방안, 2008.12 인용하여 요약하였음

⁷⁾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재정체계 정비방안, 2008.12 인용하여 요약하였음

입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7년부터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기구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인터넷 방송과 모바일 방송 등 PC단말기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2. 신규재정수요 검토

1) 재정수요 체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의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규 재정수요부문으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협의 필요),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방송통신관련 인력 양성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주파수할당대가가 추가되었다.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언론공익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1)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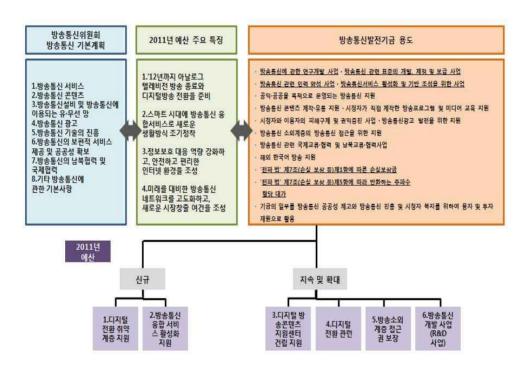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수요부문을 살펴볼 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관리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을 고려해야한다.

'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① '12년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종료와 디지털방송전환을 준비 ② 스마트시대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로 새로운 생활방식 조기정착 ③ 정보보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 ④미래를 대비한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시장창출 여건 조성이다.

이런 주요 특징을 반영한 '11년 예산 중 신규 사업으로는 디지털전

환 취약 계층지원,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으며, 지속되거나 확대된 사업으로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지원, 디지털전환 관련 사업, 방송 소외계층 접근권 보장, 방송통신개발사업 (R&D사업)이 있다.

<그림 3.7> 방송통신위원회의 '11년 예산안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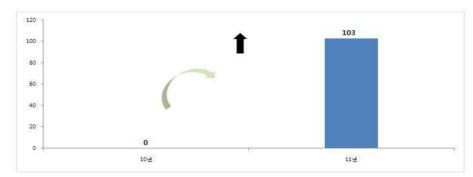
①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11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12년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종료와 디지털방송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TV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우선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자발적인디지털 방송전환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차 상위 계층 약 7만 가구에 대해 디지털 컨버전스(또는 디지털 TV구매보조)등을 지원하며, 각종 민원처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해 각 지역에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단위 콜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

하여 103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림 3.8> 2011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단위: 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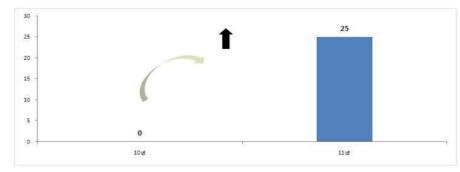
출처: 방통위 2011년 예산 보도자료

②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IPTV·디지털케이블TV등 기존 매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TV등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매체를 활용한 스마트시대가 출연하고 있는 스마트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를 비롯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타 산업분야와 결합하는 관련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25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림 3.9> 2011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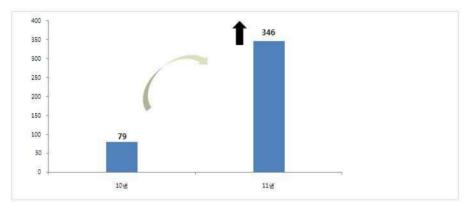
출처: 방통위 2011년 예산 보도자료

③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 '12년 건립예정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금액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그림 3.10> 2011년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단위: 억원)



출처: 방통위 2011년 예산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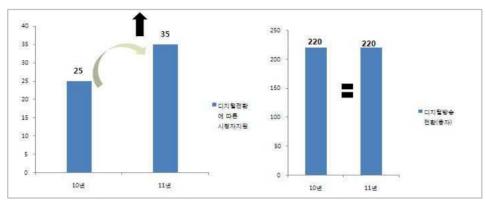
④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방송전환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홍보에 35억 원, 농어촌 마을 공시청 설비 158개소와 영구 임대주택 54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21억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투자를 촉진하며 융자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220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림 3.11> 2011년 디지털 전환 지원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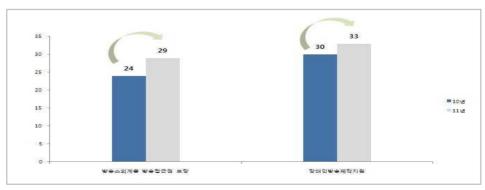
출처: 방통위 2011년 예산 보도자료

⑤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사업에 29억원,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였다. '10년에 비해 조금 확대되었다.

<그림 3.12> 2011년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단위 : 억원)



출처: 방통위 2011년 예산 보도자료

⑥ 방송 통신 연구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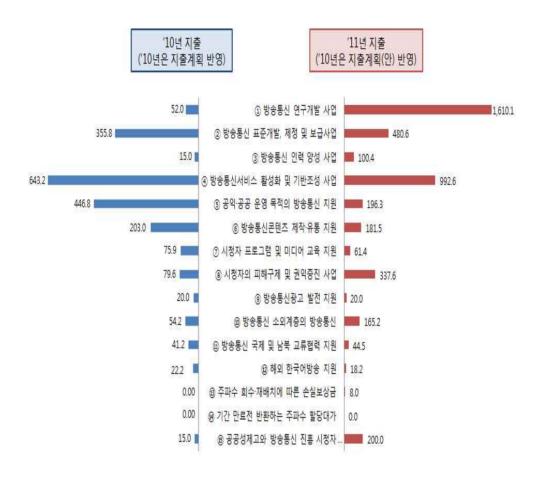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방송통신 R&D사업('11년 규모 1,993억원)을 '11년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원천기술 개발과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년 지출계획과 '11년 지출계획(안)을 비교하여 세부 사업비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반영하여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의 지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52억원 → 1,610.1억원),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지원 사업의 지출도 증가하였다(54.2억원 → 165.2억원).

<그림 3.13>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추이

(단위: 억원)



Ⅳ. 기금 중장기 비전 검토

1. 비전 현황

기존 방송발전기금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기금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새로운 비 전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발전기금의 비전을 고찰하고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비전을 수립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상위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수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기금 자체만의 중장기 비전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을 검토할 때, 기금관리주체이며 의사결정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은 「품격 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이며, 비전의 하위개념으로 4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략목표는 여러 개의 성과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는 성과목표 관리과제로 나누어진다. 또한 성과목표에 따른 재정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4.1>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2) 방송발전기금 비전

방송발전기금의 비전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거의 일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4.2> 방송발전기금의 비전과 목표 체계



<그림 4.3> 방송발전기금의 비전과 목표

비전: 품격 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하여 공공복리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취지를 반영하는 비전 설정이 요구된다.

비전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야 하며,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올바른 비전 제시를 위하여 미션의 재정의를 통해 중장기 비전 재구축할 것이며, 비전과의 연계성을 재검토 할 것이다.

또한 조직원 인터뷰, 워크숍을 통해 비전을 도출하는데 참고 할 것이다.

<그림 4.4> 프로세스 과정



1) 미션 재정의

(1) 기존 미션 분석

현재의 미션은 「디지털 융합의 확산 및 촉진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방송 정착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이다. 기존의 미션은 비전과 전략 목표들이 혼재되어 있다. 기금의 미션에 대해서 대상, 방법,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4.5> 기존 미션 분석

As-is Mission

기존안

 디지털 융합의 확산 및 촉진과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선진방송 정착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조성

- 설립목적: 2011년, 현행 방송발전기 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전환, 방 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 원에서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으로 기금설치 목적 변경 ('방송통신발전 기 본법 제24조'에 명시)
- 주요 기능 및 역할: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

To-be Mission

- ■기존 미션은 비전과 전략목표들이 혼재되어 있음
- '디지털 융합의 확산 및 촉진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방송정책'이라는 미션으로서 기금의 존재이유를 담고 있으나 나머지 문구는 비전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전략목표로 설정되어있음
- 미션과 비전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금의 존재이유를 미션으로 설정해야 함.
- ■기금의 미션에 대해서 대상(for whom), 방법(how), 목적(what)에 대한 <u>구체적이</u> 고 명확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함.
- 설치 근거가 되는 법적 임무 이외에 기관의 실질적인 설립목적을 내·외부관계자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2) 신규 미션 검토

신규 미션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명과 존재이유로써 국가·사회· 이용자에게 기여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법령을 토대로 만들어 지며, 해야 할 일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 시해주어야 한다.

<그림 4.6> 신규 미션 안

미션(Mission)	Keyword에 대한 명확한 정의(Definition)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 한다.' (구체적이며 명확하 미션 제시)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의 시청자와 이용자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공헌하며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을 고려하며 창조적·혁신적 진흥활동을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송통신 관련 산업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성장 및 진흥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3) 해외 우수기업, 공공기관 사례 검토

해외 우수기업과 공공기관의 미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이나 기관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림 4.7> 해외우수 기업 미션 사례 검토

회사	미션					
월마트	서민들에게 부자들과 같은 구매기회 제공					
머크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킨다.					
존슨&존슨	우리 회사는 고통과 질병을 경감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월트 디즈니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듦					
맥킨지	기업과 정부의 성공을 위한 도움 제공					
퍼시픽 시어터스	지역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장소 제공					
ЗМ	미해결된 문제의 혁신적 해결					
나이키 경쟁, 승리, 경쟁자를 압도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HP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기술적 공헌						
소니	공익을 증진하는 기술발전과 기술활용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함					

<그림 4.8> 공공기관 미션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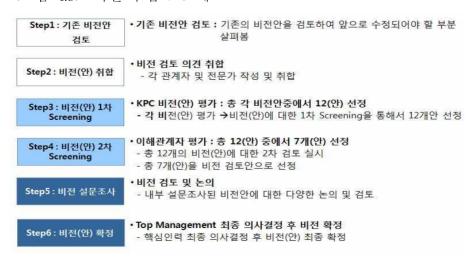
회사	미션				
국세청	공정 투명한 세법집행으로 성실납세 지원, 국민경제 기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하 「일자리 창출」과「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국방부	국가를 보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보건복지부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실현				
해양경찰청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자.				
건설교통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국토피아 실현				
농림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생명가치 창조				

2) 중장기 비전 재구축

(1) 기존 비전 분석

현재의 비전은 「품격 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이다. 방송통신 관련 R&D 측면이 추가 된 부분에 대한 Key-word 추가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상 제시가 필요하며, 비전의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4.9> 비전 수립 프로세스



<그림 4.10> 기존 비전 검토

As-is Vision

'품격 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통해 품격있고 활기찬 Communication을 구축하겠다는 포용의 의지가 담겨있음
- 일류
- 일류가 의미하는 명확한 범위와 대상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
- <u>구체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u> 보여줄 필요가 있음

To-be Vision

-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화로운 공동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화의 효율 제고를 지향하는 부분은 잘 명시되고 있으나, 방송통신 관련 R&D 측면의 Key-Word추가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 필요.
-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기술서를 통해서 각
 Keyword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음.
- → 비전은 각 Keyword에 대한 구체적 의미 부여가 미흡할 경우, 비전 슬로건(Vision Slogan) 또는 비전 캐치프레이즈 (Vision Catchphrase)의 성격을 띄게 되어, 조직구성원들간의 공유가 되지 못해서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못할 우려가 있음.

(2) 신규 비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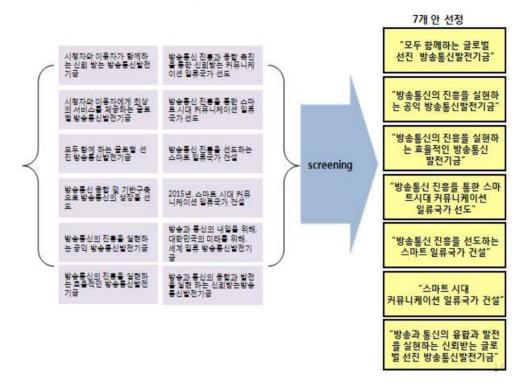
신규 비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전 검토 의견을 취합 한 후 1차 Screening을 통하여 12개의 안을 선정 한 후, 2차 Screening을 통해 7개의 안을 선정하였다. 7개의 안 중 방송통신 관련 전문가의 최종 의사결정 후 비전(안)을 최종 확정한다.

<표 4.1> 비전 안

지향점	비전 (안)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사회적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방송통신기금
책임 &c	시청자와 이용자가 함께 꿈을 키워가는 글로벌방송통신발전기금
(A. 신뢰	시청자와 이용자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글로벌 방송통신발전기금
<u> </u>	시청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신뢰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방송통신발전기 금
고객	모두 함께하는 글로벌 선진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치 ~	모두 함께하는 가치창조 World Pioneer
& Partner	시장과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방송통신발전기금
ship	시청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방송통신의 Fair Partner
	모두 함께하는 글로벌 일류 방송통신발전기금
	모두 함께 하는 세계 일류 방송통신발전기금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방송통신발전기금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시청자와 이용자가 함께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방송통신발전기금
	선진 방송통신융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방송통신발전기금
	투자자와 이용자가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선진 방송통신발전기금
	세계 방송통신발전을 리드하는 한국 방송통신발전기금
도전적	방송통신 융합 및 기반구축으로 방송통신의 성장을 선도
&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구체적	방송통신의 진흥을 실현하는 공익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의 진흥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진흥과 융합 촉진을 통한 신뢰받는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선 도
	방송통신 진흥을 통한 스마트 시대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선도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진흥을 선도
	방송통신 진흥을 선도하는 스마트 일류국가 건설
	스마트시대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건설
	방송과 통신의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계일류 방송통신 발전기금
기타	국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글로벌 방송통신발전기금
	글로벌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한국방송통신발전기금
	Happy Smile with 방송통신발전기금, 당신의 행복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의 행복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발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의 발전을 실현하는 기금

위에 정리 되어있는 비전 안에서 1차 screening을 통해서 12개의 안을 선정하였다. 이 12개의 안 중 이해관계자의 2차 screening을 통해 7개의 안을 선정하였다.

<그림 4.11> 비전 안 선정



7개의 선정 된 비전 안의 기술 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개의 안 중 방송통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비전 안을 선정한다.

<그림 4.12> 비전 안 기술 서(1)

비전(Vision 2015)	Keyword에 대한 명확한 정의(Definition)			
	모두: 시청자 및 이용자 등 협의의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u>방송통신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미래에 참여가 기대되는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 서비스 대상의 범주에 포괄함을 의미함. 즉. 국민 전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서비스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음. 함께하는: 서비스 대상이 원하는 것만 제공하는 수동적 자세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u>			
모두 함께하는	것을 서비스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 판단, 행동하여 <u>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u> 자세로 서비스의 대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함. 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금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처명하고			
글로벌 선진	있음. - 글로벌: 세계화로 인해 방송통신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			
방송통신 발전기금	• 글도글 • 세계와도 인애 항송통인산입과의 항상이 나국 시글에지고 있는 환경 하에서, 다양한 전략적 활동(방송통신에 관현 연구개발 사업, 관련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등)을 영위함으로써 국내 방송통신의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u>세계</u> 일류 수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음.			
	• 선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시장 관련 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 수준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방송통신 산업과 제도를 선도하는 위상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u>국민경제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의 선진화에 기여할</u> 수 있는 사회적 기금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그림 4.13> 비전 안 기술 서(2)

비전(Vision 2015)	Keyword에 대한 명확한 정의(Definition)			
방송과 통신의 진흥을 실현하는 공익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과 통신의: 방송 관련 또는 통신관련 협의의 대상에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미래에 참여가 기대되는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 대상의 범주에 포괄함을 의미함. 즉, 관련된 모든 전체를 기금의 서비스 및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음. 진흥을 실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목적, 방송위원회의 업무, 방송통신발전 기금 설치의 목적과 부합이 되며, 기금이 해야할 일을 명시하고 있음. 방송통신 부분을 떨치어 일으켜 더 크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공약: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공동의 이익(이해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을 제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의 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사회적 기금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그림 4.14> 비전 안 기술 서(3)

방송과 통신의 : 방송 관련 또는 통신관련 협의의 대상에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미래에 참여가 기대되는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 대상의 범주에 포괄함을 의미함, 즉, 관련된 모든 전체를 기금의 서비스 및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음.
진흥을 살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목적, 방송위원회의 업무, 방송통신발전 7 금 설치의 목적과 부합이 되며, 기금이 해야할 일을 명시하고 있음. <u>방송통신 부분을 떨치어 일으켜 더 크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u> 호율적인: <u>기금의 운용과 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수행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u>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의 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사회적 기금으로서
E :

<그림 4.15> 비전 안 기술 서(4)

비전(Vision 2015)	Keyword에 대한 명확한 정의(Definition)			
방송 통신의 진흥을 통한 스마트 시대 커뮤니케이 션 일류 국가 선도	방송 통신의: 방송 관련 또는 통신관련 협의의 대상에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미래에 참여가 기대되는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 대상의 범주에 포괄함을 의미함. 즉, 관련된 모든 전체를 기금의 서비스 및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음.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목적, 방송위원회의 업무, 방송통신발전 기금 설치의 목적과 부합이 되며, 기금이 해야할 일을 명시하고 있음. 방송통신 부분을 떨치어 일으켜 더 크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스마트 시대: 스마트 폰, 스마트 TV등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커뮤니케이션 일류 국가 선도: 방송통신 일류국가 구축을 위해 앞장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그림 4.16> 비전 안 기술 서(5)

비전(Vision 2015)	Keyword에 대한 명확한 정의(Definition)			
방송 통신 진흥을 선도하는 스마트 일류국가 건설	방송 통신의: 방송 관련 또는 통신관련 협의의 대상에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미래에 참여가 기대되는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 대상의 범주에 포괄함을 의미함. 즉, 관련된 모든 전체를 기금의 서비스 및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음. 진흥을 선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목적, 방송위원회의 업무, 방송통신발전 기금 설치의 목적과 부합이 되며, 기금이 해야할 일을 명시하고 있음. 방송통신 부분을 떨치어 일으켜 더 크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스마트: 스마트 폰, 스마트 TV등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엘류국가 건설: 방송통신 일류국가 구축을 위해 앞장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그림 4.17> 비전 안 기술 서(6)

Keyword에 대한 명확한 정의(Definition)
- 스마트: : 스마트 폰, 스마트 TV등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 기반조성, 연구개발 등 다양하 분야를 지원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 느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일로 '의사소통', '의사 전달'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u>방송과 통신으로 의사 소통, 의사 전달을 원할히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u> - 얼류국가 건설: <u>방송통신 일류국가 구축을 위해 앞장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u> .

<그림 4.18> 비전 안 기술 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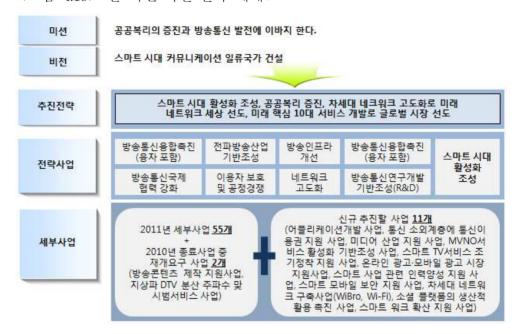
비전(Vision 2015)	Keyword에 대한 명확한 정의(Definition)			
	•방송과 통신의 : 방송 관련 또는 통신관련 협의의 대상에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미래에 참여가 기대되는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 대상의 범주에 포괄함을 의미함. 즉, 관련된 모든 전체를 기금의			
바스크	서비스 및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음.			
방송과	• 융합과 발전을 실현하는 : 서비스 대상이 원하는 것만 제공하는 수동적 자세에			
통신의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을 서비스대상의 입장에서 생각, 판단, 행동하여 보다			
융합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absume to the	대상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금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발전을	천명하고 있음.			
실현하는	• 신뢰받는 : 시청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익성을 제고하며 의미를 담고 있음			
신뢰받는				
	•글로벌: 세계화로 인해 방송통신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			
글로벌 선진	하에서, 다양한 전략적 활동(방송통신에 관현 연구개발 사업, 관련표준의 개발, 제정			
방송통신	및 보급 등)을 영위함으로써 국내 방송통신의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u>세계</u>			
발전기금	일류 수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음.			
글인기급	•선진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시장 관련 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 수준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방송통신 산업과 제도를 선도하는 위상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금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7개의 안 중 방송통신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스마트 시대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건설 」이라는 비전이 최종 선정되었다.

앞에서 선정된 최종 비전 안을 통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래상을 구축할 수 있다. 단계별로 발전방향에 따라 발전목표를 가지며, 목표에 따라 해야 할 미션이 정해진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션, 중장기 비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의 미션, 중장기 비전보다구체적이며 체계적이다.

<그림 4.19> 신 미션·비전·전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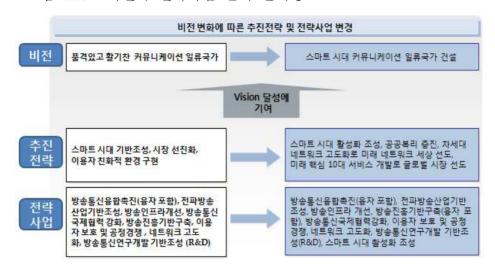
3)비전과의 연계성 재검토

비전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로 앞에서 도출한 신규 비전과 전략사업 간의 연계성, 신규 비전과 세부사업 간의 연계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1) 신규 비전과 전략사업 간의 연계성 분석

신규 비전은 전략사업과 정합성을 가지며, 전략사업을 통해 비전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사업을 구축하기 전에 방송통신 위원회의 추진 전략방향을 검토하여 전략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한다. 비전과 전략사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림 4.20> 비전과 전략사업 간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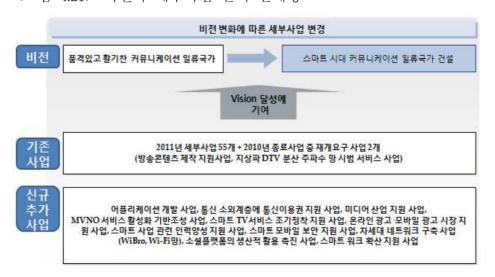


(2) 신규 비전과 세부사업 간의 연계성 분석

신규 비전과 세부사업은 정합성을 가지며, 세부사업을 통해 비전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전략사업과 세부사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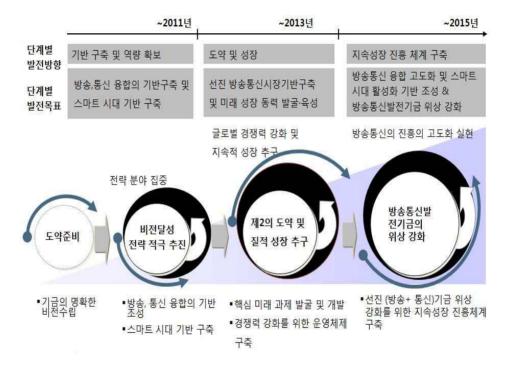
<그림 4.21> 비전과 세부사업 간의 연계성



4)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래상

앞에서 선정된 최종 비전을 통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래상을 구축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기금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림 4.2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래상: 중장기 발전 로드맵



Ⅴ. 전략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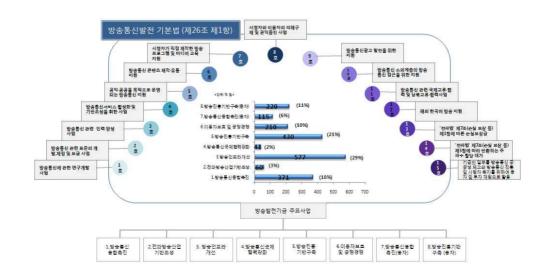
5장에서는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의 주요사업을 검토해보고, SW OT 분석과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식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전략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전략을 도출한다.

1. 방송발전기금 전략사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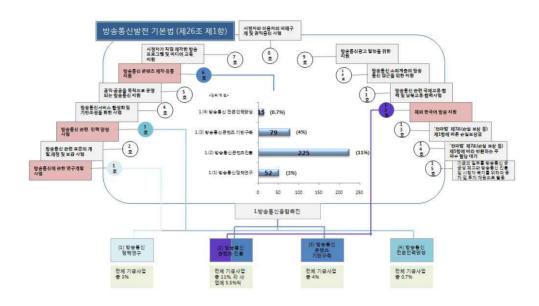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략사업을 검토하기에 앞서, 기존의 방송발전 기금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어느 정도 매칭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방송발전기금의 예산,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과 2010년 3월 22일 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나와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와 비교하여 2010년, 2011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의 매칭정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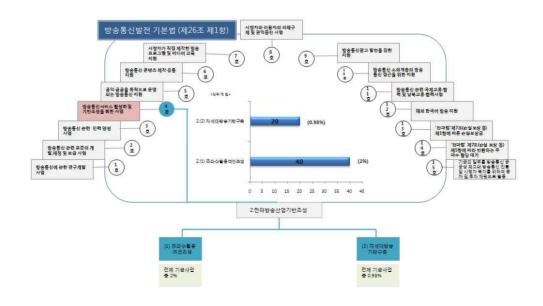
<그림 5.1> 2010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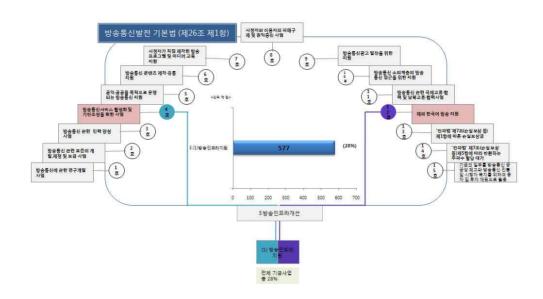
<그림 5.2> 2010년 주요사업1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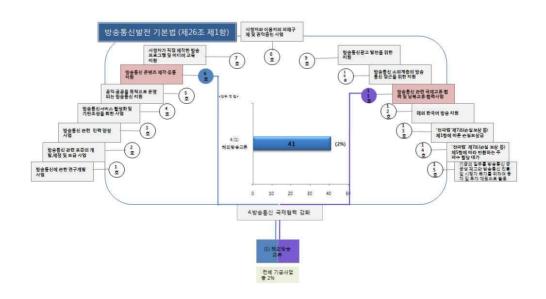
<그림 5.3> 2010년 주요사업2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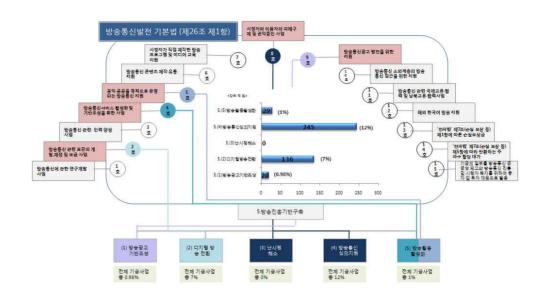
<그림 5.4> 2010년 주요사업3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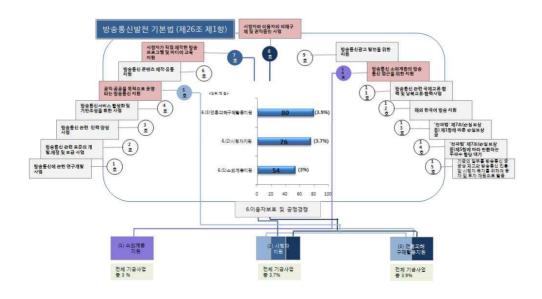
<그림 5.5> 2010년 주요사업4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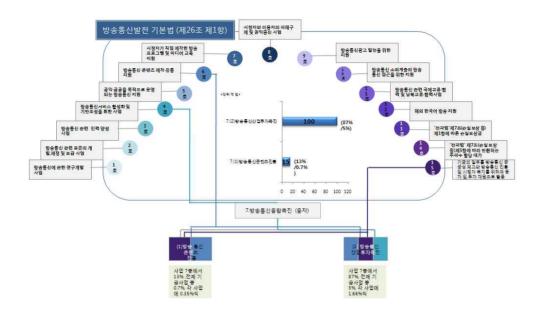
<그림 5.6> 2010년 주요사업5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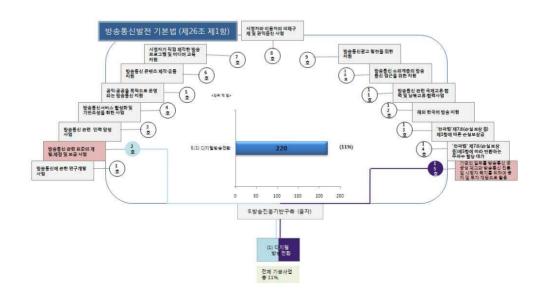
<그림 5.7> 2010년 주요사업6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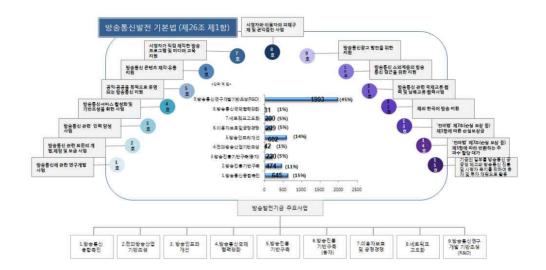
<그림 5.8> 2010년 주요사업7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그림 5.9> 2010년 주요사업8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그림 5.10> 2011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비교



2010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매칭정도를 살펴보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장 제26조 제1항 제4호(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된 사업이 31.7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제5호(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관련사업 22.08%, 제2호(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관련 사업 17.58%, 제6호(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관련 사업 10.03% 순이며, 나머지는 10% 미만을 차지하였다.

2011년 주요사업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매칭정도를 살펴보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장 제26조 제1항 제1호(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관련된 사업이 36.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제4호(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사업 22.48%, 제2호(방송통신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관련 사업 10.88% 순이며, 나머지는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11> 2010년 주요사업과 2011년 주요사업 비교

	2010 년	2011 년		2010 년	2011 년
1호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57%	36.46%	8호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 중진 사업	3.93%	7.64%
2호 방송록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17.58%	10.88%	9호 방송통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0.99%	0.45%
3호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0.74%	2.27%	10호 방송통신 소의제중의 방송통신 접근 용의한 지원	2.68%	3. 7 4%
4호 방송통신서비스 著성화 및 기반조성 을 위한 사업	31.78%	22.48%	11호 방송통신 관련 극제교류 필력 및 남북 교류-필력사업	2.04%	1.01%
5호 공약공공을 목적으로 문영되는 방송 롭신 지원	22.08%	4.45%	12호 해외한국어 방송지원	1.10%	0.41%
6호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10.03%	4.11%	13호 전파법 제7조(손실 보상 등)제 ¹ 항에 따른 손실보상급	0.00%	0.18%
7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3.75%	1.39%	14호 '전라법'제7조(순실 보상 등)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라수 할당 대가	0.00%	0.00%
			15호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 공공성 제고 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윤자 및 투자 재원으로 활동	0.74%	4.53%

2. SWOT분석

SWOT분석은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내부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전략의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1) 강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을 도출해 보면, 우선 재원의 100% 자체수급이 가능하며 최근 지식경제부와 협의에 의해 주파수할당대가의 45%를 추가재원으로 확보하게 되

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재정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 비율이 높음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2) 약점

환경 분석을 통해 약점을 도출해 보면, 기금과 예산사업이 중복 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의 특성상 법률적으로 공공성 측면에 경직성이 강해서 운용의 탄력성이 부족하다.

기금 사업운용부문에서 살펴보면,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은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방송통신의 콘텐츠 관련부분과 광고 관련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여 사업 운용 시 제약이 따른다.

기금재정부문에서 살펴보면, 신규 재정으로 주파수할당대가가 추가 되었는데, 변동성이 매우 큰 재원인 주파수할당대가로 인해 수입의 변동 폭도 크며, 장기적으로 보면 기금의 안정성이 불안정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재정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 비율이 높은데 이에 따른 운용위험이 따를 수 있다.

3) 기회

환경 분석을 통한 기회를 살펴보면, 신규로 추가된 재정수요로 인해 운용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용도도 확대되었다.

기존의 공무원 기금 담당보직은 짧았으나, 기금 업무 일부를 한국방 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위탁하게 되면서 기금 담당인력은 특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보직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4) 위협

기금업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위탁이 되면서 기금담당 인력의 위탁으로 초창기 기금 업무 경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45%로 협의되어 추진 중이나 향후협의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5.12> SWOT 분석



3. 전문가 설문조사(A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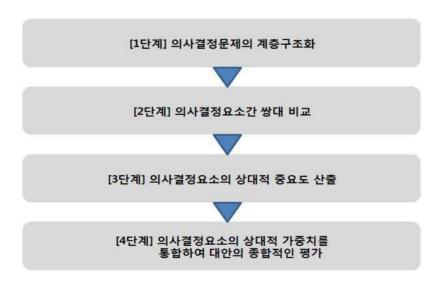
기금은 산정된 근거 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과 관련 산업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을 수립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이러한 경우에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한다.

AHP는 상이한 척도를 가진 요소들의 비교, 통합 또는 계량화가 가능하며 정량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척도(Scale)가 다른 요소들의 합리적 비교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는 AHP 분석절차에 따라서 전략설정을 위한 계층구조를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할 것이다.

<그림 5.13> AHP 기법의 분석절차



1) 조사의 개요

(1) 설문기간 및 방법

설문은 2010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 총 21일간 이루어졌으며, 전화와 전자메일(E-mail)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 대상자

설문 대상자는 방송통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 총 2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표 5.1> 설문조사 대상자

구분	인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7
관련학과 교수	7
산업체 관련	7
합계	21

(3)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계층별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관련 문항을 제시하였다. 대분류(제1계층) 1문항, 주요사업(제2계층) 2문항, 세부사업(제3계층)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설문의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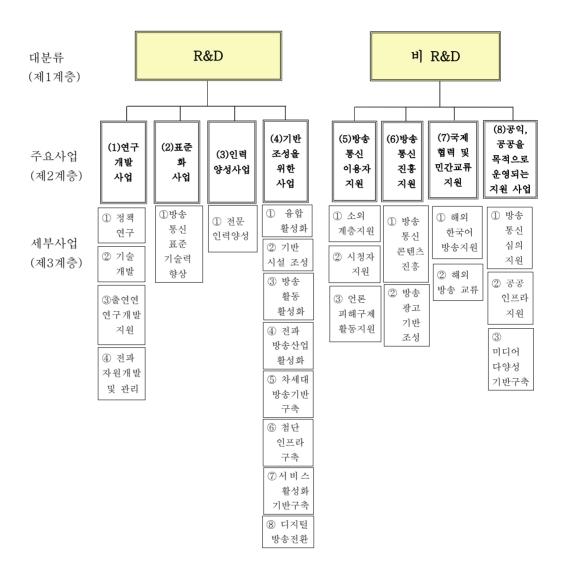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는 Satty가 개발한 9점 척도를 이용하며, 자료입력 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값이 0.1을 초과하는 응답자는 전화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평가 지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의 가중치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5.14>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략사업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계층 구조



<표 5.2>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1) 연구개발 사업	① 정책연구 ② 기술개발 ③ 출연연 연구개발지원 ④ 전파자원개발 및 관리	
	(2) 표준화 사업	① 방송통신표준 기술력향상	
D.0 D	(3) 인력 양성사업	① 전문 인력양성	
R&D	(4)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① 융합 활성화 ② 기반 시설조성 ③ 방송활동활성화 ④ 전파방송산업활성화 ⑤ 차세대방송기반구축 ⑥ 첨단인프라구축 ⑦ 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⑧ 디지털 방송전환	
	(5) 방송통신이용자지원	① 소외계층지원 ② 시청자지원 ③ 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	
	(6) 방송통신 진홍지원	① 방송통신콘텐츠진흥 ② 방송광고기반조성	
비 R&D	(7) 국제협력 및 민간교 류 지원	① 해외한국어방송지원 ② 해외방송교류	
	(8) 공익, 공공을 목적으 로 운영되는 지원 사 업		

3) 설문조사 결과분석

(1) 대분류(제1계층)

① 평가항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대분류 심사지표로는 (1) R&D, (2) 비 R&D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표 5.3> 대분류(제1계층)의 평가항목

	대분류	주요 내용	
1	1 R&D 'R&D의 세부 사업인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R&D 관련 사업 외 사업 2 비 R&D (이용자지원, 방송통신 진흥 지원, 국제협력 및 민간교 지원,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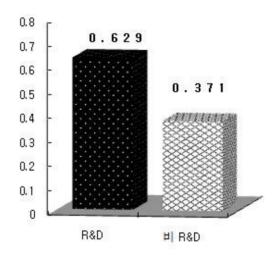
② 설문조사 결과

두 가지 대분류 심사지표 중 「R&D」(62.9%)가 1순위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비 R&D」가 37.1%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5.4> 대분류(제1계층)의 결과 및 순위

대분류		대분류 결과	
1	R&D	0.629	1
2	비 R&D	0.371	2

<그림 5.15> 대분류(제1계층)의 중요도



(2) 주요사업(제2계층)

① 평가항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주요사업 심사지표로 R&D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1) 연구개발 사업, (2) 표준화 사업, (3) 인력양성 사업, (4)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비 R&D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1)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2) 방송통신진흥지원, (3) 국제 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4)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표 5.5> 주요사업(제2계층)의 평가항목

주요사	업(제2계층)	주요 내용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기술, 정책 연구 사업
R&D	표준화 사업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 강화 등과 같은 표준화 역량 강화 사업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업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소외계층이나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방송통신 진흥지원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콘텐츠, 광고 관련 사업
비 R&D	국제협력 및 민간 교류 지원	·국제교류나 국제적으로 하는 민간교류 활동 지원 관련 사업
	공익·공 공을 목적 으로 운영 되는 사업 지원	·심의지원이나 공공 인프라 지원 등과 같은 공익·공공을 위한 사업

② 설문조사 결과

R&D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사업」(43%)이 1순위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표준화 사업」(19.4%)「기반조성을 위한 사업」(19.4%),「인력양성 사업」(18.1%)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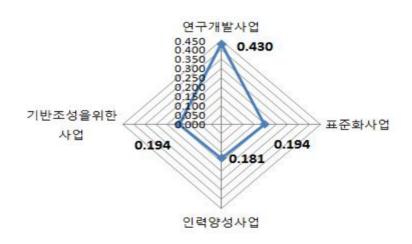
비 R&D 사업에서는 「방송통신 진흥지원」(41.5%)이 1순위로 상대

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방송통신 이용자지원」(30.4%),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14.9%),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원」(13.2%)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주요사업(제2계층)-R&D사업 결과 및 순위

주요사업		결과	순위
1	연구개발 사업	0.430	1
2	표준화 사업	0.194	2
3	인력양성 사업	0.181	4
4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0.19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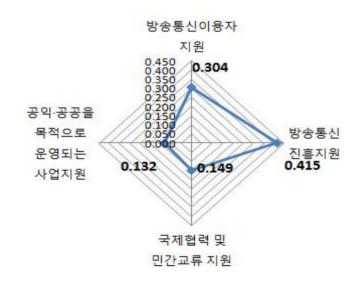
<그림 5.16> 주요사업(제2계층)-R&D사업의 중요도



<표 5.7> 주요사업(제2계층)-비 R&D사업 결과 및 순위

	주요사업	결과	순위
1	방송통신 이용자지원	0.304	2
2	방송통신 진흥지원	0.415	1
3	국제협력 및 민간 교류 지원	0.149	3
4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사업 지원	0.132	4

<그림 5.17> 주요사업(제2계층)-비 R&D사업의 중요도



(3) 세부사업(제3계층)

① 평가항목

□ R&D사업

(1)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은 ⓐ 정책연구, ⓑ 기술개발, ⓒ 출연 연 연구개발 지원, ⓓ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로 나누어 고려하고 있으며, (2) 표준화 사업의 세부사업은 ⓐ 방송통신 표준기술력 향상, (3) 인력양성 사업의 세부사업은 ⓐ 전문 인력 양성이 있다. (4)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세부사업은 ⓐ 융합 활성화, ⓑ 기반시설 조성, ⓒ 방송활동 활성화, ⓓ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 차세대 방송기반구축, ⑥ 첨단 인프라구축, ⑧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 디지털 방송전환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 비 R&D사업

- (1)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 소외계층 지원, ⓑ 시청자 지원, ⓒ 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으로 나누었으며, (2) 방송통신 진흥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 방송광고기반조성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 (3) 국제 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 해외한국어 방송지원, ⑥ 해외방송교류로 나누어 고려하였으며, (4)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 방송통신 심의지원, ⑥ 공공인프라 지원, ⓒ 미디어다양성기반 구축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표 5.8> 세부사업(제3계층)의 평가항목

대분류	주요사업	세부사업
(제1계층)	(제2계층)	(제3계층)
		정책연구
	연구개발 사업	기술개발
	선무개발 사업	출연연 연구개발 지원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
	표준화 사업	방송통신표준기술력 향상
	인력양성 사업	전문 인력 양성
		융합 활성화
		기반시설조성
R&D		방송활동 활성화
	기반조성을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위한 사업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
		첨단 인프라 구축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디지털 방송 전환
	22 - 2 2 2 2	소외계층 지원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시청자 지원
	16	언론피해 구제활동 지원
	방송통신 진흥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ㅂ]	방궁중신 신용시원	방송광고 기반조성
R&D	국제협력 및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
	민간 교류 지원	해외 방송 교류
	70 770 P7 +-	방송통신 심의지원
	공익·공공을 목적 으로	공공 인프라 지원
	운영 되는 사업 지원	미디어다양성 기반 구축

<표 5.9> 세부사업(제3계층)의 평가항목 주요내용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정책연구	·방송통신 관련 규제 개선 및 정책연구 지원 사업
기술개발	·방송통신 관련 원천기술개발 사업
출연연 연구	24 24 02 240 222 15 0020 02 20 04 04
개발 지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
전파자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원 및 EMC분양 기술개발 지원 등
개발 및 관리	EMC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방송통신표준	·방송통신표준 개발·제정·보급 등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표
기술력 향상	준 관련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방송통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양성 사업
융합 활성화	·매체 간 , 사업자 간 연동서비스 개발 등과 같은 융합 관련 사업
기반시설조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 지원 시설 (디지털
, - , - ,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구축 지원 사업 ·방송분야 시상, 방송평각 기반조성 등 방송제작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
방송활동 활성화	
	자 만족도 향상 및 산업발전 도모 ·국내에서 개발된 T-DMB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는 등 세계시장에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서 우리나라 전파 산업의 브랜드가치 제고 관련 사업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	·3DTV와 같은 차세대 방송 사업 지원
크리 시도가 그것	·고품질, 광대역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통합 망(BcN)
첨단 인프라 구축	의 전국기반 구축 확대 등 과 같은 구축 활성화 및 기존 망 고도화 촉진
서비스 활성화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구축,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관리기반구축
기반 구축	등 방송통신 서비스 기반구축과 관련된 사업
디지털 방송 전환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유도 및 디지털 방송 산업 발전 도모, 성공적인
의사를 66 전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소외계층 지원	·시각, 청각장애인, 난청노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 매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청자 복지 환경 조성, 시청자의 방송환경 적응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
시청자 지원	'시청사 녹시 환경 오경, 시청사의 청중환경 식공 및 개선들 위한 사립 시 원
언론피해 구제활동	·방송, 인터넷 포털 등 언론보도 및 매개로 인한 피해구제 및 예방을 통한
지워	국민의 권익보호 및 언론의 공정성, 책임성 제고하는 사업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프로그램 제작, 유통을 지원
방송광고 기반조성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등과 같은 사업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
	·국내 방송사업자 등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모 하는 등 남북 및 해외 국
해외 방송 교류	가간의 방송통신 교류활동 지원 사업
바소트가 가이되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 심의지원	사업 지원
고고 이고리 기이	·교육 방송프로그램,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
공공 인프라 지원	국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공공 인프라 지원
미디어다양성기반구축	·시청점유율 조사등과 같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운영 지원

② 설문조사 결과

☐ R&D사업

- (1)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정책연구」(41.6%)가 1순위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기술개발」(32.2%),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15.2%), 「출연연 연구개발 지원」(10.9%) 순으로 나타났다.
- (4)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융합 활성화」(20.4%)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방송활동 활성화」(13.8%), 「기반시설 조성」(12.9%), 「첨단 인프라구축」(12.65), 「디지털 방송전환」(11.2%),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11.0%),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10.1%),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7.9%) 순으로나타났다.

□ 비 R&D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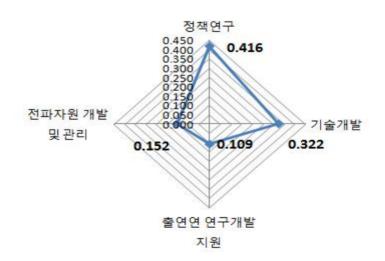
- (1)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소외계층 지원」(54.4%)이 1순위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시청자 지원」(31%), 「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14.6%) 순으로나타났다.
- (2) 방송통신진흥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83.2%)이 1순위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방송광고기반조성」(16.8%)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 (3) 국제 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해외방송 교류」(51%)가 1순위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해외한국어 방송지원」(49%)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 (4)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 공공인프라 지원」(58%)이 1순위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 과가 도출되었으며, 「미디어다양성기반 구축」(26.7%), 「방송통신 심

의지원」(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0>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연구개발 사업) 결과 및 순위

전책연구 0.416 1 기술개발 0.322 2 출연연 연구개발 0.109 4 지원 전파자원 개발 및 0.152 3		주요사업 세부사업		결과	순위
1 연구개발 사업 출연연 연구개발 이.109 4 지원 전화자원 개발 및 0.152 3			정책연구	0.416	1
지원 0.109 4 전파자원 개발 및 0.152 3			기술개발	0.322	2
전파자원 개발 및 0.152 3	1	연구개발 사업		0.109	4
1 0.152 3					
				0.152	3

<그림 5.18>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연구개발 사업)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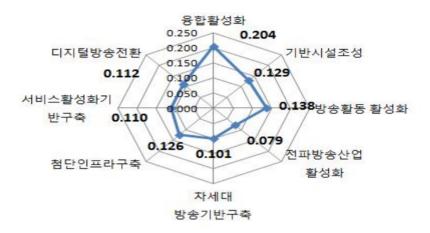
<표 5.11>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표준화 사업, 인력양성 사업) 결과 및 순위

	주요사업	세부사업	결과	순위
2	표준화 사업	방송통신표준기술력 향상	1	1
3	인력 양성 사업	전문 인력 양성	1	1

<표 5.12>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결과 및 순위

	주요사업	세부사업	결과	순위	
		융합 활성화	0.204	1	
		기반시설조성	0.129	3	
		방송활동 활성화	0.138	2	
4	기반 조성을 위한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0.079	8	
4	사업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	0.101	7	
		첨단 인프라 구축	0.126	4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0.110	6
		디지털 방송 전환	0.1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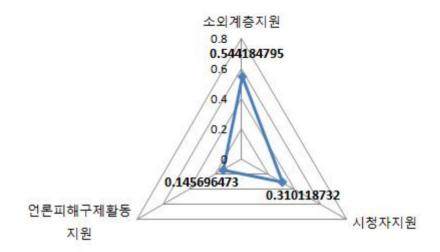
<그림 5.19> 세부사업(제3계층)-R&D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중 요도



<표 5.13>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결과 및 순위

	주요사업 세부사업		결과	순위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0.544	1
1	이용자	시청자 지원	0.310	2
	지원	언론피해 구제활동 지원	0.14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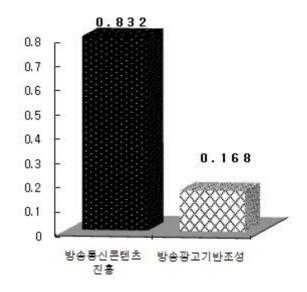
<그림 5.20>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중요도



<표 5.14>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방송통신 진흥 지원) 결과 및 순위

	주요사업 세부사업		결과	순위
2	방송통신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0.832	1
	진홍지원	방송광고 기반조성	0.16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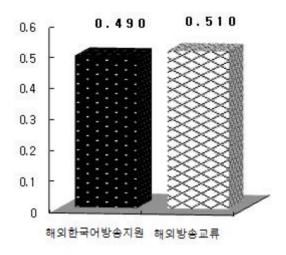
<그림 5.21>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방송통신 진흥 지원) 중 요도



<표 5.15>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결과 및 순위

	주요사업 세부사업		결과	순위
3	국제협력 및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	0.490	2
	민간교류 지원	해외방송 교류	0.5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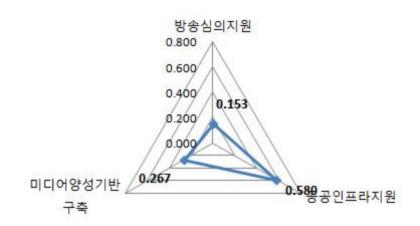
<그림 5.22>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중요도



<표 5.16>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지원 사업) 결과 및 순위

	주요사업 세부사업		결과	순위
	70 770	방송통신 심의지원	0.153	3
4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	공공 인프라 지원	0.580	1
	되는 지원 사업	미디어다양성 기반 구축	0.267	2

<그림 5.23> 세부사업(제3계층)-비R&D사업(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 영되는 지원 사업) 중요도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전략사업 최종안

각 대분류 및 주요사업, 세부사업의 중요도가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전략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은 각 분류별 심사 지표 사이의 우선순위 분석과 전체 전략사업 사이의 우선순위 분석으 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① 대분류 우선순위

대분류 우선순위는 「R&D」,「비R&D」 순으로 나타났다.

② 주요사업(제2계층) 우선순위

□ 주요사업에 대한 항목별 우선순위

R&D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사업」,「표준화 사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인력양성 사업」순으로 나타났다.

비R&D 사업에서는「방송통신 진흥지원」,「방송통신 이용자지원」,「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원」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

주요사업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는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진흥지원」, 「표준화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 이용자지원」,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③ 세부사업(제3계층) 우선순위

□ 세부사업에 대한 항목별 우선순위

- R&D 사업

- (1)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정책연구」,「기술개발」,「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출연연 연구개발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 (4)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융합 활성화」, 「방송활동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 「첨단 인프라구축」, 「디지털 방송전환」,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 비R&D 사업

- (1)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소외계층 지원」, 「시청자 지원」, 「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순으로 나타났다.
- (2) 방송통신진흥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방송광고기반조성」순으로 나타났다.
- (3) 국제 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해외방송 교류」, 「해외한국어 방송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 (4)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서는 「 공공인프라 지원」, 「미디어다양성기반 구축」, 「방송통신 심의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 세부사업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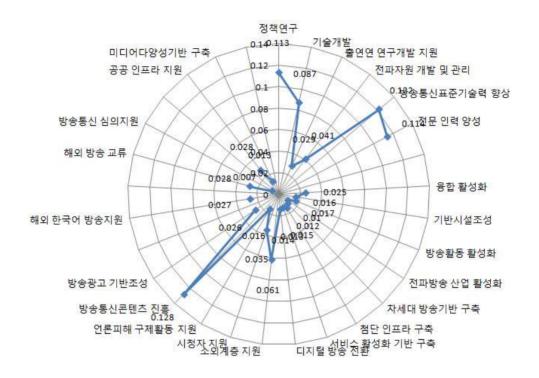
세부사업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는「방송통신 콘텐츠 진흥」,「방송통신 표준 기술력 향상」,「전문 인력 양성」,「정책연구」,「기술개발」,「소외계층 지원」,「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시청자 지원」,「출연연 연구개발 지원」,「공공인프라 지원」,「해외방송교류」,「해외한국어 방송지원」,「방송광고기반조성」,「융합 활성화」,「방송활동 활성화」,「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기반시설 조성」,「첨단인프라구축」,「디지털 방송전환」,「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미디어다양성기반 구축」,「차세대 방송기반 구축」,「전파방송 산업 활성화」,「방송통신 심의지원」순으로 나타났다.

<표 5.17> 대분류, 주요사업, 세부사업 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대분	·류	주요사약	1	세부시	· 나업								
항목	우선 순위	항목	우선 순위	항목	전체 가중치	우선 순위							
				정책연구	0.113	4							
		연구개발	1	기술개발	0.087	5							
		사업	1	출연연 연구개발 지원	0.029	9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	0.041	7							
		표준화 사업	3	방송통신표준기술 력 향상	0.122	2							
		인력양성 사업	5	전문 인력 양성	0.114	3							
R&D		기반조성을	1	1	1	1	1		1		융합 활성화	0.025	14
												기반시설조성	0.016
				방송활동 활성화	0.017	15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0.010	23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	0.012	22						
				첨단 인프라 구축	0.015	18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0.013	20
				디지털 방송 전환	0.014	19
				소외계층 지원	0.061	6
		방송통신 이용자 지원	6	시청자 지원	0.035	8
				언론피해 구제활동 지원	0.016	16
		방송통신	0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0.128	1
		진흥 지원	2	방송광고 기반조성	0.026	13
⊭]R&D	2	국제협력 및	7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	0.027	12
		민간교류 지원	,	해외 방송 교류	0.028	11
		공익·공공을		방송통신 심의지원	0.007	24
		목적으로 운영되는	8	공공 인프라 지원	0.028	10
		지원 사업		미디어다양성 기반 구축	0.013	21

<그림 5.24> 대분류, 주요사업, 세부사업 간의 중요도



Ⅵ. 세부사업 검토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전략방향에 따른 세부사업을 검토한 다.

1. 세부사업 검토

1) 2011년 세부사업 검토

2011년 예산에 포함된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표 6.1> 2011년 주요사업, 세부사업

프로그램(8개)	주요사업(기금 부분 해당 사업)(30개)	세부사업 (60개)
	① 방송통신정책연구	❶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
	②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②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지원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1. 방송통신	③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다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융합촉진		유통시스템구축
(투/융자 포함)		5 해외한국어 방송지원
	④ 방송통신 전문 인력양성	6 방송통신전문 교육 강화
	⑤ 방송통신 기반시설조성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⑥ 방송통신콘텐츠진흥융자	❸ 프로그램 제작비(융자)
	⑦ 방송 통신 산업 투자촉진	⑤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⑧ 방송활동활성화	❶ 방송분야 시상
	@ 859598M	❶ 방송평가 기반조성사업
	⑨ 방송광고기반조성	❷ 방송광고 기반조성
2. 방송진흥기반		❸ 디지털방송수신 환경개선
구축	① 디지털방송전환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
(융자 포함)	W -1.1500 CC	₿ 디지털전환 시범 사업
		● 디지털전환 취약 계층지원
	① 방송통신심의지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U 성공공신심의시원	В 방송심의 활동 강화
	① 디지털방송전환융자	🕦 디지털방송전환(융자)
	③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ᢧ 개도국 T-DMB시범 서비스
3.전파방송산업		② 디지털라디오 비교실험 방송
기반조성	④ 주파수활용여건조성	❷ 지상파DTV분산주파수망
		시범서비스
	⑤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손실보상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4. 방송 인프라 개선	16 차세대방송기반구축	❷ 고화질3DTV방송시스템구축
	① 방송 인프라지원	ᢧ 아리랑국제 방송지원
		ᢧ 영어FM라디오방송지원
		❷ 국악방송지원
		● 디지털케이블TV공공서비스사업
	® 미디어다양성기반구축	❸ 시청점유율조사
5.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	③ 소외계층지원	항상 보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❸ 장애인방송 제작지원(민간)
		●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제작지원
	② 시청자지원	● 기·3기·1 □ □ □ □ □ □ □ □ □ □ □ □ □ □ □ □ □ □ □
		● 기기기교과 ● 시청자권익 증진활동 강화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 시청자미디어 센터운영 지원
	② 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	❸ 언론중재 위원회지원
6.네트워크 고도화	② 첨단인프라구축지원	❶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융자)
7. 방송통신국제 협력강화	② 해외방송교류	납북방송통신 교류협력촉진
		●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강화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지원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② 방송통신기술개발(R&D)	45 전파방송위성
		원천기술개발(R&D)
		● 방송통신미디어
		원천기술개발(R&D)
		● 차세대통신
		네트워크원천기술개발(R&D)
		❸ 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R&D)
	🔊 출연연 연구 개발지원(R&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 물란한 단기 개발시원(RCD)	연구개발지원(R&D)
	26 방송통신표준	● 방송통신표준화활동지(R&D)
8.방송통신연구	기술력향상(R&D)	動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R&D)
개발기반조성	② 방송통신 인력양성(R&D)	❸융합방송 통신전문인력양성(R&D)
(R&D)		❸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R&D)
	≫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R&D)	
		🔊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R&D)
		● 방송통신R&D
		관리 기반 구축(R&D)
		☞ 방송통신정책연구(R&D)
	◎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R&D)	
		구축(R&D)
		❸ EMC기술지원(R&D)
	③ 기금관리시스템구축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시스템구축(신규)

(1)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는 방송통신의 공공성·공익성 실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청자 편익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송통신 정책기반을 조성하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역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산업 활성화와 정책개발 지원과 사회 제반 영역의 다양한 변화를 분석·파악하여 정책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방송·방송통신 융합, 한미 FTA 협정 체결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제도 정비 및 정책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장발전 추세와 소유/진입 규제완화 등 미디어 부문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 사업의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2)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은 IPTV·디지털 케이블 등 기존 매체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스마트폰·스마트TV 등 새로운 신규 매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시점에서 '스마트워크' 등 새로운 생활방식의 조기 정착과 함께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및 이를 활용한 국가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N-screen등의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매체의 등장과 타 산업 간의 접목된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로 민간의 상용화 투자 유도,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제도 개선,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도입은 타당하다.

(3)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고품질의 공익적 프로그램, 매체 융

합 환경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향상 및 사업자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프로그램 수입이 1,300억 원, 관광수입이 8,400억 원, 국가홍보 330억 원으로 글로벌 마켓 공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를 할수 있다. 대형 기획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 산업 발전 기반마련과 방송프로그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차세대 방송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4)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구축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구축 사업은 PP, SO 및 독립제작사 등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관리·유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방송사업자 콘텐츠 유통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증가하는 HD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글로벌 플랫폼 지원을 위한 상 주 기술인력 배치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5)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방송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방송사를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우리말·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민족정체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은 2009년 12월 기준 15개국 94 개 방송사(TV 또는 라디오)를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한국어방송사간 방송프로그램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국가 브랜드 강화를 위한 10대 과제로 선정 된 만큼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6) 방송통신 전문교육 강화

방송통신 전문교육 강화 사업은 신규 매체가 증대하고 방송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현업 방송인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미디어 문화정착에 기여하며, 신규서비스 등장, 디지털전환 등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요 업종별 맞춤 교육을 통한 재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분야는 지속적인 재교육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방송사는 열악한 재정여건(일부 지상파, 홈쇼핑 PP, SO를 제외한 대부분의 PP, DMB, 위성방송사들은 적자, 연매출 100억 이하 방송사가 59.3%, 종사자 수 50명 이하 방송사가 63.9%임)으로 자체 인력재교육에 대한투자가 어려움으로 정부지원을 통한 적극적 전문 인력 양성의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7)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방송채널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 지원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센터 건립 턴키업체 입찰공고 된 상태이며, '11년까지 설계시공에 필요한 재원 반영이 필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의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8) 프로그램 제작비(융자)

제작비 자체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의 일시적 재정문제해소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절차를 거쳐 제작비 융자금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사업은 2010년 종료되었다. 2010년 사업성과 검토를 통하여 지속 여부를 검토할필요가 있다.

(9) 방송영상 콘텐츠 투자조합(출자)

방송콘텐츠 제작사에 제작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자본유입을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 선출자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투자조합(출자) 사업은 2010년 종료되었다. 하지만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한 민간 자본지원과 다양한 콘텐츠 지원을 위하여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10) 방송분야 시상

정부기관이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제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콘텐츠 제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자 만족도향상 및 방송콘텐츠 산업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송활동 활성화 사업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방송제작인들이 창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한다.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창작활동 활성화, 방송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방송 산업 육성을통한 국가 신 성장 동력 제공을 한다. 방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11) 방송평가 기반조성사업

방송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 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송사업자 편성정보 관리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평가 기반조성 사업은 융합 환경에서 수용자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이해를 도모하고 시청자의 시청행태를 분석, 매체별 시청률을 파악하여 수용자 중심의 방송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방송편성정보 디지털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송사업자의 편성정보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진행이 타당하다.

(12) 방송광고 기반조성

방송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광고

표준화 추진, 방송광고 인력 양성, 우수 방송 광고 시상지원 등을 통해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방송광고 산업의 발전 및광고관련 기관·단체의 윤리성, 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방송광고 기반조성 사업은 우리나라의 광고시장 규모가 '08년 기준 약 7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방송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광고 산업의 저성장 상황에 대해 공적 재원의 투여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확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 기반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13) 디지털방송수신 환경개선

2012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신환경실태 조사 등 기초자료 분석 및 정보제공, 농·어촌마을 및 공공임대주택 등 자체적으로 수신환경개선이 어려운 계층에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종료에 따른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1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모든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 유도와 디지털 전환 과정 중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시청권 보장을 목적으 로 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사업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 고 재정의 효율성 견지 부분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인지율 저조에 따른 대국민 홍보 강화필요로 인해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15)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은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에 앞서 점검을 위하여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소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 인 진행은 타당하다.

(16)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 컨버터 등을 구비해야 하나, 자발적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TV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디지털 컨버터 보급(또는 디지털TV 구매보조) 및 안테나 교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2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따라 우려되는 저소득층의 방송 시청 중단 방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디지털 방송 전환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진행은 타당하다.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 진행은 타당하다.

(18) 방송심의 활동 강화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심의,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심의 시스템 구축,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 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폭력성, 편파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내용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심의 및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불건전정보 유통 및 악성댓글 등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19) 디지털 방송전환(융자)

자금력이 취약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디지털 방송으로의 조기 전환 유도 및 디지털 방송 산업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설비전환을 위한 집중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융자확대 외에는 마땅한 정책대안이 없는 실정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진행은 타당하다.

(20)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ITU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T-DMB(지상파 DMB)기술의 해외진출을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 하고 잠재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체의 수출증대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타당하다.

(21) 디지털 라디오 비교실험 방송

국내환경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라디오 기술표준 방식 도입 결정을 위해 디지털라디오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교실험방송을 실시하여라디오 방송의 디지털전환 기반마련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0년 종료되었다. 2010년 사업성과 검토를 통하여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있다.

(22) 지상파 DTV 분산 주파수망 시범 서비스

지상파 DTV 분산중계 기술을 활용, 한정된 방송용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방송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0년 주파수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 되었다.

디지털 방송 채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방송주파수의 소요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전파자원의 활용극대화의 추진과 원활한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하여 사업의 재개가 요구된다.

(23)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라 시설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보상대상 대역의 무선국에 대한 설비 현장 확인, 감정평가, 보상금 심의 등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손실보상은 실행계획 수립 → 청문 → 공고 → 청구 → 결정·통지 → 지급 등 완료까지 약 1년 6개월~2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므로 정부차원에서 손실보상 산정 및 기준 등에 대한 법무업무와 조사·분석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24) 고화질 3DTV 방송시스템 구축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고화질 3DTV 실험방송으로 국내 3D방송 조기 활성화 및 세계 3DTV시장 선점기반 마련과 세계최초 고화질 지상파 3DTV실험방송 실시를 목적으로 진행 되는 사업으로 산업 전 후방 효과가 큰 Post-HD방송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정부지원 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25)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교육방송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통한 시청자 권익 증진 및 공익적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교육방송프로그램 등 공 익적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과 시청자 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26) 아리랑 국제 방송 지원

아리랑 국제 방송지원 사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이해증진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친밀감 조성, 국익관련 국제여론 조성 및 국가이미지 제고하며 우수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수출 견본 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27) 영어FM라디오 방송 지원

국내 거주·방한 외국인 대상, 영어라디오방송을 통해 우리문화 및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국가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어로 된 한국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각종 편의제공으로 관광산업 기초 인프라제공 및 국민의 영어능력 향상과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28) 국악방송지원

국악방송지원 사업은 방송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 문화의 보존 및 대중화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며 상업방송에서 소외된 국악 및 전통문화 방송편성으로 방송복지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이라는 전통문화의 한 장르를 전문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문화적소외계층에 대해 방송복지실현은 물론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달성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

(29) KBS 대외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 방송과 대외방송의 운영보조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제작을 한국방송공 사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신 수행하는 것이며 비 수익적 사업 성격을 고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적재원의 조달이 필요하므로 지 속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

(30) 디지털 케이블 TV 공공서비스 사업

케이블TV를 활용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와 지역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공서 비스 개발지원 및 확산을 통해 SO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유도하는 것 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은 20.3%에 불과하여 지상파TV 의 디지털 전환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타당하다.

(31) 시청점유율 조사

방송 사업자 시청점유율의 객관적·효율적인 조사,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청점유율 조사 자료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므로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타당하다.

(32)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사업은 시각·청각 장애인, 난청노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 기획사업 지원 등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 사회·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마련과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청각 장애인의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 기획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타당하며 확대 될 필요가 있다.

(33) 장애인방송 제작지원(민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은 방송사업자의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을 통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방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복지향상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수화, 자막, 화면해설방송 등이 의무화 되면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34)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디지털 시청자 복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7호에 의거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35)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방송통신융합시대 시청자의 새로운 방송 환경 적응 및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미디어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영역 확대, 미디어 교육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사업은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적응 및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한계로 인한 미디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36) 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 강화

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 강화 사업은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정책 환류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하여 시청자의 권익증진 및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들이 방송환경조사 및 정책제안사업을 수행토록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와의 소통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37) 시청자 평가원 활동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 및 방송 비평 활동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시청자 평가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으로 시청자 평가원이 시청자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대와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38)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시청자의 미디어액세스권 실현을 위한 인프라 제공 및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기반으로서 방송환경 구축과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국가 신 성장 동력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경우 시청자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영상미디어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하였으나,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으로 시청자 방송참여를 위한 제작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DTV전환 및 IPTV활성화 등 방통융합정책의 효율적인 지역 홍보창구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역할이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하지만 경남, 전남권역 이외의 시청자는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광역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 지원되어야 한다.

<표 6.2>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결과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
센터 이용자 수	126,572명	142,623명	16,051명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수	245편	315편	70편

(39) 언론중재 위원회 지원

방송, 인터넷 포털 등 언론보도 및 매개로 인한 피해구제 및 예방을 통한 시청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언론의 공정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정 언론피해구제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터넷포털 등의 언론보도매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09.2.6) · 시행('09.8.7)이 되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0) 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융자)

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융자)사업은 고품질·광대역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통합 망(BcN)의 전국기반 구축 확 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광대역 통합 망(BcN)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농어촌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 자율 구축에 어려움이많다. 도농 간 지역균형 발전, 소외계층 정보접근 기회제공,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도시민의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도 광대역 응용서비스(100M 초고속, IPTV등) 제공이 필요하므로, 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41) 남북방송통신 교류 협력 촉진

남북 방송통신 현안 분석 및 교류협력 사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류협력 활성화 및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조성하며 남북 간 상호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호 공감대 형성과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촉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42)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 방송사업자 등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신규시장 진출 정책수립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의 해외진출 유망국가에 대한 수출입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실시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1세기 핵심 부가가치 상품인 DMB, IPTV등 국내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43)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지원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국가 간 최신 정보교류와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방송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정책 비전 도출의 필요성과 방송통신 서비스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의 필요로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44)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사업은 방송관련 자유무역협정(FTA) 및 방송 협력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분야 협력사항 이행을 통한 국가 간 방 송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및 저개발국 방송장비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

(45) 전파방송위성원천기술개발(R&D)

전파방송위성분야 서비스 고도화 및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보편적 방통융합 서비스를 실현, 케이블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전파관리 및 이용효율 극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전파이용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필요 및 국가의 중요자원인 광대역 위성방송용 주파수 확보와 차세대 고품질 위성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주도의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

(46) 방송통신미디어원천기술개발(R&D)

3DTV, UHDTV, DMB 등 유망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원천 기술개 발을 통해 차세대 방송시장 선점 기반 마련 및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3D원천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술 개발, 그린 네트워크 통신 기반 에너 지 수요관리, 통합모니터링 기술 개발 투자 등의 필요로 지속적인 사 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47)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원천기술개발(R&D)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원천기술개발(R&D)은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신서비스를 육성하여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고, 선제적 미래 인터넷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제2의 인터넷 경제 시대'의 주도권 확보, 사물지능통신서비스 발굴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스마트 모바일로 인한 '창조적 파괴'에 뒤늦게 진입하여 주요국 대비 2~3년 뒤진 것으로 분석되어 모바일 서

비스 분야의 국가적 대응을 통한 위기극복이 필요하며, 모바일 응용서비스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시장의 대외경쟁력 확보 필요 및 4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촉진·활성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의 필요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며, B4G 이동통신과 같은 미래 변혁적 모바일 기술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확대되어야 한다.

(48) 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R&D)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 보호, 신규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스팸 등 유해정보 생성·유통 기술의 지능화로 새로운 대응 기술이 필요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인터넷, 스마트 폰 등 신규 융합 서비스 활성화 에 따른 정보보호 R&D 이슈 증가로 인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4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R&D)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기술 등 중장기 방송통신 기술 진흥을 위한 선행적인 기초·원천연구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08.2)인 PBS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건비 확보, 정부출연 운영 효율화 기본계획(국과위, '09.7) 등 다양한 정책적인 계획으로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일본의 최대 연구기관인 AIST(산업기술종합연구원)는 경제 산업성산하 연구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운영교부금을 70% 이상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40개 지역에 56개 연구소를 포함한 80여개의 연구조직으로 구성된 프라운호퍼연구회(FhG)는 정부로부터 안정적인기본 연구비를 30% 이상 지원받고 있다. 또한 대만의 공업기술연구원(ITRI)은 정부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정부로부터 50% 이상의 안정연구비를 지원받아 국가 혁신체계 및 성장 메카니즘의 중심축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0) 방송통신 표준화 활동지원(R&D)

방송통신 표준화 활동지원(R&D)은 방송통신표준 제정·보급 및 ICT 국제표준전문가, ICT표준화 전략 포럼 등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표준 리더십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민간 산업체의 인식과 여건 부족으로 표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미흡하며 국내적으로는 기술수준 및 전문가의 부족으로 국제표준화 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이익도모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 한국의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증대 및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체계의 확립과 시장지향적인 민간의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방송통신 표준화 활동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바람직하다.

(51) 방송통신 표준개발 지원(R&D)

국제표준 선도, 국내표준 조기정립, 공공분야 등 방송통신 표준화 전략분야 별 미래서비스 도입 시기에 맞춘 적시 표준개발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 리더 도약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표준은 기술개발의 성과로 인식되며, 국제표준화는 세계시장 선점의 전략적 도구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통신 표준개발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52) 융합방송통신 전문 인력 양성(R&D)

융합방송통신 전문 인력 양성(R&D)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고급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대학과 연계한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를 통한 정책개발 지원 및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무선인터넷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모바일 SW전문 교육 지원을 통한 무선인터넷 분야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급격한 방송통신 환경 변화로 신기술 및 신규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관련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도 최신화가 필요하며, 고급 전문가 육성필요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며,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53)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R&D)

국가적 중점 추진사업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가입자망 고도화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전문 시공인력을 신규 양성하여 중소 공사업체의 필수 기술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환경에 대응한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위해서는 시설구축, 교육장비, 실험실습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54)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R&D)

연구개발 촉진 및 국제공동 연구협력기반 조성, 공공·민간부문의 IPv6 전환·확산을 지원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인터넷 주소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신기술 및 첨단 응용분야 연구개발은 선도성, 비영리성 등의 성격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인터넷의 기술 및 정책 주도권을 잡기위해 경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55)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기반구축(R&D)

다매체를 이용한 공공분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표준규격의 개발, 선도적으로 시범적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개방형 테스트 환경구축으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

며, 방송융합 기술의 발달로 단순 기능 간 결합에서의 기술·서비스 간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간·시장간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기반구축(R&D)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56) 방통통신R&D관리 기반구축(R&D)

방통통신R&D관리 기반구축(R&D)은 방송통신관련 국가적 현안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기술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미션 지향적 R&D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급격히 변화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적인 기술을 선도, 방송통신 기술의 활용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 분야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서비스 기반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인프라이며, 전·후방 효과가 큰 핵심 성장 동력이며, 방통융합, 녹색성장 등 방향이 방송통신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재정립 할수 있도록 R&D기술혁신체계 기반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57) 방송통신정책연구(R&D)

방송통신정책연구(R&D)는 방통통신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통신시장경쟁체계 확대, 새로운 통신서비스 등장에 따른 통신규제환경 변화요구 등 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과 주요정책목표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통신시장, 전파방송의급격한 환경 변화와 융합에 따른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공정경쟁체계 마련과 첨단기술 발전, 신규서비스 개발 등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과 사업자간 경쟁과열 및 분쟁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지원 등의 필요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다.

(58) 주파수자원재개발기반구축(R&D)

주파수자원재개발기반구축(R&D)은 차세대 전파이용 서비스 도입,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주파수 이용 연구, 재배치 방안, 전파자원 이용자 중심의 시장 친화적 이용환 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주파수자원 확보를 위한 이용 현황 분석 및 회수·재배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며, 국내 서비스 수급 환경 분석을 통한 주파수 담합방지 방안 마련 등 공정성 확보와 한국 형 주파수 경매제 설계 및 사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 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타당하며, 시장 친화적 전파자원 이용환경 조 성을 위한 사업의 예산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59) EMC기술지원(R&D)

방송통신기기 및 서비스 융복합화에 따른 기기 간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체의 EMC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안전한전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EMC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산업 및 생활 전반에 EMC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EMC기술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바람직하다.

(60)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시스템 구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10.3.22)에 따라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방통 기본법에 따라연구과제(R&D) 수행업무가 포함되어 과제의 기획·관리·성과평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으며, 기금운용 및 관리 사무가 위탁됨에 따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운용·관리및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운용수입률 업무 체계 개선의 필요로 방송통

신발전기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신규 추진은 타당하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2) 추가 세부검토 사업

(1) 애플리케이션 개발

2010년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9년 대비 2.8% 증가한 4,951 만 명으로 인구대비 보급률은 1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스마트 폰 시장은 연평균('08~'13) 34% 급성장, '12년 휴대폰 내 비중이 43%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8)

<표6.3> 2010년 국내이동전화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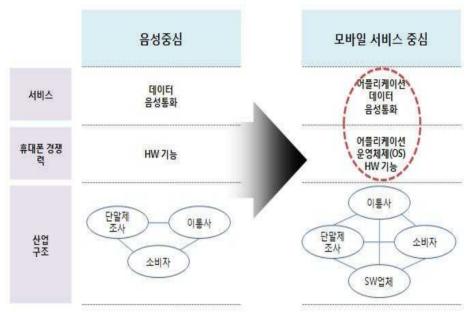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성장률 (2009년 대비)
가입자 수 (만 명)	4,020	4,350	4,561	4,818	4,951	2.8%
- 2G	4,020	3,780	2,801	1,968	1,102	-44.0%
- 3G	_	570	1,760	2,850	3,865	35.6%
매출액 (억 원)	185,838	196,943	210,916	221,012	225,052	1.8%
무선음성	156,977	168,086	174,246	177,626	174,506	-1.8%
무선인터넷	28,861	28,857	36,670	43,387	50,546	16.5%

출처: 2010년 국내 콘텐츠산업 10대 전망 및 해외 콘텐츠 산업 6대 전망

또한 기술, 사회적 변화에 의해 음성중심에서 모바일 서비스 중심 으로 변해가면서 애플리케이션은 중요해지고 있다.

⁸⁾ 삼성 SMD, 2009.3

<그림6.1> 모바일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



출처: 스마트폰 용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동향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하면서 세계 각국은 아이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관련 제품과 서비스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국내 최초 기업사회 공헌 애플리케이션인 '핑크 리본 백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무부는 최근 '법아! 놀자!' 참여형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업들과 정부에서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증가하였다.

해외 주요업체들은 자사 플랫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SKT도 9월부터 앱스토어(App-store)를 개방하여스마트폰 콘텐츠의 양적 증가를 지원하고 있다.

<표6.4>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추진 상황

운영주체	애 플 리 케 이션 마켓	오픈시기	이용단말기	주요 플랫폼
애플	앱스토어	'08년 7월	아이폰, 아이 팟터치	OS X
구글	안드로이 드 마켓	'09년 2월	구글폰	안 드 로 이 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마켓 플레이스	′09년	윈도 모바일 스마트폰	윈도 모바 일
RIM	블 랙 베 리 앱월드	'09년 4월	블랙 베리폰	블 랙 베 리 운영체제
노키아	오비스토 어	'09년 5월	노키아스마 트폰	심비안

출처: 월간 방송통신산업 동향분석 2호

<표6.5>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 현황

운영주체	
Samsung mobile applications	 2009년 2월 오픈(영국을 시작으로 확대 예정) 윈도 모바일, 심비안, 자바 기반 애 플리케이션 제공
LG Mobile Developer Network	- 개발자 사이트 'LG모바일 개발자 네트워크' 오픈
SK Telecom	- 2009년 9월 상용화 - 'SK 표준플랫폼'을 적용, 윈도 모바일, 리눅스, 심비안 등 다양한 OS수용 - '크로스플랫폼'을 통해 위피 기반애플리케이션 전환
KT	-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 준비 중

출처: 융합 및 통신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연구

2010년 1월 초 기준으로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100대 유료 콘텐츠 중 한국인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콜로세움(7위), 카툰워즈(20위), 아이건(37위), 앱박스프로(96위) 등 5개이며,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초 오픈한 T스토어는 2010년 1월 초 기준 가입자 수 21만 5,000명, 등록 콘텐츠 수는 2만 7,000개, 누적 다운로드 수 78만 건을 기록하였다.

2010년 1월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0년 앱스토어 다운로드는 61억 740만 달러(7조 198억 원), 광고는 5억 963만달러(6,776억 원)를 형성해 총 67억 704만달러(7조 6979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며, 이는 2009년 42억 379만달러(4조 8,184억 원)에 비해 60% 성장한 수치이며, 앱스토어는 2013년까지 해마다55~74%성장을 보이며, 2013년에는 2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2011년 6월부터 이동 통신사, 운영체제(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개시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콘텐츠 벤처 및 콘텐츠 수출확대

벤처캐피탈 창투사는 2002년 128개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다소 감소 추세이며 현재 101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4개의 신규 법인이 등록하였다.

2009년까지 총 결성금액은 2,874억 원으로 23개의 조합이 신규 결성되었으며, 200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던 결성금액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감소하였다.

신규 결성조합의 출자자는 정부·기금이 55.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창투사 16.1%, 금융기관이 15.1%, 일반 법인이 8.6%, 개인 4.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벤처 캐피탈 신규투자액은 매년 60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방송콘텐츠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가 40.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보통신 업계는 29.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KIF(Korea IT Fund 3,700억 원)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과 관련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정부·민간 공동 200억 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형 다큐멘터리, 3D방송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등에 투자하고 있다.

<표6.6>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 콘텐츠 수출 진흥 관련 정책

지원 분야	사업 명
	- 국제공동제작 포맷 제작지원
	- 뉴미디어 포맷 바이블 제작지원
제작지원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 문화원형 글로벌 콘텐츠화 지원
	- OSMU킬러 콘텐츠 제작 지원
	- 방송 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
	- 국제방송영상 견본 시 참가
마케팅 지원	-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 국제방송 영상 견본 시 개최(BCWW)
	- 방송 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유통 및 수출 지 원	- 글로벌 콘텐츠 센터 운영사업

출처: 방송콘텐츠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표6.7> 방송통신위원회 제작 지원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방송프로 그램 제작 사업 예산	77.3	89.4	90.2	143	175
전년대비 증가율 (%)	87.2%	15.7%	0.9%	58.5%	22.4%

출처: 방송콘텐츠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필요 하다(아랍권역, 남미지역, 인도 등).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시장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매우 협소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 방송 콘텐츠의 진출가능성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은 지역의 시장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도출이

□ 아랍권역

아랍지역은 3억 1천만 인구로 구성된 거대 지역이자,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 공동체로써, 매스미디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동안 국가적 시스템에 의해 미디어가 통제되고 경제적 인프라가 취약하여 성장 잠재력에비해 미디어의 발전 속도가 늦었다.

현재, 국제 방송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아랍어이며, 40여개 국가의 국제방송이 아랍어 프로그램을 아랍권에 방송하고 있다.

TV광고수익이 무려 12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0개 이상의 위성 채널들이 아랍권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위성방송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반 이슬람적인 프로그

램(성, 폭력, 기독교 성향 등)은 방송되지 못했고, 외국 영상물 수입에 있어서도 사전 심의를 통해 윤리적, 종교적인 내용에 있어 방송 상제약이 심했으나, 위성방송이 등장하면서 아랍지역에서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 남미 지역

라틴아메리카의 각각의 나라는 그 나라 수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20여 개국이 있지만 멕시코와 브라질이 이 지역 인구의 56%를 차지하며 남미 인구의 90%가 브라질, 멕시코, 아 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페루, 베네수엘라에 집 중되어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전체 미디어 시장은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연 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방송시장의 특징으로는 시장의 규모나 미디어 보급 상황 등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불균형 상태를 이르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가 가장 큰 규모의 방송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유료방송서비스 가입비율이 가장 높다. 멕시코와콜롬비아 모두 자국 방송 다음으로 미국방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아르헨티나 지상파 방송채널의 경우 광고수입의 급감으로 토크쇼나 리얼리티쇼와 같이 드라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인도 지역

1999년 말부터 아리랑 TV를 통해 한국 프로그램이 인도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인도의 방송은 문화적 특성에 의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 프로그램 수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국영방송인 Dooradarshan은 90% 이상을 국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외국 프로그램의 경우 인도의 문화에 부합되고 국가의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선별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상업방송의경우 자체 규제에 따르므로, 유해프로그램의 기준이 상당히 낮게 적용되고 있다.

콘텐츠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날 행사나 방송 콘텐츠 페어 등의 축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적인 견본 시 등을 통해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류 미 확산 지역의 진입을 위해서는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소재와 주제의 다양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접근 정책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주제작비율을 드라마, 비드라마 등 장르별로 조정하여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며 유통 환경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방송통신광고 전략

광고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으로 방송광고 산업을 활성화 하고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새로운 방송광고유형인 가상광고를 도입하고, 방송법에 가상광고 정의규정을 신설한 후 세부 도입방안(허용시간 량, 허용 장르 등)을 수립하며,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 개선)이 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및 모바일 브로드 밴드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광고도 성장하고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광고, 개인 맞춤형 광고, 애플리케이션 기반 광고 등 신 유형의 광고방식이 속속 출현하면서 규제 완화,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 등 다양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9)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광고시장의 잠재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세부사업 중 방송광고 기반조성은 기초인 프라 구축과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주로 사업이

⁹⁾ 방송통신위원회 중점추진 과제, 방송통신위원회, 2010.3.29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많은 방송광고 DB화 및 콘텐츠 개발과 방송광고 전문 인력 양성부분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광고 시장 확대·시장 효율성 제고와 스마트 광고기반 구축을 위하여 판매시장 경쟁도입, 규제완화, 광고시스템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표6.8> 지상파 광고 수주액

(단위: 억원, 전년 동원 대비 증가율 %)

	구분			'08	3년			'09년								
, -		연 간	3/4	3/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상파 광고액	21,85 5	5,405	4,762	3,506	4,668	1,475	1,582	1,631	1,680	1,442	1,814	2,127			
	전체	-8.7	0.1	-28.3	-32.0	-28.1	-28.8	-32.6	-22.3	-6.7	-17.1	-2.7	12.9			
증 가 율	지상파 tv · 라디오	-8.9	-0.1	-28.4	-32.1	-28.3	-29.0	-32.9	-22.5	-7.0	-17.1	-3.0	12.6			
	지상파 DMB	48.1	64.8	-1.1	-2.7	39.6	25.7	48.9	44.4	58.9	-18.0	66.6	104.0			

출처: 월간방송 통신산업 동향분석 5호

(5) MVNO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유한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야 하므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주파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선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유사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MVNO이다.

MVNO는 대체 불가능한 이동통신설비(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무선전송 등 Radio Access Network)를 MVNO로부터 임대하여 자신이 보유한 대체 가능한 설비(가입자 관리, SIM 카드, 교환국, 마케팅 등 Core Network)와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MVNO는 브랜드, 요금체제, 상품 등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게된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나 금융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텔레매틱스나 모바일 뱅킹, 모바일 인터넷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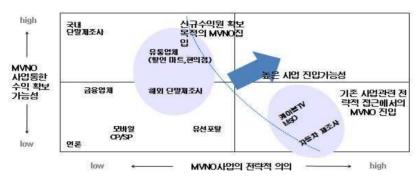
<표6.9> 주요 무선 재판매 사업 현황

구분	사업현황
	● 에넥스텔레콤: KTF망을 이용하며, 약 12만 명의 가입자 보유
	-골드, 실버, 표준, 자동 상한 350요금제의 4개 요금제 운영: 가입비+이용료
	의 요금구조 (모든 시간대에 10초당 20원의 일 요금, 단 24개월간 요금제,
	기기변경 불가)
	- 약정요금제 별도 운영: 2만원을 초과하는 이용금액을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
	하는 요금제, 예를 들어 기본료 1만 6천원에 24개월 약정할인서비스 받을
PCS	경우 기본료가 월 6천원으로 할인
재	- 3G 요금제: @SHOW 표준요금 베이직, @SHOW 표준요금 브론즈, @SHOW
판매	표준요금 프래티늄, @자동 상한 350 등의 요금제 존재
	● SpaceNet : LGT망을 이용, 가입자와 이용계약 체결, 별도 요금제 운영
	- 소량통화 요금제와 다량통화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량 통화 요금제
	의 경우 3,600원에서 6,000원으로 기본료가 저렴하나 상대적으로 통화료가
	높은 수준으로 소량 이용자에게 적합
	- 무선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존 이동전화서비스와 일정한 차
	이는 존재
	• 현대,기아차(Mozen): LGT와 제휴하여 현대 및 기아차 차량에 설치된 텔레매
텔레	틱스 단말기를 통해 이동전화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현대차가 가입자와
메틱	이용 계약을 체결, 요금을 부과)
스	●르노삼성: SKT와 제휴하여 SM5차량 등에 텔레매틱스시스템을 장착 하여 서
	비스 제공

출처: 통신서비스 재판매시장 영향 분석과 재판매시장의 전망 연구

MVNO는 사업 자체에서 큰 수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사업 과의 관련성 때문에 자체적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략적 의의를 갖는 케이블TV MSO나 자동차 제조사 등이 사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6.2> 예상 MVNO 사업자



출처: 통신서비스 재판매시장 영향 분석과 재판매시장의 전망 연구

<표6.10> MVNO 잠재 사업자

구분	MVNO진입배경	사업추진방향	진임예상사업자
Cable 사업자	- Multi Service Network 확보를 통한 Convertgence 서비스기반 확보 필요	- OPS 서비스간의 번들링 통한 Up-Selling 전략	KCT, 태광, C&M,CJ 케이블 넷 등
금용사	- 이동전화단말을 통한 SelFinancing ServicLeadership 확보 필요	- 금융제품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혜택 제공 - 독자적인 모바일 뱅킹 서비스 확대	국민, 우리은행, BC, 국민, 삼성, 신한카드 등
단말기 제조사	-Brand Power, 기술력, 단말기 공급 가격 우위를 통한 신규 매출 확보 필 요(이동사의 반발 예상)	- 단말 기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신규서비스 제공가능 - 자사 서비스를 위한 Killer Device 제공 가능	삼성전자, LG전자 등
미디어사업군	- 매니아 총의 Young Customer 보유 - 자사 Contents와의 시너지를 위한 Operator시장 진입필요	- Contents기반의 다양한 멀티 미 디어 서비스 제공	KMTV,M-net,Bugs Music등
자동차제조사	- 사용자의 높은 Loyalty및 브랜드 파 워로 자동차에 대한 기본 탑재된 단 말 유통 가능	- Telemeties 장비기반의 차량 용 서비스 제공	현대자동차, 기아자동 차 등
인터넷 포틸	- 인터넷 포털은 계임 및 커뮤니티 기 반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 중 - 자사 Contents와의 시너지를 위한 Operator시장 진입 필요	- 유선 Portal기반의 유/무 conv ertgence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다양한 부 가 서비스 제공 가능	Daum, Naver 등
유통 업계	- 높은 구매력과 유통망을 보유 - 포인트 사용 증대의 프로모션을 통한 경쟁우위 가능	- 매장판매와 M-Commerce연계 - 상품구매와 통화시간이 연계된 Loyalty Program 개발 가능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홈플 러스 등

출처: 통신서비스 재판매시장 영향 분석과 재판매시장의 전망 연구

'11년 6월부터 MVNO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며, MVNO의 시장점유 율,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량구매 할인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 다.

'10년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성숙과 요금인하 경쟁을 목적으로 도입된 MVNO(재판매)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신규서비스 확산과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6) 네트워크 구축 사업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세대 무선망 구축, 초 광대역 융합 망 구축을 해야 한다.

무선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11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LTE를 도입하고, 급증하는 데이터 분산 및 안정적인무선인터넷 환경제공을 위해 통신사의 Wi-Fi망 구축 확대를 유도 하여 '10년 66천개소를 '11년 165천개소로 증가 시킬 전망이다.

WiBro망을 전국 82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구축하여 전국 서비스를 실현하여 지역 별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WiBro 기술·장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네트워크구축사업은 광대역 통합 망(BcN) 중심 이였다. 도농 간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세대 무선망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7) 미디어 산업 지원

미디어 산업은 모바일 인터넷 및 인터넷 영상시대가 본격화되고, 업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음반시장, 비디오·DVD시장은 규모가 축소했으며, 신문이나 지상파방송의 영향력과광고비중도 크게 하락했다. 반면 인터넷이 제3의 광고매체로 성장하

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기존 음반시장의 3배 규모로 성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 미디어기업 743개사의 2007년 총 매출액은 7,089억달러로 1998년(3,276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 매출 측면에서는 방송측면(30.7%)이, 이익 측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부문(37.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10)

세계적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타임워너의 매출액은 258억 달러('09년)이나, 우리나라 전체 방송시장은 80억 달러 규모로 타임워너의 31%정도 수준이다.¹¹⁾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 지원은 미디어 시청자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원천기술개발(R&D)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 분야의 앞으로의 잠재력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직접적인 미디어 산업 지원이 필요하며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8) 통신 소외계층에 통신이용권 지원

현재 방송통신 소외 계층에 대한 사업은 방송부문에만 한정된 방송접근권 보장에만 그쳐있다.

시각·청각장애인·난청노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통신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매체 지원 및 통신 요금 부담 완화 등 통신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에 의해 통신 소외계층에 통신이용권 지원의 시행이 필요하다.

¹⁰⁾ 권기덕, 인터넷과 미디어산업의 재편, 삼성경제연구소, 2008.11.19

¹¹⁾ 방송통신 2011 핵심 과제, 방송통신위원회, 2010.12.17

(9) 스마트TV서비스 조기정착 지원 사업

스마트폰과 태플릿 PC에 이어 스마트 TV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애플TV와 구글TV도 시장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편이며, 아직은 시작단계로 파악된다.

단기적으로 스마트TV 서비스는 기존 실시간 방송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스마트TV산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표6.11> 스마트 폰과 스마트 TV 발전여건 차이

	스마트 폰	스마트 TV
시장구조	 과거엔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통제 → 플랫폼 중심 개방화 무선콘텐츠: 공급자가 다양 (경쟁적) 	 콘텐츠기업과 플랫폼사업 자 간 역학관계가 거의 대등 프리미엄 콘텐츠: 공급자 가 소수(독점적)
이용자 니즈	• 무선인터넷에 대한 잠재 욕 구 발현	• TV시청행태 점진적으로 변화 예상
네트워크	네트워크 발전단계도 적합하 게 진화 (3G 확산, WIFI 망 구축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적합 한 여건 조성)	• 네트워크 발전단계 불충 분

출처: 스마트 TV의 영향과 정책과제

(10) 스마트 사업 관련 인력양성 지원 사업

국내 IT및 미디어 업계의 스마트 미디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T아카데미(T스마트폰

스쿨)를 설립하였으며, KT는 에코베이션 센터를 설립하여 스마트폰 개발자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개발자들의 창의적인 개발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개발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 개발 인프라, 커뮤니티, 교육 및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2,600여명의 개발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연간 10,000명의 교육과 3,000여명의 개발자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12)

정부측면에서의 지원이 도입되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발도 더불어 지원해야한다.

(11) 스마트 모바일 보안 지원 사업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10년 11월말 기준 625만 명(이동통신가입자의 12%)이며, 스마트폰 누적 가입자는 '13년까지 3천만 명을 돌파하고 '15년에는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¹³⁾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의 가속화로 스마트 사이어티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면서, 보안 위협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보안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시작으로 안전한 앱 유통환경 조성, 백신활성화 및 악성코드 점검, 프라이버시 안전성 검증, 개인위치정보 자기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활성화 된 스마트 모바일 보안 지원체계를 확립한 후 스마트 TV등의 보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12) 소셜 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촉진 지원

소셜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기업의 콘텐츠·미디어 유통 및 광고의 기본 구조화가 되고 있다. 새로운 소통 및 비즈니스인프라로서 소셜 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전략 수립이필요한 시점이며, 성숙한 이용문화 조성을 해야 한다.

¹²⁾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두루누리, 2010.6

¹³⁾ KISDI·KCC, 2010.11

(13) 스마트워크 확산 지원 사업

국내외 선도 기업은 스마트워크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의 사회적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이메일, 직원조회, 결재 등이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대문 구청(출산 여성공 무원 재택근무)과 롯데홈쇼핑(콜센터 직원 시간대별 재택근무)등 효율 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재택근무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KT등은 직 원을 대상으로 10여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품질을 고려한 이용자 편의성 지원을 해야 하며, 비용부담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이 지연되는 중소기업 지원이 요구된다.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며, 업무 시간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앞에서 검토한 추가적인 세부사업을 향후 전략방향의 포함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부사업에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확대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다.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1.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방송발전기금의 비전과 전략은 체계적이지 않으며, 기금관리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전략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기금자체만의 비전과 전략은 없다. 비전은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으로 기금으로의 미래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상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으므로 기금만의 비전과 전략의 구축은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시행으로 방송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기금의 해당사업 등 많 은 부분이 변화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던 규제가 통합이 되면서 방송통신 융합 진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재정지원체계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금의 재원으로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징수금,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전환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업자의 분담금이 추가 되었다.

기금 설치 목적과 재원체계의 확대에 따라 기금 해당사업도 변경 되었다. 기존에는 방송 진흥 중심이었으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통신관련 진흥으로 확대 되었으며 다만 기존의 문화·예술 진흥 부분의 사업은 제외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변경으로 변화된 부분과 기존 기금의 비전과 전

략의 비체계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금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수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취지를 반영하는 비전 설정이 요구된다.

비전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올바른 비전 제시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발전기금의 비전을 검토해보고 미션의 재정의를 통해 중장기 비전 재구축을 하여 핵심가치 재정의를 하고, 비전과의 연계성을 재검토 하였다. 조직원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여러 안 중 두 차례의 screening 과정과 방송통신 관련 전문가의 결정에 의해 「스마트 시대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

최종으로 선정된 비전에 따른 주요사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의 주요사업을 검토해보고, SWOT분석과 AHP(Analy -tical Hierarchy Process)방식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전략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2010년 방송발전기금의 주요사업과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사업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비교해보면, 2010년의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장 제26조 제1항 제4호(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된 사업이 31.7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제5호(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관련 사업 22.08%, 제2호(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관련 사업 17.58%, 제6호(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관련 사업 10.03% 순이며, 나머지는 10%미만을 차지하였다.

2011년의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장 제26조 제1항 제1호(방송 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관련된 사업이 36.46%로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며, 제4호(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사업 22.48%, 제2호(방송통신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관련 사업 10.88% 순이며, 나머지는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SWOT분석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전략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부분, 강화해야 할 부분, 위협이 되는 부분, 기회가 되는 부분을 검토 하였다.

AHP분석 결과 비R&D부분보다는 R&D부분이 중요하다고 나왔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는 「연구개발 사업」,「방송통신 진흥 지원」,「표준화 사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 이용자지원」,「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공익·공공 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원」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는「방송통신 콘텐츠 진흥」,「방송통신 표준 기술력 향상」,「전문 인력 양성」,「정책연구」,「기술개발」,「소외계층 지원」,「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시청자 지원」,「출연연 연구개발 지원」,「공공인프라 지원」,「해외방송교류」,「해외한국어 방송지원」,「방송광고기반조성」,「융합 활성화」,「방송활동 활성화」,「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기반시설 조성」,「첨단인프라구축」,「디지털 방송전환」,「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미디어다양성기반 구축」,「차세대 방송기반 구축」,「전파방송 산업 활성화」,「방송통신 심의지원」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에 대해 높은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콘텐츠 진흥과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세부사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계속·중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60개의 세부사업 중 2011년에 완료된 5개의 사업 중 프로그램 제작비(융자) 사업은 제작비 자체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의 일시적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제작비 융자금 대출, 지원을 위하여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나머지 55개의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취지와 일치되며, 앞에서 도출하였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새로

운 비전과 주요전략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또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업 현황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는 스마트시대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스마트 사업 관련 인력양성 지원 사업, 스마트 모바일 보안 지원 사업,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WiBro, Wi-Fi), 소셜 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촉진 사업, 스마트 워크 확산 지원 사업, 앞으로의 잠재력이 많은 콘텐츠와 관련된콘텐츠 벤처 및 콘텐츠 수출확대사업, 방송통신광고전략, MVNO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네트워크 구축 사업, 미디어 산업 지원, 통신소외계층에 통신이용권 지원이 있다.

2. 정책제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와 기금의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은 일반회계와 기금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구분이 모호하다. 이로 인해 예산사업과 기금이 중복 되는 부분 이 있으며 유사한 사업이 많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구분하는 효율적이고 명확한 구분이 정립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한다.

(2)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45%가 추가되었으나, 향후 협의에 의해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도별 주파수할당대가의 편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재원은 되지 못한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요구된

다. 추가로 재원이 될 수 있는 기타 재원으로 전파사용료 등이 있다.

(3) 관리 위탁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 업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위탁이 되면서 기금 본부 인력은 축소가 되고 기금담당 인력의 위탁으로 초창기 기금 업무 경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금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연수,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해 기금 전문가를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하연·여혁종,「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통산정책 재정립 방안연구」, 2009.12

김동욱·김용훈, 「영상·광고·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한국방송광고공사, 2009

김병묵,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 개선방안 연구」,방송통신윈원회, 2009.11

김정언,「융합 및 통신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연구」,한국전파진흥 원, 2009

남궁민,「제4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토론회/IT와 방송통신 산업 발전의 대계, 방송통신기금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방향」, 2008.12

미디어미래연구소 ,「전파관리 규제비용 체계 도입을 통한 전파사용 료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2009.11

박기백·김지영,「방송통신 재정체계 정비방안」, 방송통신위원회, 2008.12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전략계획(2008~2012)」, 2009

방송통신위원회,「2008.9 보도자료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2008.9

방송통신위원회,「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 신 10대 추진과제」, 2008.12

방송통신위원회,「2009회계년도 성과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09 방송통신위원회,「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추가변경)」, 2009.1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실 정책총괄과,「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고시(안) 검토」, 2009.6

방송통신위원회,「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 방송통신 2010 핵심과제」, 2009.12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할당계획(안)」, 2010.2

방송통신위원회,「10년도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행계획」, 2010 방송통신위원회,「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별 설명자료」, 2010

방송통신위원회,「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9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실 기금 팀,「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의 재정 투자방안」, 2010.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6.30 보도자료(200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 황 공표)」, 2010.6.3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9.28 보도자료 (2011년 예산 관련 보도자료)」, 2010.9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12.31 보도자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2010.12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스마트TV의 영향과 정책과제」, 201 1.1

손원익·김진,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방향에 관한 연구)」, 지식경제부, 2008.12

오세성,「광고 산업 주요통계 조사 및 DB화 연구(5년차)」,한국방송 광고공사, 2009

이종관, 「전파관리 규제비용 체계도입을 통한 전파사용료 제도의 중 장기 개선방안 연구」, 2009.11

이재영·이종화·임준·강인규·오기석·백윤미,「통신서비스 재판매시장 영향 분석과 재판매시장의 전망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2

이종화 외,「2009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 동향 분석」,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9.11

이태호·심상민·김성민, 「방송영상투자조합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전파진흥원, 2009.11

여송필,「디지털 전환이 매체환경과 광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한국 방송광고공사, 2009

장희선, 「700MHz 주파수 대역의 이용방안」,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9

고상원 외 ,「방송통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8년도 정보통신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보고 서」, 2009.6

정보통신산업진흥원,「최종연구보고서 - 정보통신표준화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2009.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성과분석 (종합성과분석)」, 2009.9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금관리단,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지추계모형」, 2007.12

정보통신진흥정책연구원,「월간방송통신산업동향 1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9.3

정보통신진흥정책연구원,「월간방송통신산업동향 2호」,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9.4

정보통신진흥정책연구원,「월간방송통신산업동향 5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7

정보통신진흥정책연구원,「월간방송통신산업동향 7호」,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9.9

정보통신진흥정책연구원,「월간방송통신산업동향 8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1

정윤경·이재호·김숙·김미선,「방송콘텐츠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한국방송광고공사, 2009.12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200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 2008.12

지식경제부,「200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2009 지식경제부,「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정보통신진흥 기금)」, 2010.1

최계영, 「융합시대 전파관리정책의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 2010.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스마트폰용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동향」, 2010.6

황근·최일도·박성현·김군주,「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채널브랜드 전략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9.12

전문가 조사 설문지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략사업 가중치 설정을 위한 설문

- □ 본 설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연구로 <u>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연구</u>이오니 고 견 부탁드립니다.
- □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방송 통신발전기금 전략사업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AHP 설 문은 일반 설문과 달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널리 활용됩니다. 각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 I.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 Ⅱ. AHP 평가 계층 구조
- Ⅲ. 상대적 중요도 평가

*	작성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성		 전 화 번 호
:		_ : _
 **	이 설문은 AHP 분석의 특성 때문에	간혹 분석과정에서 추가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과 직급에 대한 정보는 분석에 필요	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한국채권연구	원 김은경 연구원(6333-1282) 또는
	이승재 연구원 (6333-1235) 로 연락히	·시기 바랍니다.

[I. AHP 설문 응답 시 유의 사항]

※ 설문 작성 예

-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다음,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평가 대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기법입니다. AHP 설문은 일관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설문에 응답하시면 일 관성 있는 설문지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 설문 작성은 (1) 프린트 하여 직접 동그라미에 표시해 주시거나, (2) 답변란에 숫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숫자로 표시하시는 경우, 좌측과 우측에 유의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u>다.

(예시 1) 일관성이 유지된 예

답 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답 변
7	А	9	8	Ø	6	(5)	4	3	2	1	2	3	4	(5)	6	7	8	9	В	
3	В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С	
	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А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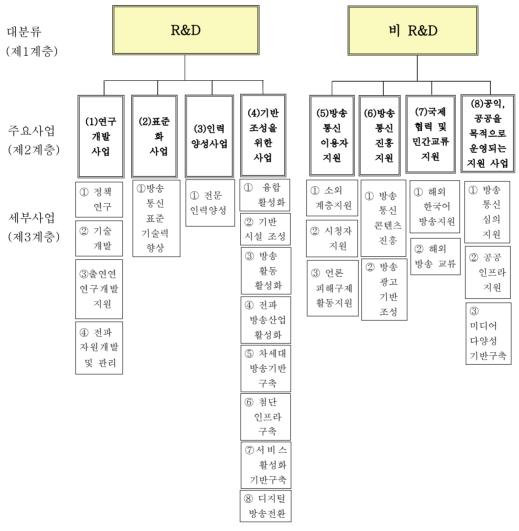
(예시 2)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예

답변	평가항목	절대정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답변
7	А	9	8	Ø	6	(5)	4	3	2	1	2	3	4	(5)	6	7	8	9	В	
3	В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С	
5	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А	

[Ⅱ. AHP 평가 계층 구조]

- ** 다음의 계층구조는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략사업 평가지표입니다. 연구진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 연구〉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본 설문의 가중치 선정을 통해서 최종 평가지표가 작성될 것입니다.
- ※ 설문 구조는 아래 3계층으로 나누어진 각 계층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여 최종지표 간의 가중치를 종합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전 및 중장기 운용전략 마련을 위하여 평가지표로 사용될 것이므로신중한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략사업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계층 구조]



※ 위의 그림 혹은 다음 페이지의 표에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설문 에 응답하시면 일관성 있는 설문지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평가표의 평가항목]

		ਹ ਾ ਤਾਂ ਸ
	ע	경가항 목
	(1) 연구개발 사업	① 정책연구 ② 기술개발 ③ 출연연 연구개발지원 ④ 전파자원개발 및 관리
	(2) 표준화 사업	① 방송통신표준 기술력향상
	(3) 인력 양성사업	① 전문 인력양성
R&D	(4)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① 융합 활성화 ② 기반 시설조성 ③ 방송활동활성화 ④ 전파방송산업활성화 ⑤ 차세대방송기반구축 ⑥ 첨단인프라구축 ⑦ 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⑧ 디지털 방송전환
	(5) 방송통신이용자지원	① 소외계층지원 ② 시청자지원 ③ 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
비 R&D	(6) 방송통신 진흥지원	① 방송통신콘텐츠진흥 ② 방송광고기반조성
	(7)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① 해외한국어방송지원 ② 해외방송교류
	(8)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	① 방송통신심의지원 ② 공공인프라지원 ③ 미디어다양성기반구축

〔Ⅲ. 상대적 중요도 평가〕

□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평가표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간 중요성의 차이는 전 문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응답자께서는 각 평가항목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분류(제1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평가표 선정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대분류 항목으로 본 설문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R&D , 둘째, <u>비R&D</u> 입니다. 이러한 각 평가항목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평가 대분류(제1계층)의 평가항목 내용〉

	대분류	주요 내용
1	R&D	· R&D의 세부 사업인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
1	N&D	성과 관련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R&D 관련 사업 외 사업
2	비 R&D	(이용자지원, 방송통신 진흥 지원,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설 문〉

답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우중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기항목	답 변
	R&D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비 R&D	

2. 주요사업(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1) R&D

R&D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설문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사업, 둘째, 표준화 사업, 셋째, 인력양성 사업, 넷째,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각 평가항목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R&D사업의 주요사업 평가항목 내용>

주요사업(제2계층)	주요 내용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기술, 정책 연구 사업
표준화 사업	·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 강화 등과 같은 표준화 역량 강화 사업
인력양성 사업	· 방송통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업

〈설 문〉

답 변	평형	절 대 중 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답 변
	연구 개발 사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표준화 사업	
	연구 개발 사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력양성 사업	
	연구 개발 사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반조성 을 위한 사업	

표준화 사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력양성 사업	
표준화 사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반조성 을 위한 사업	
인력 양성 사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반조성 을 위한 사업	

2) 비 R&D

비 R&D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설문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u>방송통신 이용자지원</u>, 둘째, <u>방송통신 진흥 지원</u>, 셋째, <u>국제협력 및 민간</u> <u>교류 지원</u>, 넷째, <u>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원</u>입니다. 이러한 각 평가항목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R&D사업의 주요사업 평가항목 내용〉

주요사업(제2계층)	주요 내용
방송통신 이용자지원	· 소외계층이나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방 <u>송통</u> 신 진흥지원	·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콘텐츠, 광고 관련 사업
국제협력 및 민간 교류 지원	·국제교류나 국제적으로 하는 민간교류 활동 지원 관련 사 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원	·심의지원이나 공공 인프라 지원 등과 같은 공익·공공을 위한 사업

〈설 문〉

	/																			
답 변	핑탕목	절 대 중 요		매우중요		중 요		약 간중 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기항목	답 변
	방송 통신 이용자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방 송통 신 진흥지원	
	방송 통신 이용자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국제협력 및 민간 교류 지원	
	방송 통신 이용자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공익, 공공 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지원	
	방송 통신 진흥지 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고제협력 및 민간 교류 지원	
	방송 통신 진흥지 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지원	
	국제 협력 및 민간 교류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지원	

3. 세부지표(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1)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은 첫째, <u>정책연구</u>, 둘째, <u>기술개발</u>, 셋째, <u>출연연</u> <u>연구개발지원</u>, 넷째, <u>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u>로 구분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각 세부사업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응답자께서는 각 평가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정책연구	· 방송통신 관련 규제 개선 및 정책연구 지원 사업								
기술개발	· 방송통신 관련 원천기술개발 사업								
출연연 연구개발 지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								
전파자원 개발 및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원 및 EMC분양								
관리	기술개발 지원 등 EMC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설 문〉

답변	평형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답 변
	정책 연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술개발	
	정책 연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출연연 연구개발 지원	
	정책 연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	
	기술 개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출연연 연구개발 지원	

기술 개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전파지원 개발 및 관리	
출연연 연구						((0		(((전파자원	
개발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개발 및 관리	

2) 표준화 사업

표준화 사업의 세부사업은 <u>방송통신표준기술력향상</u>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한가지로 설정하여 상대적 중요성 평가 항목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방 <u>송통</u> 신표준	· 방송통신표준 개발·제정·보급 등 국내외 표준화 활동
기술력향상	지원을 통한 국제표준 관련 사업

3) 인력양성 사업

인력양성 사업의 세부사업은 <u>전문 인력양성</u>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한가지로 설정하여 상대적 중요성 평가 항목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전문 인력양성	· 방송통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양성 사업

(뒷면 계속)

4)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은 첫째, <u>융합 활성화</u>, 둘째, <u>기반시설 조성</u>, 셋째, <u>방송활동 활성화</u>, 넷째, <u>전파 방송산업 활성화</u>, 다섯째, <u>차세대 방송기반 구축</u> , 여섯째, <u>첨단 인프라 구축</u> , 일곱째, <u>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u> , 여덟째, <u>디지</u> <u>털 방송전환</u> 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각 세부사업이 가지는 상 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응답자께서는 각 평가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융합 활성화	· 매체 간, 사업자 간 연동서비스 개발 등과 같은 융합 관련 사업
기반시설 조성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 지원시설(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구축 지원 사업
방송활동 활성화	· 방송분야 시상, 방송평각 기반조성 등 방송제작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자 만족도 향상 및 산업발전 도모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 국내에서 개발된 T-DMB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전파 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관련 사업
차세대 방송기반구축	· 3DTV와 같은 차세대 방송 사업 지원
첨단 인프라 구축	· 고품질, 광대역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통합 망(BcN)의 전국기반 구축 확대 등 과 같은 구축 활성화 및 기존 망 고도화 촉진
서비스 활성화기반 구축	·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구축,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관리기반구축 등 방송통신 서비스 기반구축과 관련된 사업
디지털 방송전환	·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유도 및 디지털 방송 산업 발전 도모,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뒷면 계속)

〈설 문〉

\	当 こ 〉																			
답 변	평형목	절대중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기항목	답 변
	융합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반시설 조성	
	융합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방송활동 활성화	
	융합 활 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융합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융합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첨단 인프라 구축	
	융합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융합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지털 방송전환	
	기반 시설 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방송 <u>활</u> 동 활성화	
	기반 시설 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기반 시설 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기반 시설 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천단 인프라 구축	
	기반 시설 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기반 시설 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지털 방송전환	
	방송 활동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⑤	6	7	8	9	전파방송 산업 활 성화	

방송 활동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발송 방송 활동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인구국 첨단 인프라 구축	
 발송 방송 활동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발동 활동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지털 방송전환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필명되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간 1국 첨단 인프라 구축	
필명되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반 구축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지털 방송전환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첨단 인프라 구축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지털 방송전환	
천단 인프라 구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첨단 인프라 구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지털 방송전환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지털 방송전환	

5) 방송통신 이용자지원 사업

방송통신 이용자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첫째, <u>소외계층 지원</u>, 둘째, <u>시청자</u> 지원, 셋째, <u>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u>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방송통신 이용자지원 사업의 각 세부사업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응답자께서는 각 평가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소외계층 지원	· 시각, 청각장애인, 난청노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고피계등 시전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니궈기 기이	·시청자 복지 환경 조성, 시청자의 방송환경 적응 및 개선을
시청자 지원	위한 사업 지원
	· 방송, 인터넷 포털 등 언론보도 및 매개로 인한 피해구제 및
언론피해구제활동지원	예방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및 언론의 공정성, 책임성
	제고하는 사업 지원

〈설 문〉

답 변	평형목	절 대 중 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기항목	답 변
	소외계층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시청자 지원	
	소외계층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언론피해 구제활동 지원	
	시청자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언론피해 구제활동 지원	

6) 방송통신 진흥지원 사업

방송통신 진흥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첫째, <u>방송통신 콘텐츠 진흥</u>, 둘째, <u>방</u>송광고기반조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방송통신 진흥지원 사업의 각 세부사업이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의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응답자께서는 각 평가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 프로그램 제작, 유통을 지원
방송광고기반조성	·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등과 같은 사업

〈설 문〉

답 변	평형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답 변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방송광고 기반조성	

(뒷면 계속)

7)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사업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첫째, <u>해외한국어 방송지원</u>, 둘째, <u>해외방송교류</u>로 구분하였습니다. 국제협력 및 민간교류 지원 사업의 각세부사업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응답자께서는 각 평가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해외한국어 방송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
케이바스그리	· 국내 방송사업자 등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모 하는 등 남북
해외방송교류	및 해외 국가 간의 방송통신 교류활동 지원 사업

〈설 문〉

답 변	평형목	절 대 중 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기항목	답변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해외방송 교류	

(뒷면 계속)

8)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첫째, <u>방송통신 심</u>의지원, 둘째, <u>공공 인프라지원</u>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각 세부사업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응답자께서는 각평가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제3계층)	주요 내용
바소트시 시이지의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
방송통신 심의지원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 교육 방송프로그램,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공공 인프라지원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공공 인프라 지원
미디어다양성기반구축	·시청점유율 조사등과 같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이디어다おおり <u>인</u> 子국	위한 운영 지원

〈설 문〉

답 변	평형목	절 대 중 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기항목	답 변
	방송 심의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공공 인프라 지원	
	방송 심의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미디어 다양성 기반조성	
	공공 인프라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미디어 다양성 기반조성	

◇ 감사합니다. ◇